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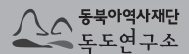
Territory and Seas

# 영토해양연구

Vol. 18 Winter 201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차례

## 연구논문

- 이원택 ▣ 순천장씨 학서주손가(鶴棲胄孫家)의 『충효문무록』과 『절도공양세실록』 소개,  
그리고 장한상의 『울릉도사적』 재론(再論) 6
- 유미림 ▣ 울릉도 마을지명의 형성과 고착과정 38
- 백인기 ▣ 동해 표기 관련 일본 주장 비판 연구  
: IHO S-23 분석을 중심으로 86

## 사료해제

- 이원택 · 정명수 ▣ 울진 대풍헌 현판 영세불망지판류(永世不忘之板類) 자료의  
해제 및 번역 134



## 서평

김재한 ■ 제국주의와 탈근대주의 그리고 독도 문제 158

## 영토·해양 일지

조운수 ■ 영토·해양 일지 170

## 규정 및 규칙

편집위원회 규정 174

발행 및 심사 규칙 176

투고 요령 180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184

【별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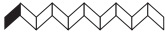




# 연구 제언



- **이원택** | 순천장씨 학서주손가(鶴棲青孫家)의 『충효문무록』과 『절도공양세실록』 소개, 그리고 장한상의 『울릉도사적』 재론(再論)
- **유미림** | 울릉도 마을지명의 형성과 고착과정
- **백인기** | 동해 표기 관련 일본 주장 비판 연구: IHO S-23 분석을 중심으로



# 순천장씨 학서주손가(鶴棲胄孫家)의 『충효문무록』과 『절도공양세실록』 소개, 그리고 장한상의 「울릉도사적」 재론(再論)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1. 머리말

이 글은 그동안 울릉도·독도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순천장씨(順天張氏) 학서주손가(鶴棲胄孫家) 기탁 문헌들 가운데서 1694년 울릉도 수토를 하였던 장한상(張漢相) 관련 자료를 소개하면서, 필자가 기왕의 연구<sup>1</sup>에서 잘못 추정하여 기술한 사항들을 수정하고, 또 필자의 기왕의 연구를 축조(逐條) 논박한 유미림 박사의 비판<sup>2</sup>에 대해 필자의 관견(管見)을 재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순천장씨 학서주손가는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에 세거하고 있는 순천장씨 남산문중 학서(鶴棲) 장규섭(張奎燮, 1863-1940)의 종손가를 말한다. 학서

\* 논문 투고일: 2019. 10. 20. 심사 완료일: 2019. 11. 14. 게재 확정일: 2019. 11. 14.

\* 이 연구는 동북아역사재단 울릉도·독도·동해 관련 한일 고사료 총집 연구(NAHF-2019-기획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됨.

1 이원택,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영토해양연구』 16집,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8, 13-15쪽 참고.

2 유미림, “「울릉도사적」의 필사 연도와 「울릉도」의 ‘우산도’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변석”, 『동북아역사논총』 64호, 동북아역사재단, 2019.

주손가 소장 문헌은 고서류 108종 226책과 고문서류 221점으로, 전체가 2003년 후손 장건식씨에 의해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었다.<sup>3</sup> 학서 주손가 문헌에는 순천장씨 족보 및 선조들의 행적을 기록한 실기류(實記類)의 문헌들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특히 1900년에 편찬된 경자보(庚子譜), 1922년에 편찬된 임술보(壬戌譜), 1955년에 편찬된 을미보(乙未譜)가 모두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족보를 편찬할 때마다 동시에 가문의 문헌록도 편찬되었다. 경자보를 편찬할 때 『충효문무록(忠孝文武錄)』이 편찬되었으며, 임술보를 편찬할 때는 이름을 바꾸어 『승평문헌록(昇平文獻錄)』(초간본)이 편찬되었고, 을미보를 편찬할 때 『승평문헌록』(복간본)이 편찬되었다. 이와 같이 족보와 문헌록이 동시에 주기적으로 편찬 간행되어 시계열적인 자료가 한 곳에 보관되어 있고, 편찬을 주도 했던 학서 장규섭과 그의 손자 장세호(張世鎬, 1903-1985)에 관한 자료가 온전히 남아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한층 높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작년에 순천장씨 가문에서 족보를 편찬할 때 가문의 문헌록을 동시에 편찬하였음을 보고하였다.<sup>4</sup> 다만, 작년에는 『순천장씨족보』 정사보(丁巳譜, 1977)와 『승평문헌록』 초간본 및 복간본만을 열람하였고, 이 세 가지 자료만을 근거로 추론하였기 때문에 보고 내용에 오류가 있게 되었다. 즉 경자보를 편찬할 때 『승평문헌록』 초간본이 나왔고, 임술보를 간행할 때 복간본이 나온 것으로 추론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국학진흥원의 학서 주손가 자료를 통해 경자보(1900), 임술보(1922), 을미보(1955) 등을 열람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찾아낸 『충효문무록』을 통해 많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다. 『충효문무록』은 경자보(1900)를 편찬할 때 함께 편찬된 첫 번째 문헌록이었고, 그에 따라 『승평문헌록』 초간본은 1922년 임술보 편찬시, 복간본은 1955년 을미보 편찬시 각각 편찬되었던 것을 확

3 자세한 목록은 한국국학진흥원 편, 『2003년 한국국학진흥원 수탁 국학자료 목록집』, 한국국학진흥원, 2004, 130-140쪽 참고.

4 이원택, 앞의 논문.

인할 수 있었다.

『충효문무록』의 중요성은 첫 번째 간행된 문헌록이라는 점과 그 안에 편목으로 실려 있는 「절도공양세실록(節度公兩世實錄)」 때문이다. 「절도공양세실록」은 「절도공실록(節度公實錄)」과 「소절도공실록(少節度公實錄)」으로 편목이 나뉘어, 계속 간행된 『승평문헌록』에 실린다. 그런데 필자는 이번에 학서주손가 문헌 속에서 『충효문무록』을 찾았으며, 또 단행본으로 엮어진 『절도공양세실록(節度公兩世實錄)』도 함께 찾게 되었다. 『충효문무록』에 선별되어 편집된 「절도공양세실록」의 모본 『절도공양세실록』을 함께 발견한 셈이다. 그리고 이번에 발견한 『절도공양세실록』에도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이 실려 있다. 다만, 아쉽게도 「울릉도사적」은 뒷부분 몇 장이 결락된 상태이다. 물론 『절도공양세실록』은 작년에 의성조문국박물관에 소장된 경덕사 기탁 문헌 가운데서 찾아내 이미 소개한 적이 있다.<sup>5</sup> 그러나 금번 학서주손가본 『절도공양세실록』의 발견은 경덕사본 『절도공양세실록』외에도 또 다른 필사본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이 『충효문무록』 편찬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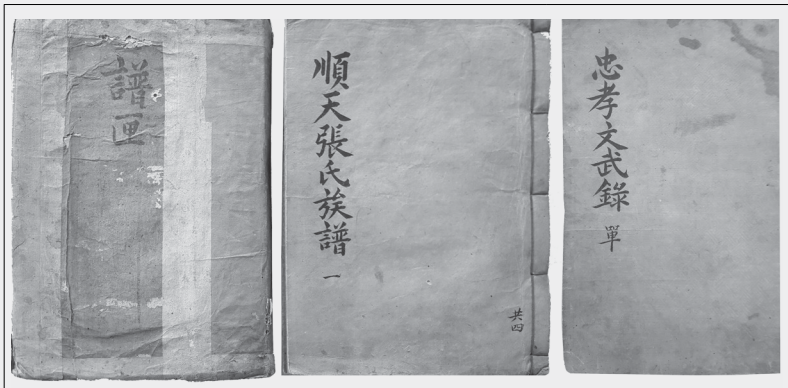
이처럼 순천장씨 가문의 족보가 편찬될 때마다 아울러 가문의 문헌록이 편찬되었는데, 우선 양자의 관계에 관한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 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금번 발견된 『충효문무록』과 『절도공양세실록』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릉도사적」 및 『서계잡록』 「울릉도」와 관련하여 필자가 기왕의 연구에서 주장한 몇 가지 논점에 대해 축조 비판한 유미림 박사의 반론에 대하여 필자의 천견(淺見)을 다시 한 번 제시하려고 한다.

5 이원택, 앞의 논문.

## II. 순천장씨 족보 편찬과 문헌록 편찬의 관계

### 1. 경자보와 『충효문무록』 편찬

순천장씨 족보 편찬 내력을 살펴보면, 순조 5년의 을축보(乙丑譜, 1805)가 맨 처음 편찬된 족보라고 추정된다. 아쉽게도 필자는 아직 을축보를 열람하지 못하였다. 다행히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6대손 유규(柳奎)의 서문, 장태은(張泰殷)의 지(識), 장광한(張光漢)·장동익(張東翼)의 발문(跋文)이 을축보 이후에 편찬된 족보들에 실려 있어, 을축보가 1805년에 편찬된 사실은 확실하다.



〈그림 1〉 경자보와 보갑(譜匣, 족보케이스)

『충효문무록』

을축보 이후 근 100여 년 만에 경자보(庚子譜, 전4권)가 고종 37년(庚子, 1900)에 편찬되었다. 경자보에는 「순천장씨족보서(順天張氏族譜序)」가 실려있다. 이 서문은 장성환(張星煥)이 썼는데, “상지삼십칠년경자유희월후손성환근서(上之三十七年庚子流火月後孫星煥謹書: 성상 37년 경자년 7월 후손 장성환 삼가 씀)”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시조태사포음선생사적(始祖太師圃蔭先生事蹟)」 및 구보(舊譜: 乙丑譜)의 서문과 발문이 실려 있다. 그리고 끝에 장규섭(張奎燮, 1863-1940)의 발문이 있으며, 발문 말미에 “승정오경자칠월상한후손규섭근

서(崇禎五庚子七月上澣後孫奎燮謹書: 승정 후 다섯 번째 경자년 7월 상순 후손 장규섭 삼가 씀)라고 기록되어 있다. 승정 후 다섯 번째 경자년은 고종 37년(1900)이다. 이 당시 족보편찬을 장규섭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자보의 편찬과 함께 문헌록인 『충효문무록』(1900)이 편찬되었다. 『충효문무록』의 목록을 보면, 「달산선생실기집략(達山先生實紀集畧)」, 「이은공삼은공사적(二隱公三隱公事蹟)」, 「문암공행적(文巖公行蹟)」, 「성남공유적(星南公遺蹟)」, 「절도공양세실록(節度公兩世實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편목 구성은 이후 『승평문헌록』 편찬에서도 계속된다.

『충효문무록』의 끝부분에 「선세사적발(先世事蹟跋)」이라는 제목으로 장규섭(張奎燮)의 발문이 실려 있다. 발문의 말미에 “상지삼십칠년경자유화월후손규섭경지(上之三十七年庚子流火月後孫奎燮敬識: 성상 37년 경자년 7월 후손 장규섭 삼가 기록함)”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승평문헌록』에 계속되는 장규섭의 발문이 『충효문무록』에서 유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효문무록』의 발문은 상당 부분 윤문 수정되어, 1922년 및 그 이후에 간행된 『승평문헌록』에 계속하여 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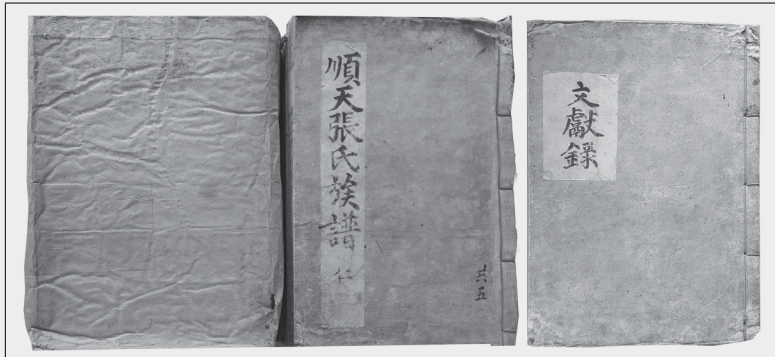
경자보와 『충효문무록』 편찬을 주도한 장규섭은 『학서집(鶴棲集)』(乾·坤) 4권 2책을 남겼다. 『학서집』에는 장한상과 관련하여 참고할 주요 내용으로 경자보 발문과 임술보 발문, 문헌록 발문, 절도공사우중수통문(節度公祠宇重修通文), 절도사공길제고유문(節度使公吉祭告由文), 소절도공길제고유문(少節度公吉祭告由文), 절도사공상향축문(節度使公常享祝文) 등이 실려 있다.

## 2. 임술보와 『승평문헌록』(초간본)

임술보(壬戌譜, 전5권: 仁義禮智信)는 1922년(壬戌)에 편찬되었다. 맨 앞에 홍재겸(洪在謙)의 서문이 있다. 이어서 을축보의 서문과 발문, 경자보의 서문과 발문이 있다. 그리고 임술보 본문이 이어지며 맨 마지막에 장규섭의 발문이 있다. 임술보 편찬 역시 장규섭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술보를 편찬하면서 『충효문무록』을 증보하여 『승평문헌록』(초간

본)을 편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충효문무록』에서 달라진 점은 1912년(壬子)의 「영각중수문(影閣重修文)」이 장한상의 「비명(碑銘)」 다음에 추가된 점이다. 「영각중수문」은 울릉도 수토(搜討) 등 장한상의 업적을 기려, 1912년 사포유회(蛇浦儒會)에서 퇴락한 사당의 중수(重修)를 발의(發議)한 통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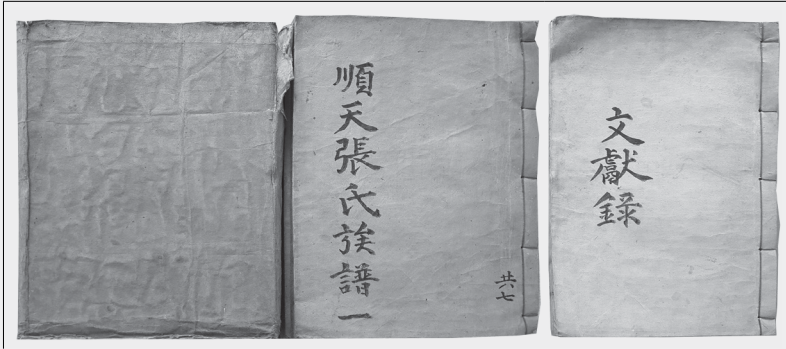
〈그림 2〉 임술보와 보갑

『승평문헌록』(초간본)

그리고 『승평문헌록』(초간본)의 말미에 장규섭의 「문헌록발(文獻錄跋)」이 있는데, 『충효문무록』의 발문 「선세사적발(先世事蹟跋)」을 다듬어 「문헌록발」을 만들고, 「선세사적발」 말미의 「상지삼십칠년경자유화월후손규섭경지(上之三十七年庚子流火月後孫奎燮敬識)」를 「문헌록발」의 말미에서는 「성상천조후삼십칠년임술유화월후손규섭경지(聖上踐阼後三十七年壬戌流火月後孫奎燮敬識)」라고 고쳤다. 문제는 성상 등극 37년은 경자년(1900)인데, 임술년(1922)이라고 하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 이런 오류가 생겼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 3. 을미보와 『승평문헌록』(복간본)

을미보(乙未譜, 전7권)는 1955년(乙未)에 편찬되었다. 김형칠(金衡七)의 서문과 장세호(張世鎬)의 발문이 있다. 장세호는 학서 장규섭의 손자이고, 학서주손가 문헌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장건식의 조부다.



〈그림 3〉 을미보와 보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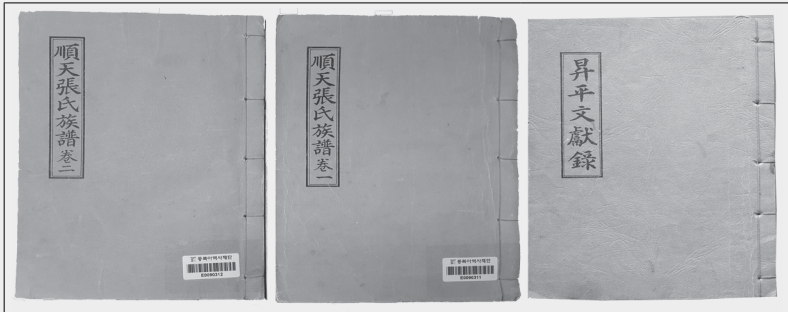
『승평문헌록』(복간본)

을미보를 편찬하면서 『승평문헌록』(초간본)을 약간 수정하여 복간본을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목록에서 보듯 초간본의 몇 글자를 삭제하였고, 또 이 은공사적(二隱公事蹟)에 수록된 묘비문을 삭제한 것이 눈에 띈다. 그런데 복간본에도 장규섭의 「문헌록발」을 실었는데, 말미에는 “성상천조후삼십칠년유화월후손규섭경지(聖上踐阼後三十七年流火月後孫奎燮敬識)”라고 기록하여, 초간본에서의 ‘임술(壬戌)’ 두 자가 삭제되어 있다. 경자년의 『충효문무록』의 발문 「선세사적발」을 윤문하여 임술년(1922) 『승평문헌록』(초간본)에 사용하였고, 임술년의 발문을 을미년(1955) 『승평문헌록』(복간본)에 다시 사용하는 것이므로 ‘임술’ 두 자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고종 37년이라고 하였으므로 경자년(1900)이라고 하는 셈이 된다. 굳이 앞 시대에 간행된 발문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면, ‘성상천조후 37년’을 삭제하고 ‘임술’ 두 자를 그대로 두어 ‘임술유화월후손규섭경지(壬戌流火月後孫奎燮敬識)’라고 표기하고, 범례(凡例) 혹은 서문 등 적절한 곳에서 그 사실을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4. 정사보와 『승평문헌록』(중보판)

정사보(丁巳譜, 전2권)는 1977년(丁巳) 대전의 대경출판사에서 인쇄되었다.

을미보 서문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에 경자보와 임술보의 서발문을 붙이고, 정사보 만의 별도의 발문은 없다. 특기할 것은 정사보의 가장 앞에 정사보와 『승평문헌록』의 오지를 바로잡은 정오표가 붙어 있는 점이다.



〈그림 4〉 정사보(1, 2권)

『승평문헌록』(중보판)

정사보를 편찬하면서 『승평문헌록』을 대폭 증보하여 간행하였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이 「소절도공실록(少節度公實錄)」 다음에 「학서공사적(鶴棲公事蹟)」을 추가한 점이다. 학서 장규섭의 학문과 문중 사업을 손자 장세호가 이어받아 할아버지 학서공의 학문과 절도공양세 선양 사업을 기려 「학서공사적」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문의 말미에 “성상천조후삼십칠년임술유화월후손규섭경지(聖上踐阼後三十七年壬戌流火月後孫奎燮敬識)”를 복기한 점이다. 장규섭의 원래 발문을 지어진 모습 그대로 복구하였다는 점에서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의미가 있지만, 고종 37년은 경자년(1900)이므로 임술년(1922)이라고 하면 여전히 서로 맞지 않는다.

참고로 순천장씨 가문은 정사보 이후에는 한글족보 임신보(壬申譜, 1992)를 편찬 간행하였다. 이때 『승평문헌록』도 대폭 증보하여 한글로 번역 간행하였다. 『승평문헌록』(한글본)에는 편집인 장락문(張洛文)의 한글 발문이 있으며,

발행인은 장재수(張在秀)이고, 대구의 대보사에서 1992년 간행되었다.<sup>6</sup>

### III. 『충효문무록』과 『절도공양세실록』의 소개

#### 1. 『충효문무록』과 『승평문헌록』의 관계

앞에서 보았듯이 『충효문무록』은 경자보(庚子譜) 편찬시에 아울러 편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임술보 편찬과 더불어 『충효문무록』은 『승평문헌록』으로 이름이 바뀌어 족보가 증보될 때 마다 문헌록 역시 증보 편찬되었다.

『충효문무록』의 목차는 「달산선생실기집략(達山先生實紀集畧)」, 「이은공삼은공사적(二隱公三隱公事蹟)」, 「문암공행적(文巖公行蹟)」, 「성남공유적(星南公遺蹟)」, 「절도공양세실록(節度公兩世實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목차 비교표를 보면 『충효문무록』과 『승평문헌록』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다. 『충효문무록』과 『승평문헌록』(초간본)은 학서 장규섭이 직접 편찬하였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발문을 많이 윤문하여 수정한 점이 특징이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각중수문(影閣重修文)』이 새로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승평문헌록』(복간본) 역시 초간본과 크게 변한 것은 없다. 다만, 장규섭의 손자 장세호가 주도하여 편찬한 『승평문헌록』(1977)은 내용이 대폭 증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작년의 연구에서는 『충효문무록』의 존재를 몰랐고 또 『순천장씨족보』(경자보) 등 실물을 보지 못하고 유일하게 정사보(丁巳譜, 1977)만 참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승평문헌록』(초간본)이 경자본(1900) 편찬시에 편찬된 것으로, 그리고 『승평문헌록』(복간본)은 정사보(1977) 편찬시에 조금 수정하여

6 順天張氏譜所 編, 『昇平(順天張氏)文獻錄』, 大邱: 大譜社, 1992.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여 보고하였다.<sup>7</sup> 학서주손가의 자료를 참고한 뒤에 비로소 1900년 경자보 편찬시에 『중효문무록』이 편찬되었고, 1922년 임술보 편찬시에 『승평문헌록』(초간본)이 간행되었으며, 1955년 을미보 편찬시에 『승평문헌록』(복간본)이 간행되고, 1977년 정사보 편찬시에 『승평문헌록』(중보판)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중효문무록」과 「승평문헌록」의 목차 비교

중효문무록 (1900)	승평문헌록 (초간본, 1922)	승평문헌록 (복간본, 1955)	승평문헌록 (중보판, 1977)
達山先生實紀集略 遺事 見麗史 昇平誌 文忠公永慕錄 實紀序 遺事後敘  奉安文 祝文 實紀跋	達山先生實紀集略 遺事 麗史 昇平誌 永慕錄 實紀序 遺事後敘  白川書院奉安文 祝文 實紀跋 白川書院奉安圖	達山先生實紀集略 遺事 麗史 昇平誌 永慕錄 實紀序 遺事後敘三  奉安文 祝文 實紀跋 白川書院奉安圖	達山先生實紀集略 遺事 麗史 昇平誌 永慕錄 實紀序 敬題遺事後 謹書遺事後 遺事後敘 白川書院奉安文 五賢常享祝文 實紀集略跋 白川書院奉安圖
二隱公三隱公事蹟 行狀	二隱公事蹟 墓碑文	二隱公事蹟	二隱公事蹟 墓碑文
	三隱公事蹟 行狀略	三隱公事蹟 行狀	世隱齋公事蹟 墓碑文 三隱齋公事蹟 行狀略 墓碑文 訓練院參軍公墓碣銘 司直別侍尉顯信枝尉九成 公墓碑文 進士公墓碣銘 軍器寺僉正公墓碑文 訓導公行狀

7 이원택, 앞의 논문, 13-15쪽 참고.

文巖公行蹟 序 墓誌 墓誌跋 奉安文 祝文 附四賢祝文 附四賢復享文 行蹟跋 白川書院奉安圖	文巖公行蹟 墓誌 序 白川精舍奉安文 祝文 附四賢祝文 附四賢復享文 行蹟跋 孝閣重修記	文巖公行蹟 墓誌 序 奉安文 祝文 附四賢祝文 附四賢復享文 行蹟跋 孝閣重修記	文巖公行蹟 墓誌 行蹟序 白川精舍奉安文 常享祝文 附四賢祝文 白川書院復享文 行蹟跋 孝閣重修記
星南公遺蹟 南州日錄序 詩 書 附禮判及答右相答書 墓表 寓哀碑辭 進士公墓表	星南公遺蹟 詩 書 附禮判答書 附右相答書 南州日錄序 墓表 寓哀碑辭 進士公墓表	星南公遺蹟 詩 書 附禮判答書 附右相答書 南州日錄序 墓表 寓哀碑辭 進士公墓表	星南公遺蹟 詩 書 附禮判答書 附右相答書 南州日錄序 墓表 寓哀碑辭 成均進士公墓碑文 贈通禮院左通禮公墓碣銘 僉正公墓碑文 附進士公墓表
節度公兩世實錄 賜祭文 輓 墓碣銘	節度公實錄 賜祭文 輓 墓碣銘	節度公實錄 賜祭文 輓 墓碣銘	節度公實錄 賜祭文 輓 墓碣銘
北兵使公實錄 <sup>8)</sup> 賜祭文 附李判書祭文 碑銘	少節度公實錄 賜祭文 祭文 墓碣銘 影閣重修文	少節度公實錄 賜祭文 祭文 墓碣銘 影閣重修文	少節度公實錄 賜祭文 祭文 墓碣銘 影閣重修文
			鶴樓公事蹟 行狀 墓碣銘
先世事蹟跋	文獻錄跋	文獻錄跋	文獻錄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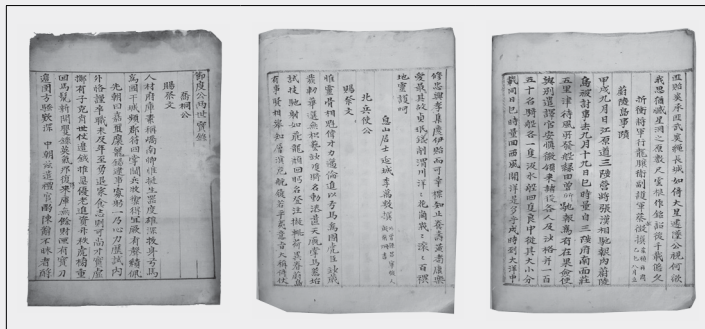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충효문무록』에 들어있는 「절도공양세실록(節度公兩世實錄)」편목이다. 「절도공양세실록」이란 편목 하에 세목으로 절도공(節度公) 장시규(張是奎)에 대한 사제문(賜祭文), 만(輓), 비명(碑銘), 이어서 북병사공

8 北兵使公實錄은 목록에는 없으나, 본문에는 제목이 있어서 필자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北兵使公) 장한상(張漢相)에 대한 사제문(賜祭文), 부이판서제문(附李判書祭文), 비명(碑銘)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책의 본문에서는 장한상의 사제문 앞에 「북병사공실록(北兵使公實錄)」이라는 편 제목이 들어 있다. 『충효문무록』의 「절도공양세실록」은 이후 『승평문헌록』에서 「절도공실록(節度公實錄)」과 「소절도공실록(少節度公實錄)」이라는 편목으로 정착된다.

## 2. 학서주손가본 「절도공양세실록」의 「울릉도사적」

필자는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의 학서주손가 문헌 속에서 필사본 『절도공양세실록』을 새로 발견하였다. 이 학서주손가본 『절도공양세실록』은 원래의 앞표지와 뒷표지는 모두 떨어져나가고 없으며(한국국학진흥원에서 표지를 새로 만들고 수리함), 책의 끝부분에 「울릉도사적」이 실려 있으나 「울릉도사적」의 후반부 몇 장은 떨어져 나가고 없다. 학서주손가본에는 경덕사본을 기준으로 6쪽 3행 이하 일곱 행, 7쪽 열 행, 8쪽 세 행, 9쪽 일곱 행 등 총 27행(약 3쪽 정도)이 결락되고 없다.



(그림 5) 「절도공양세실록」(첫면)

「북병사공」(첫면)

「울릉도사적」(첫면)

학서주손가본과 경덕사본의 「울릉도사적」을 대조해 보면, 오탈자 등 글자 출입이 눈에 띄는데, 학서주손가본이 오탈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경덕사

본을 대본으로 삼아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sup>9</sup> 학서(鶴棲) 장규섭은 경자보(庚子譜) 편찬과 『충효문무록』 편찬을 주도하였는데, 『충효문무록』에 처음으로 「절도공양세실록」이 편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 그 당시(1900) 경덕사 소장의 『절도공양세실록』을 활용하고, 또 별도로 1부를 필사하여 보관한 것이 학서주순가 문헌 가운데서 발견된 『절도공양세실록』이 아닐까 추정한다.

표2. 「울릉도사적」 4종 글자 출입 예시

「교동수사공만제록」 「울릉도사적」 (경덕사본)		「절도공양세실록」 「울릉도사적」 (경덕사본)		「절도공양세실록」 「울릉도사적」 (학서주순가본)		「절도공양세비명」 「울릉도사적」 (경덕사본)	
張某	1면 1행	張漢相	1면 1행	張漢相	1면 1행	張漢相	1면 1행
搜事	1면 1행	被討事	1면 2행	被討事	1면 2행	被討事	1면 2행
領率	1면 3행	領來	2면 2행	領來	1면 4행	領來	1면 5행
水汲船	1면 4행	汲水船	2면 3행	汲水船	1면 5행	汲水船	1면 6행
自北蔽天	1면 8행	自此蔽天	2면 7행	自此蔽天	2면 3행	自北蔽天	2면 4행
東西北三處，亦有篁竹田十一處	3면 2행	누락	4면 2행	누락	3면 9행	누락	4면 7행
四望遠近	3면 6행	西望遠近	4면 7행	西望遠近	4면 3행	西望遠近	5면 6행
又有石葬十五所，北方長谷	3면 7행	누락	4면 8행	누락	4면 4행	누락	5면 7행
西南大谷有人居基址七所	3면 9행	누락	4면 9행	누락	4면 5행	누락	5면 8행
猫鼠	5면 1행	猫兒	6면 1행	猫兒	5면 9행	猫兒	8면 2행
十四處	8면 5행	四五處	10면 3행	四五處	7면 10행	四千處	14면 6행
馳報事	9면 2행	馳報狀	10면 10행		결락	馳報狀	15면 7행

#### IV. 「울릉도사적」과 「울릉도」 관련 재론(再論)

유미립 박사는 필자의 논문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9 중간에 언제인가 좀먹은 부분을 수리한 부분들에 더러 다른 글자를 쓴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無適所向을 無敵所向으로, 可藏處를 可葬處로 잘못 옮긴 곳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를 대상으로 거의 축조 비판식의 논문을 발표하였다.<sup>10</sup> 신광박(申光璞)에 관한 새로운 사료를 제시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거나 추론에 근거한 주장들이기 때문에 비판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논쟁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의 논지를 과도하게 밀고 나가 필자의 의도를 과잉 해석하거나 심지어 오해하여 반론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특히 필자의 본래 주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만한 부분에 대해 필자의 본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반론을 펼쳐 보려고 한다.

### 1. 「울릉도사적」의 필사자 신광박과 필사 연도 문제

먼저 「울릉도사적」의 발견 경위에 대한 필자(이하 이원택으로 표기)의 서술에 대하여, 유미림 박사는 ‘울릉도사적의 발굴 경위’라는 소제목으로 그간의 경위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서술하였는데, 이원택의 서술에서 부족한 점을 보충해준 것으로 받아들이며 감사드린다.

다음으로 『절도공양세비명』에 들어있는 「울릉도사적」의 필사 연도에 대해, 이원택의 주장은 필사 연도가 1722년이 아니고 장한상 사후의 어느 임인년(1782, 1842, 1902, 1962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추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교동수사공만제록』과 『절도공양세실록』은 위의 어떤 임인년 이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론하였다.<sup>11</sup>

이에 대해 유미림 박사는 「울릉도사적」이 장한상의 「사후에 필사된 것이 맞다면 임인년을 1722년으로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후 50년이 훨씬 지난 1782년 혹은 그 이후에 비명과는 관계없는 1694년의 보고서를 다시 필사·삽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그때 「울릉도사적」은 1694년경 필사했던 것을 삽입한 것인가, 아니

10 유미림, 앞의 논문.

11 이원택, 앞의 논문, 10-11쪽 참고.

면 1782년 전후에 다시 필사한 것인가?”<sup>12</sup> 나아가 이원택이 「울릉도사적」뿐만 아니라 그 글이 실려있는 『절도공양세비명』전체를 신광박이 썼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유미림 박사는 서체 검증을 통해 이원택의 견해를 논박하였다. 이원택은 일반인의 눈으로 보아 같은 글씨로 보인다고 한 것이지, 서체를 감식할 만한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유미림 박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체 검증을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신광박이 임인년에 『절도공양세비명』을 엮었다는 사실은 성립하지만, 이런 사실로 인해 임인년이 「울릉도사적」의 필사 연도임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sup>13</sup>

유미림 박사의 논지는 『절도공양세비명』에 들어 있는 글들의 서체가 모두 다르고, 심지어 「울릉도사적」 본문의 서체와 그에 부기 되어 있는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라는 12글자의 서체도 다르기 때문에 신광박이 『절도공양세비명』을 필사한 것이 아니라 편집만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집 시기가 1782년 임인년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유미림 박사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료를 찾아내었기 때문이다. 유미림 박사는 『절도공양세비명』에 들어 있는 「울릉도사적」의 필사자로 간주되던 신광박에 관한 사료를 찾아낸 것이다.

신광박의 생몰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사료가 있다. 조선 후기 무반의 한 사람인 노상추(1746~1829)가 남긴 『盧尙樞日記』에 ‘신광박(申光璞)’이라는 인물이 보인다. 정조 2년(1778) 5월 7일자 일기에 “尙州道湖申光璞, 來訪告歸”가 보이고, 순조 15년(1815) 1월 28일자 일기에 “晚蛇浦申光璞來訪, 卽辛巳生云”이 보인다. 경상도 선산이 고향인 노상추는 청년기와 노년기를

12 유미림, 앞의 논문, 54쪽 참고.

13 유미림, 앞의 논문, 58쪽 참고.

고향에서 보냈지만 관직 생활을 하는 30여 년은 한양·삭주·흥주 등지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일기에 방문객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신광박의 이름이 보이므로 신광박이 동향인 노상추의 임지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일기에 따르면, 신광박이 상주 도호를 지냈으며 신사년 즉 1761년생이고 사포(蛇浦) 즉 의성 사람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노상추를 방문한 신광박은 『절도공양세비명』에 실린 「울릉도사적」의 신광박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이로써 신광박이 말한 임인년 봄은 1782년이고 그의 나이 22세에 『절도공양세비명』의 편집에 관계했다는 사실이 성립한다.<sup>14</sup>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유미림 박사의 글을 보고 이원택도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노상추일기』에서 신광박을 검색하였는데, 위의 인용문과 같이 두 번 검색되었다. 한 군데는 상주(尙州)의 도호(道湖) 출신으로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사포(蛇浦) 출신으로 나온다. 유미림 박사는 도호를 벼슬이름으로 본 듯한데, 벼슬이름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았다. 도호와 사포는 모두 위천(渭川, 渭水라고도 불림)가에 있는 이웃 마을이다. 도호는 현재 단밀면 용곡리 도리비 마을로 추정되고, 사포는 유미림 박사가 언급한 것처럼 구천면 용사리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두 곳 모두 상주목 단밀현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미림 박사는 “『절도공양세비명』에 실린 세 가지 문서는 신광박 이전 즉 1782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는 그 이전에 필사되어 있던 세 문서를 1782년에 『절도공양세비명』으로 엮으면서 기입한 것”이 되고, “또 다른 가능성은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라는 열두 글자를 신광박이 임인년에 쓴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사실을 밝혀 놓기 위해 기입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5</sup>

14 유미림, 앞의 논문, 59쪽 참고.

15 유미림, 앞의 논문, 60쪽.

이에 대해 이원택은 딱 한마디만 물겠다. 유미림 박사의 주장대로 신광박이 필사자가 아니라 편집자라면, 왜 “申光璞編”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申光璞書”라고 쓰여 있는가? 조선시대의 글에서 편집하였다는 뜻으로 “編”자 대신에 “書”자를 쓴 경우도 있는가?

또 유미림 박사는 “『절도공양세실록』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사제문과 만사, 비명이 실려 있어 제목과도 맞지 않는다. 『절도공양세비명』은 그 안에 수록한 내용에 비춰보면 오히려 이 제목이 더 부합된다. 그럼에도 두 서책 모두 제목과 어울리지 않는 「울릉도사적」을 신고 있다.”<sup>16</sup>라고 하는데, 이원택의 생각은 오히려 「사제문」, 「만사」, 「비명」, 「울릉도사적」 등이 『절도공양세실록』이라는 명칭에 딱 들어맞는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보았듯이 순천장씨 가문만 보아도 사적(事蹟), 유사(遺事), 실록(實錄), 실기(實記) 등이 『문헌록』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은 조선시대에 널리通行되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다소 억울하여 반론을 제기하겠다. 유미림 박사는 특별히 인용할 필요도 없는 다음의 구절 즉 “장한상 후손이 『승평문헌록(昇平文獻錄)』의 발문에서 ‘聖上踐阼後三十七年流火月后孫奎燮敬誌’ 즉 고종 37년(1900)에 만들어졌음을 밝힌 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각주까지 달아 마치 이원택이 게을러서 “성상천조후37년”이 언제인지 계산을 하지 못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원택 박사는 초간본에 “聖上踐阼後三十七年壬戌流火月后孫奎燮敬誌”라고 쓰여 있던 것이 복간본의 동일한 발문에서는 간지 “임술”만 삭제했다고 했는데(앞의 글, 14쪽), 성상 37년은 임술년이 아니라 경자년이다. 복간본에서 ‘임술’을 삭제한 이유는 이 때문으로 보인다.<sup>17</sup>

16 유미림, 앞의 논문, 59쪽 참고.

17 유미림, 앞의 논문, 60쪽 각주 20 참고.

그런데 원래 이원택의 논문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조금 길지만 전문을 인용해 본다.

『승평문헌록』은 의성 비안의 순천 장씨가에 전승되던 선대의 문헌들을 후손 장규섭(張奎燮)이 경자년(1900)에 편집·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초간본에 장규섭의 발문이 실려 있는데, “성상천조후삼십칠년임술유화월후손규섭경지(聖上踐阼後三十七年壬戌流火月后孫奎燮敬誌)”라고 하였다. 그런데 ‘성상천조후삼십칠년’은 ‘고종이 등극한 지 37년’이라는 뜻이므로 임술년(1922)이 아니라 경자년(1900)이 된다. 복간본의 동일한 발문에서는 단지 ‘임술’만 삭제하고 인쇄하였다.<sup>18</sup>

이 『승평문헌록』의 초간본과 복간본에 대한 서술은 금번 새로운 자료 『충효문무록』의 발견으로 모두 수정해야 할 오류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충분히 서술하였다.

## 2. 『서계잡록』의 『울릉도』에 관한 천견(淺見) 재론(再論)

유미림 박사의 이원택 비판에 대해 바로 일일이 반론을 제기하기 전에, 논점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이원택의 기본 입장을 다시 정리하여 제시한다.

첫째로 『서계잡록(西溪雜錄)』이란 책에 대해 이원택은 본격적으로 연구해본 적이 없어 아직 정해진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책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서계종택(西溪宗宅)에서 나왔으며, 여러 사람의 글이 묶여 있고, 표지(제목)도 없는 책인데, 장서각에서 기탁을 받을 때 『서계잡록』이라고 ‘임의로’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sup>19</sup>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글들이 모

18 이원택, 앞의 논문, 14쪽.

19 김기혁·윤용출, 『울릉도·독도 역사지리 사료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124쪽.; 유미림, 『우리

두 박세당의 글이라거나, 박세당이 친히 글씨를 써서 필사하였다고 볼 근거도 확실치 않은 것 같다. 유미림 박사는 서체를 근거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필자는 글씨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서체를 가지고 문서를 감정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책자가 박세당이 쓴 것인지 아니면 그의 후손 중 누군가가 쓴 것인지 필자는 판정할 능력이 없다. 다만, 박세당이 남학명의 『와유록』에 서문을 써준 적이 있기 때문에, 『와유록』에 들어 있는 「울릉도」를 박세당 또는 그의 후손이 필사해 놓았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로 이원택은 『서계잡록』의 「울릉도」라는 글에는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 글이 하나의 제목에 연속되어 있을 뿐, 그것이 원래 「울릉도」란 제목 아래 함께 묶여있는 완결된 하나의 글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원택은 이 글의 제목을 셋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와유록』의 「울릉도」와 일치하는 부분은 「울릉도」로, 군관 최세철의 정탐 부분은 「군관최세철울릉도정탐보고서」로, 장한상의 수토 부분은 「삼척영장장한상울릉도수토보고서」(경덕사의 「울릉도사적」과 혼동의 염려가 있으니, 구분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로 나누어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이원택은 『와유록』의 「울릉도」와 『서계잡록』의 「울릉도」(장한상 관련 부분 제외)는 그 저자가 누구이던(박세당이던, 남학명이던, 제3의 인물이던) 동일인의 작품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울릉도」는 당시의 교과서나 다름없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八道總圖)」를 전제로,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의 왼쪽에 지세는 낮으나 울릉도만큼 큰 섬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당시의 교과서적 지식이라는 것이다. 장한상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들고 성인봉에 올라 서쪽으로 대관평을 보았으나 그 중간에 「팔도총도」에 나온 우산도(독도)를 찾지 못했다. 대신에 동남쪽 300리 멀리 울릉도 크기의 1/3에 해당하는 섬(독도)을 목격하고 와서 정부에 보고한 것이다. 당시 장한상이 울릉도에 진짜로 다녀온 것인지 의심

사료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3, 54쪽.

하는 자도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 지식인 관료들은 「팔도총도」를 교과서처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장한상이 대관령은 보았으면서도 울릉도의 왼쪽에 그려져 있는 우산도를 보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장한상과 안용복의 우산도(독도) 목격 성과는 신경준 단계에 이르러 지리지에 반영되었다.

넷째, 유미림 박사의 아래와 같은 표현에는 유감스럽게도 이원택이 우산도=독도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들어 있다. 이는 이원택의 학술적인 주장을 왜곡하여 이해하는 지점으로, 아래처럼 맥락을 무시한 채 보면 마치 검열관의 태도를 연상케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나아가 그는 박세당의 글을 장한상의 글과 연관시켜 박세당이 ‘우산도’라고 한 점을 독도로 해석한 필자의 논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이원택 박사의 논지는 박세당의 「울릉도」에서 보이는 우산도 관련 내용이 『동국여지승람』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우산도’를 울릉도에서 맑은 날 보이는 섬으로 해석한 필자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sup>20</sup>

그러나 우산도가 육지에서 보이는가? 그가 말하는 우산도는 어느 섬을 말하는가? 죽도인가 독도인가?<sup>21</sup>

박세당이 기술한 울릉도와 우산도 인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인식과 다름이 없으므로 우산도를 독도로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sup>22</sup>

이와 같은 언급이 충분한 설명 없이 발췌되어 악용되면, 이원택은 우산도=독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난 받을 수 있다. 이원택은 『와유록』과 『서계잡록』의 「울릉도」에 나오는 우산도와 울릉도 관련 구절의 번역(translation)

20 유미림, 앞의 논문, 50-51쪽 머리말 참고.

21 유미림, 앞의 논문, 76쪽 참고.

22 유미림, 앞의 논문, 86쪽 국문초록 참고.

tion) 문제를 논한 것이다. 그리고 그 번역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에 있어서는 『서계잡록』의 「울릉도」 즉, 『와유록』의 「울릉도」가 장한상이 독도를 목격한 사실의 의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와유록』의 「울릉도」에서 우산도와 울릉도 인식은 『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 단계에 지나지 않음을 이야기한 것이지,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이원택은 지난번 논문에서 “우산도(독도)”로 표기하여 우산도=독도를 전제하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와유록』의 「울릉도」의 우산도(독도) 위치에 대한 인식이 「팔도총도」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누구도 「팔도총도」에 그려진 우산도가 울릉도의 왼쪽에 있다고 그것이 독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 조선 초기의 지리 인식 수준이 그 단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울릉도」의 아래 인용문에서 한문 표점을 끊어 읽는 방식에 대해, 이원택은 문법으로 보나 맥락으로 보나 기존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자 한다. 한문은 매우 정확한 언어라는 경구가 떠오른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원문은 다음과 같다.

盖二島去此不甚遠，一颿風可至。于山島勢卑，不因海氣極清朗，不登最高頂，則不可見，巒陵稍峻，風浪息，則尋常可見。麋鹿熊羆，往往越海出來，朝日纔高三丈，則島中黃雀，群飛來投竹邊串。

유미림 박사는 이 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이 여기(영해 일대)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이를 수 있는 정도이다. 우산도(于山島)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울릉이(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 풍랑이 잦아지면(육지에서) 이따금 사슴과 노루들이 바다 건너 오는 것을 예사로 볼 수 있다. 아침 해가 세 길 높이로 떠오를 즈음이면, 섬 안의 누

런 참새들이 죽변곶(竹邊串)으로 무리지어 날아와 앉는다.<sup>23</sup>

유미림 박사의 번역문을 한 문장씩 차례로 구체화 시켜보자. 첫째 문장은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이 여기(영해 일대)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 유박사는 어디에 이를 수 있는지 대상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문맥으로 보면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이 목적지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울릉도와 우산도는 두 섬이면서 한 세트의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육지에서 두 섬까지의 거리가 한번 큰 바람이 불면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고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유미림 박사는 두 번째 문장부터는 갑자기 두 섬 사이의 거리로 입장을 바꾼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유미림 박사의 방식으로 하면 ‘우산도(于山島)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울릉도의)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우산도가) 보이지 않는다.’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문장 역시 두 섬 사이의 거리로 해석해야 나름의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먼저 울릉도와 우산도 사이의 거리를 염두에 두면, (1) ‘울릉이 (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지면, (울릉도로부터) 이따금 사슴과 노루들이 바다 건너 오는 것을 (우산도에서) 예사로 볼 수 있다.’; (2) ‘울릉이 (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지면, (우산도로부터) 이따금 사슴과 노루들이 바다 건너 오는 것을 (울릉도에서) 예사로 볼 수 있다.’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박사의 해석문을 보면 모호한 점이 있다. 즉 사슴과 노루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오며, 사슴과 노루들이 바다 건너 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번역되어 있다. (1) ‘울릉이 (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지면, (육지에서, ‘볼 수 있다’로 연결) 이따금 사슴과 노루들이 (울릉도로부터) 바다 건너 오는 것을 (육지에서) 예사로 볼 수 있다.’의 뜻인지, 아니면 (2) ‘울릉이 (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지면, (육지에서=육지로부터)

23 유미림, 앞의 논문, 72쪽.

이따금 시슴과 노루들이 바다 건너 오는 것을 (울릉도에서) 예사로 볼 수 있다.’  
는 것이 된다. 이 문장을 유박사처럼 해석하면, 또 하나의 난점은 ‘울릉이  
(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라는 구절이 어느 구절과 상관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울릉이 더 높은 것 하고 시슴과 노루들이 바다 건너 오는 것하고 어  
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울릉이 더 높아 짐승들이 바다 건너 오는 것  
을 볼 수 있고, 우산은 낮아 짐승들이 바다 건너 오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  
인가.

같은 방식으로 네 번째 문장은 (1) ‘아침 해가 세 길 높이로 떠오를 즈음이  
면, 섬(우산도) 안의 누런 참새들이 (울릉도로) 무리지어 날아와 앉는다.’ 또는  
(2) ‘아침 해가 세 길 높이로 떠오를 즈음이면, 섬(울릉도) 안의 누런 참새들이  
(우산도로) 무리지어 날아와 앉는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미림 박  
사는 네 번째 문장을 염두에 두고 세 번째 문장을 ‘울릉이 (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지면, 이따금 시슴과 노루들이 (울릉도로부터) 바다 건너  
(육지로) 오는 것을 (육지에서) 예사로 볼 수 있다.’고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만 굳이 울릉도에서 우산도를 보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겠는가?

이 문장을 이원택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이번에는 이해하기 더 쉽도  
록 괄호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추가하여 분명하게 제시하겠다.

대개 두 섬(우산도와 울릉도)은 여기서(영해, 즉 육지)부터 그 거리가 멀지 않아 한  
번 바람을 타면 (우산도와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해  
기(海氣)로 인해 아주 맑지 않거나<sup>24</sup>, (육지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영  
해, 즉 육지에서, 우산도가) 보이지 않는다. 울릉도는 (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 풍  
량이 잦아들면, (영해, 즉 육지에서, 울릉도를) 늘 볼 수 있다. (울릉도의, 또는 두 섬의) 사

24 해기(海氣)로 인해 아주 맑지 않거나(不因海氣極晴朗) : 지난번에는 因이 앞의 勢俟를 받는다고 보고 海氣를 주어로 極晴朗을 동사로 해석하였으나, 심사위원의 권고를 받고 나서 이번에는 因을 전치사로 보고 海氣를 因의 목적어로 해석하였다. 감사드린다. 해기(海氣)는 아래 인용한 이산해의 「울릉도설」의 ‘흐릿한 기운’과 같은 것이다.

슴, 곶, 노루 등이 간간이 바다를 건너 (육지로) 나오고, 아침에 해가 겨우 세 길쯤 떠오르면, 섬(울릉도 또는 두 섬) 안의 피꼬리들이 무리지어 날아와 죽변 곶에 내려와 앉는다.

이에 대해 유미림 박사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이원택 박사는 … ‘늘상 볼 수 있다(尋常可見)’에서 끊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대상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끊는 것은 문리에 맞지 않는다. 그는 바다를 건너오는 짐승들을 “(울릉도의, 또는 두 섬의)” 짐승들로 해석했는데, 앞 문장에서 ‘울릉도’가 주어로 되어 있는데, 뒤 문장에서는 ‘(울릉도의, 또는 두 섬의) 시슴, 곶, 노루 등이’라고 하여 주어를 애매하게 처리한 것도 맞지 않는다.<sup>25</sup>

어쨌든 『와유록』 「울릉도」 첫 번째 문장 번역에서는 이원택과 유미림 박사의 의견이 일치한다. 두 섬 즉 우산도와 울릉도가 영해 즉 육지에서 멀지 않다는 것이다. 이원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八道總圖)」를 보고 이 구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답사를 하고 글을 지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려오던 일반적인 교과서적 지식을 가지고 글을 지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산도가 바다 공기가 청량하거나 육지의 높은 곳에 올라야 보인다고 하고, 울릉도는 육지에서 늘 보인다고 한 것이다.

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고,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들이 첫 번째 문장을 설명해 주는 보조 문장들이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모두 육지에서 두 섬 사이의 거리를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부연 설명한 것이다. 특히 “于山島勢卑, 不因海氣極清朗, 不登最高頂, 則不可見。”과 “鬱陵稍峻, 風浪息, 則尋常可見.”은 맺구이다. 우산도는 낮고, 울릉도는 높으며, 따라서 우산도는 육지의 최고로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25 유미림, 앞의 논문, 77쪽.

울릉도는 파도만 잠잠해도 육지에서 늘 보인다고 한 것이다. 이 두 문장을 뗏구라고 보지 않으면, 더 이상 토론을 하기 어렵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에서 두 섬과 육지 사이에 짐승과 새들이 왕래할 만큼 가깝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산해의 「울릉도설」을 보면, 앞의 「울릉도」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버랩된다. 첫째는 육지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이다.

울릉도는 동해 가운데 있는 섬으로, 육지와 거리가 몇 백 리가 되는지 모른다. 매년 가을과 겨울이 교차할 즈음 흐릿한 기운이 말끔히 걷히고 바다가 청명할 때, 영동(嶺東)에서 바라보면 마치 한 조각 푸른 이내가 수평선 저편에 가로놓여 있는 것과 같다. 유독 진주부(眞珠府: 삼척)가 이 섬과 가장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행인들 중 소공대(召公臺)에 오른 이들은 더러 이 섬의 숲과 뫼부리의 형상을 명료하게 볼 수 있으니, 이로써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둘째, 울릉도로부터 짐승과 새들이 육지로 나왔다든 것이다.

기성(箕城: 평해) 사람들이 말하기를, “노루나 사슴, 갈대, 대나무 따위가 왕왕 바닷가 백사장에 떠밀려 오고, 이름 모를 새들이 날아서 바다를 건너 해변까지 와서는 그만 힘이 빠져 날갯죽지를 드리운 채 떨어져 아이들에게 잡힌 적도 자주 있다. …”<sup>27</sup>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미림 박사도 『서계잡록』의 「울릉도」 인용문 첫째 문장을 ‘두 섬’과 육지 사이의 거리로 번역하고 있다. 이 점이 「울릉도」의 요지이며 포인트이다. 그래서 이원택은 「울릉도」에 나타난 우산도·울릉도

26 이산해, 『鵝溪遺稿』 권3, 「鬱陵島說」(『울진 고문헌 자료집성』, 490쪽에서 인용)

27 이산해, 『鵝溪遺稿』 권3, 「鬱陵島說」(『울진 고문헌 자료집성』, 490쪽에서 인용)

인식이 『신증동국여지승람』 단계의 인식이라고 한 것이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장한상과 안용복의 공적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유미림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위 문장을 해석하는데 논란이 있는 이유는 ①저자가 관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 기술된 내용의 맥락으로 보건대, ②두 섬이 육지(영해)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했으므로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날씨와 고도라는 조건이 맞으면 두 섬이 육지에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원택 박사가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바다 공기가 아주 맑지 않거나 (육지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영해, 즉 육지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박세당은 앞 문장에서 주어를 ‘두 섬이’라고 기술한 것과 달리, 뒤 문장에서는 주어를 ‘우산도는’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③뒤 문장에서 날씨가 맑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인다고 한 섬은 우산도를 가리킨다. ④다만 어디에서 우산도가 보이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아 해석에 혼란을 주는 것이다. 박세당의 문장대로 해석한다면, 우산도는 날씨가 맑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조건만 충족되면 보이는 섬이다. 그렇다면 이때 ‘보인다’고 한 곳의 기준은 어디인가? ⑤필자는 우산도가 보이는 지점을 울릉도라고 해석했고, 이원택 박사는 영해나 육지로 해석하였다. 이원택 박사의 해석대로라면, 맑은 날 육지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산도가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원택 박사는 박세당이 기술한 “蓋二島去此不甚遠 一飄風可至”를 “대개 두 섬(우산도와 울릉도)은 여기서(영해, 즉 육지) 그 거리가 멀지 않아 한번 바람을 타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는데, ⑥이는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을 한데 묶어 육지에서 보이는 섬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근거를 박세당의 글이 ⑦『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조 첫머리 언급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데 두었다.<sup>28</sup>

28 유미림, 앞의 논문, 73-74쪽. ①~⑦은 인용자가 표시한 것임.

유미림 박사는 위의 서술에서 스스로 모순을 노정하고 있다. 유 박사는 문장의 맥락상 ②“두 섬이 육지(영해)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했으므로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날씨와 고도라는 조건이 맞으면 두 섬이 육지에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원택의 기술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심지어 ③“날씨가 맑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인다고 한 섬은 우산도를 가리킨다”고까지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④“다만 어디에서 우산도가 보이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아 해석에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②에서 “두 섬이 육지에서 보인다”고 해놓고, ④에서는 “분명히 하지 않아 혼란을 준”다고 한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유박사는 ①“저자가 관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원택이 보기에는 「울릉도」 저자의 관점은 매우 명확하다. 유박사는 ②에서 “두 섬이 육지에서 보인다”고 해놓고, ⑤에서는 “펼치는 우산도가 보이는 지점을 울릉도라고 해석했고, 이원택 박사는 영해나 육지로 해석하였다.”라고 한다. ⑥에서 ②를 한번 더 확인하여 스스로가 모순을 드러내면서, 논점을 ⑦『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 조항으로 옮겨간다. 그리하여 유미림 박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 조항은 “두 섬이 동쪽바다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두 섬 모두 육지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sup>29</sup> 나아가 “‘울릉도’에만 ( ) 형식의 분주가 붙어 있다. 분주는 ‘울릉도’에만 해당”<sup>30</sup>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두 섬이 동쪽바다에 있다’는 것은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에 대한 분주가 아닌가? 그리고 두 섬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울릉도에만 해당된다는 것인가? 나아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 그려진 우산도와 울릉도는 그 주석에서 말한 ‘두 섬’이 아니란 말인가? 『서계잡록』의 「울릉도」는 ‘팔도총도’와 같이 우산도와 울릉도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29 유미림, 앞의 논문, 75쪽.

30 유미림, 앞의 논문, 75쪽.

유미림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박세당은 우산도의 지세가 낮다고 했는데, 이원택 박사는 우산도가 육지에서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이때의 우산도는 지세의 고저와 상관없이 보이는 섬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산도는 육지에서 보이지 않는다.<sup>31</sup>

유미림 박사의 이와 같은 언급은 장한상·안용복 단계의 경험적인 관점을 무리하게 그들 이전의 옛 문헌 번역에 투사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동국여지승람』이 만들어진 조선 전기 성종대의 인식 수준에서는 ‘팔도충도’에서 볼 수 있듯이 우산도의 위치 인식이 정밀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순천장씨 학서주손가 기탁 문헌 가운데서 장한상 관련 자료를 다수 새로 발견하고,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 자료를 『충효문무록』과 『절도공양세실록』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순천장씨 가문의 족보 편찬과 문헌록 편찬의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필자가 작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자료 부족으로 범한 오류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또 필자의 작년 논문에 대하여 축조 비판을 행한 유미림 박사의 비판에 대하여 필자의 천견(錢見)을 재정리하여 서술하였다. 이 논문의 내용 및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순천장씨 가문의 문헌록 편찬이 족보 편찬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족보편찬은 지금까지 총 6회 있었으나 본고에서는

31 유미림, 앞의 논문, 76쪽.

1900년, 1922년, 1955년, 1977년 등 4회를 주 대상으로 소개하였다. 4회의 족보편찬과 함께 문헌록이 아울러 편찬되었는데, 첫 번째 문헌록이 바로 『충효문무록』이었고, 뒤에는 『승평문헌록』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 편찬되었다.

둘째, 『충효문무록』에 「절도공양세실록」이란 명칭의 편목이 처음으로 편성되었으며, 이후 『승평문헌록』에 「절도공실록」과 「소절도공실록」으로 나뉘어 계속 등재되어 왔다.

셋째, 경덕사 소장본 『절도공양세실록』과 같은 내용의 또 다른 필사본 『절도공양세실록』이 학서주손가 문헌 속에서 나왔는데, 아마도 『충효문무록』을 편찬하면서 경덕사본 『절도공양세실록』을 사용하고 나서 한 부를 필사해 놓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넷째, 「울릉도사적」 및 『서계잡록』 「울릉도」에 대한 필자의 몇 가지 논점을 비판한 유미림 박사의 논지를 재비판하고 필자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는 논지를 서술하였다.

끝으로, 이번에 새로운 자료를 소개한 의의는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순천장씨 학서주손가(鶴棲胄孫家) 기탁 문헌들과 의성조문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덕사 기탁 문헌들을 합하여 연구하여야 순천장씨 문헌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장한상 및 그의 「울릉도사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

[참고문헌]

『順天張氏族譜』(乙丑譜), 『順天張氏族譜』(庚子譜), 『順天張氏族譜』(壬戌譜), 『順天張氏族譜』(乙未譜), 『順天張氏族譜』(丁巳譜), 『忠孝文武錄』, 『昇平文獻錄』, 『節度公兩世實錄』, 『節度公兩世碑銘』, 『喬桐水使公輓祭錄』, 『臥遊錄』, 『西溪雜錄』, 『新增東國輿地勝覽』, 『鵝溪遺稿』

順天張氏譜所 編, 『昇平(順天張氏)文獻錄』, 大邱: 大譜社, 1992.

김기혁·윤용출, 『울릉도·독도 역사지리 사료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울진문화원, 『울진 고문헌 자료집성』, 울진문화원, 2016.

유미림, 『우리 사료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3.

한국국학진흥원 편, 『2003년 한국국학진흥원 수탁 국학자료 목록집』, 한국국학진흥원, 2004.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獨島研究』,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김영진, “조선후기 ‘臥遊錄’ 이본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48집, 한국고전문학회, 2015.

유미림, “「울릉도사적」의 필사 연도와 「울릉도」의 ‘우산도’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변석”, 『동북아역사논총』 64호, 동북아역사재단, 2019.

이원택,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영토해양연구』 16집,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8.

이종목, “조선시대 臥遊 文化 研究”, 『진단학보』 제98집, 진단학회, 2004.

최장근, “독도명칭: ‘우산도’가 ‘석도’로 전환하는 과정의 고찰”, 『한국의 독도수호정책과 일본의 독도침탈정책 실상』(독도연구보존협회 2013년 학술대론회 자료집), 사단법인 독도연구보존협회, 203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검색서비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검색서비스.

## 국문초록

이 글은 그동안 울릉도·독도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순천장씨 학서주손가(鶴棲曹孫家) 기탁 문헌들 가운데서 1694년 울릉도 수토를 하였던 장한상(張漢相) 관련 자료를 소개하면서, 필자가 경덕사 자료만을 참고하여 발표한 기왕의 연구에서 잘못 추정하여 기술한 사항들을 수정하고, 또 필자의 기왕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논박한 논문에 대해 필자의 관견(管見)을 재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순천장씨 가문의 문헌록 편찬이 족보 편찬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1900년 경자보의 편찬과 함께 『충효문무록』이 편찬되었고, 그후 계속하여 족보가 편찬될 때마다 문헌록도 『승평문헌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편찬되었다.

둘째, 『충효문무록』의 편목에 「절도공양세실록」이 처음으로 편성되었으며, 이후 『승평문헌록』에 「절도공실록」과 「소절도공실록」으로 나뉘어 계속 등재되었다.

셋째, 경덕사 소장본 『절도공양세실록』과 같은 내용의 또 다른 필사본 『절도공양세실록』이 학서주손가 문헌 속에서 나왔는데, 아마도 『충효문무록』을 편찬하면서 경덕사본 『절도공양세실록』을 사용하고 나서 한 부를 필사해 놓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넷째, 「울릉도사적」 및 『서계잡록』 「울릉도」와 관련한 필자의 주장에 대한 유미립 박사의 비판에 대해 재반론을 하여 필자의 기존 견해를 견지하였다.

〈주제어〉

독도, 장한상, 학서주손가, 「울릉도」, 「울릉도사적」, 『절도공양세실록』, 『충효문무록』, 『승평문헌록』

## ABSTRACT

Introduction of *Records of Loyalty and Filial Piety of Civil and Military Officials*(忠孝文武錄) and *Real Records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實錄), with an Argument against the Criticism of My Research on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

Rhee Wonta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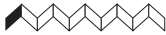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literary collections about General Jang Han-sang's Ulleungdo and Dokdo patrol governance in 17C Josun Dynasty, which the Suncheon Jang Family Hakseojusonga trusted to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in Andong.

First, it is confirmed that compilations of the literature of the Suncheon Jang Family were done periodically along with compilations of its genealogy. In 1900, *Records of Loyalty and Filial Piety of Civil and Military Officials*(忠孝文武錄) was compiled at the same time with the compilation of *Gyeongja-bo*(庚子譜), and since then, it has been continuously compiled under the name of *Literary Records of the Suncheon Jang Families*(昇平文獻錄). Second, the chapter of “Real Records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實錄) from the identically entitled book of *Real Records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實錄) was first compiled in *Records of Loyalty and Filial Piety of Civil and Military Officials*(忠孝文武錄), and was later included into the *Literary Records of the Suncheon Jang Families*(昇平文獻錄) as separated into two chapters of “Real Records of the General”(節度公實錄) and “Real Records of the Young General”(少節度公實錄). Third, another manuscript of *Real Records of the Two Generals* which was presumably copied from the identically-named book in the collection of Gyeongdeoksa Shrine is in Suncheon Jang Family Hakseojusonga literary collections. Fourth, I present an argument against the criticism of my research on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蔚陵島事蹟).

### Key Words

Dokdo, Usando, Jang Han-sang, Hakseojusonga(鶴棲靑孫家),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蔚陵島事蹟), *Real Records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實錄), *Records of Loyalty and Filial Piety of Civil and Military Officials*(忠孝文武錄), *Literary Records of the Suncheon Jang Families*(昇平文獻錄)



# 울릉도 마을지명의 형성과 고착과정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 1. 머리말

지명은 대체로 사람들이 장소를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명명의 직접적인 계기는 목격이다. 그런데 울릉도는 오랫동안 입도가 금지된 섬이었으므로 이 섬의 지역에 지명을 붙이게 된 것은 개척 이전 불법 입도자 및 개척 이후 거주자들의 목격이 시작되면서부터다. 그러므로 울릉도에서 지명, 특히 마을지명이 생성된 역사는 길지 않다. 개척 이전부터 한·일 양국인들의 입도가 끊이지 않았지만 1900년 전후 조사를 자주 하고 기록을 자세히 남긴 자는 주로 일본인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이 우리말을 잘못 이해하여 표기를 잘못 하거나 일본식으로 명명한 경우도 없지 않다. 이렇게 해서 와전된 지명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정착했고, 해방 후 한인들에 의해 고착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 현지조사가 활발해지고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졌는데 현지인에게서 들은 유래가 그대로 조사자에게 전해졌다. 한편에서는 울릉도민과 울릉군이 자체적으로 기

\* 논문 투고일: 2019. 10. 30, 심사 완료일: 2019. 11. 13, 게재 확정일: 2019. 11. 14.

록했고 이는 울릉군지(1989)의 간행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현재 울릉도 곳곳에 적혀 있는 지명 표지판과 관광안내판은 표기가 잘못되거나 본래의 의미와 동떨어진 유래를 적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전자의 경우를 대표하는 것이 현포(玄圃), 석포(石圃), 학포(鶴圃)이고, 후자의 경우가 사동(沙洞), 행남(杏南), 예선창·고선창, 삼막, 간령(間嶺) 등이다. 대풍감, 사태감, 황토감 등도 본래는 대풍구미, 사태구미, 황토구미인데 전혀 다른 의미의 ‘감(坎)’으로 바뀌어 있다. 게다가 현전하는 지명 중 일부는 일제 강점기 이후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유래와 새 지명 등에 관해 그동안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전하는 한국 자료에만 의존하여 연구하고 일본 측 기록이나 새로 발굴된 수토키록 등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릉도 지명을 다룬 선행연구로는 김기혁·윤용출<sup>1</sup>의 연구와 남경란<sup>2</sup>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기혁·윤용출의 연구는 지명이 시기에 따라 바뀐 차이에 주목하여 ‘조선시대 지명’과 ‘일제지명’으로 구분하고 고지도 및 조선시대 수토키록과 일제 강점기에 나온 자료를 망라하여 분석했으나 일본 측 기록까지 분석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 측 기록을 검토하면 조선시대 지명이 어떻게 일본인에 의해 왜전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일제시대 지명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있다. 수층동, 산악동, 창동, 행남과 같은 지명은 본래 조선시대 지명에서 파생한 것인데 이들이 <조선지형도>(1917)에 처음 보였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일제지명으로 잘못 분류되고 있다. 그 외에 일제지명으로 분류된 신리, 내평전, 내수전, 고선창, 나팔등, 신촌, 광암, 마암, 주사곡, 죽암 등은 『조선지리지』(이하 『지리지』로 약칭)에 수록된 내평전과 나팔등을 제외하면, 1910년 이전부터 보였던 조선시대의 지명들이다.<sup>3</sup> 남

1 김기혁·윤용출, 2006, 「조선-일제 강점기 울릉도 지명의 생성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18(1), 38~62쪽; 김기혁, 2011, 「조선 후기 울릉도의 수토키록에서 나타난 부속 도서 지명 연구」, 『문화역사지리』 23권 2호.

2 남경란, 2003, 「경북 동해안 방언의 어휘적 특징」 울릉군 지역의 방언 어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총서』 28, 영남대학교; 남경란, 2008, 「울릉군 지명 연구」, 『독도연구』 4호, 197~238쪽.

3 이 외에도 서달령과 천년포, 삼본입, 관음도, 석봉, 가두봉, 초봉, 미륵산, 관모봉, 난봉, 대등, 복호폭, 용천 등을 일제지명으로 분류했다(김기혁·윤용출, 2006, 앞의 글).

경란은 현재 사용되는 지명 125개<sup>4</sup>의 유래를 고찰하기 위해 이규원의 검찰 일기와 『정처사 술회가』, 『구한국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1912), 『조선지지 자료』, 『신구 대조 조선전도 부군면리동 명칭일람』(1917), 『조선지형도』(1917)를 참조했다고 하지만, 변천의 경위를 밝히지 않은 채 이칭을 함께 기술하고 있어 지명의 형성 시기 및 와전 여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한 기존 문헌에서 유래를 인용했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아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남경란의 연구는 지명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이를테면 ‘정들포’와 ‘석포’를 별개의 지명으로 분류했는데,<sup>5</sup> ‘석포’는 ‘정들포’에서 유래했으므로 ‘정들포’로 표기하거나 별개의 두 지명으로 다룬 것도 맞지 않는다.

이 글은 현전하는 지명의 형성과정을 검증하여 그것이 어떻게 와전·고착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지면에 한계가 있으므로 마을지명을 위주로 고찰하고자 한다. 표기는 지명의 음이 같더라도 한자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원문에 ‘한글’, ‘한자’, ‘한자(한글)’, ‘한자(일본어)’로 된 의미를 살리고자 한자를 한글로 바꾸지 않았음을 밝힌다.

## II. 조선시대 울릉도 지명의 형성과 변천

### 1. 수도제와 울릉도 지명의 형성

울릉도 지명은 대체로 본도와 주변 도서, 산천의 형세, 산물 등을 본 따 붙여진 경우가 많다. 섬이 정식으로 개척되기 전에는 수도관에 의해 명명된 지명이 많았다면, 개척 이후에는 거주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붙여진 것이 많다. 개척 초기에는 지명의 이름소 뒤에 구미, 작지, 포(浦), 암(岩), 산, 령(嶺),

4 125개는 남경란이 『울릉군지』(2007)를 편찬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조사한 지명이라고 한다.

5 남경란, 2008, 앞의 글, 230쪽; 235쪽.

재, 치(峙) 등의 형태소를 붙인 것이 많은 반면, 주민이 증가하고 행정적인 편제를 겪으면서 이름소 뒤에 리(里), 동(洞) 등의 형태소를 붙인 것이 많다.

수토제가 확립되기 전에는 안무사, 심찰사 등이 비정기적으로 조사했지만, 숙종 연간 ‘울릉도 쟁계’를 겪은 뒤로는 수토제를 실시하여 삼척진 영장과 월송포 만호를 교대로 정기적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수토관들은 울릉도와 주변 도서를 수토한 후 도형(圖形)과 복명서를 비변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람에 따라 편차가 커서 복명서가 소략하거나 남아 있지 않기도 하다.

1699년 월송포 만호 전회일의 수토가 시작된 이래 3년마다 수토제가 실시되었지만, 관련 기록을 남긴 자는 1711년 5월에 수토한 삼척진 영장 박석창이다. 그는 수토 행적을 울릉도에서는 각석문으로 남겼고, 「울릉도 도형」을 비변사에 제출했다. 각석문에는 날짜, 수토사실, 박석창과 수행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지명은 배를 정박해두었다는 왜강창(倭紅倉)과 그 외에 혈암(穴巖), 중봉(中峰), 소위우산도(所謂于山島)가 보인다. ‘왜강창’은 18세기 중반 《해동지도(海東地圖)》에 수록된 「대동총도(大東總圖)」<sup>6</sup>에서는 ‘왜선창(倭船倉)’으로 보이고, 혈암과 중봉, 우산도 등도 보여 박석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박석창 이후에는 훨씬 많은 지명이 보여, 1750~1751년 사이 홍문관이 주관하여 그리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동지도》의 〈울릉도(鬱陵島)〉<sup>7</sup>에도 많은 지명이 보인다. 대표적인 지명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中峯, 孔岩, 大岩, 大鎔岩, 小鎔岩, 黃岩, 所謂于山島, 朱土窟, 樵布岩, 牛角岩, 仙遊臺, 道莊仇尾, 朱土仇尾, 天低仇尾, 倭船倉, 沙工浦

6 규장각 소장, 8책에 수록된 「대동총도(大東總圖)」

7 해동지도 유형의 지도는 6편이 있는데 모두 박석창 이후의 지도이다. 〈울릉도〉는 규장각 소장(古大 4709-41)이다(김기혁 외, 2005, 『울릉도 : 고지도』, 『시군별 고지도』 8, 부산지리연구소(허정백, 2005, 『고지도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울릉도 지리인식』, 『지역과 역사』 17, 부경역사연구소, 182쪽에서 재인용).

8 허정백은 자연지명 28개, 인문지명 24개로 보았다(허정백, 위의 글, 184쪽).

혈암(穴巖)이 여기서는 공암(孔岩)으로 보이고, 바위지명 및 ‘구미’ 관련 지명이 많은 듯하다. 《해동지도》 이후 김창윤(1786)<sup>9</sup>과 한창국(1794)<sup>10</sup>의 기록에 보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1786: 可支仇味<sup>11</sup> 防牌島, 孔巖, 大錐巖·小錐巖, 倭艇滄, 長作地, 亭田洞, 竹巖, 天磨仇味, 錐山, 大錐巖·小錐巖, 香木亭, 玄作地, 幘竹巖, 黃土仇味

1794: 可支島, 防牌島, 竹島, 瓮島, 孔巖, 屏風石, 長作地浦, 亭田洞, 中峯, 竹巖, 錐山, 桶丘尾·桶丘尾津, 幘布巖, 黃土丘尾津·丘尾津

김창윤의 기록에는 그가 목격한 부속도서와 해안지형 관련 지명이 주를 이룬다. 그는 사람들이 살던 터를 확인했지만 거주민을 직접 목격했다고 보고하지는 않았다. 그의 보고에서 섬 이름으로 볼 만한 것은 방패도이고, 해안의 만입부를 의미하는 ‘구미’ 지명 즉 가지구미, 천마구미, 황토구미 등이 보이고, 공암, 대추암·소추암, 죽암, 후죽암 등의 바위지명이 보인다. 두 사람의 지명 기록은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고 한창국에 와서 지명이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뒷날 정착한 마을지명으로 미루어보건대, 두 사람의 기록에서 마을지명으로 볼 만한 것은 저전동, 현작지, 장작지, 통구미, 황토구미, 죽암, 추산 등이다. 18세기 후반에 이 정도의 마을지명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정착하여 지명이 전승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19세기에는 2년마다 수토제를 실시했음에도 기록은 소략하다. 19세기 수토기록에 보인 지명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sup>12</sup> (괄호 안 생명은 수토관)

9 『일성록』 정조 10년 6월 4일(병자).

10 『정조실록』 정조 18년 6월 3일(무오).

11 지금까지 필자를 포함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가지도구미’로 적었다. 한국고전번역원 번역문에 ‘가지도구미’로 되어 있으나, 원문은 ‘가지구미’이다.

12 19세기 수토기록에 대해서는 이원택, 2018, 「19세기 울릉도 수토 사료 해제 및 번역」, 『영토해양연구』

15, 동북아역사재단을 참조.

1807(이태근): 于山島, 孔巖, 都庄仇味, 屏風石, 中峯, 錐山巖, 天底仇味, 香木亭, 黃土仇味, 黃土窟<sup>13</sup>

1827(하시명): 可支魚窟, 屏風石, 長沙邱尾, 中峯, 萍卓邱尾, 黃土邱尾, 黃土窟

1831(이경정): 屏風巖, 朱砂峯, 黃土龜尾, 黃土窟, 玄石龜尾

1849(이규상): 黃土龜尾

1857(지희상): 可支窟, 孔岩, 待風邱尾, 屏風石, 倭船倉, 楮田邱尾, 錐峰, 桶邱尾, 香木亭, 黃土窟, 幘布岩, 黑杖邱尾

이들 기록에서 공통된 지명은 중봉과 공암, 병풍석, 추산 관련 지명(대추암·소추암, 추봉, 추산), 황토굴과 통구미, 향목정, 가지어 관련 지명(가지도, 가지어굴, 가지굴), 왜선창, 저동 관련 지명(저전동, 저전구미)이다. 대부분 지명이 유사하여 이전 지명을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개척 전후의 울릉도 지명

근대기에 들어와 일본인의 불법 벌목이 기승을 부리자 조선 정부는 울릉도를 개척하기 전에 검찰사 이규원을 파견하여 그 타당성을 조사하게 했다. 그런데 같은 해에 고종은 이규원에 앞서 군관 이명우에게 밀지를 내려 울릉도를 조사시킨 일이 있었다.<sup>14</sup> 다만 이명우의 기록은 소략하며 이규원의 기록<sup>15</sup>은 기록한 지명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이명우<sup>16</sup>와 이규원<sup>17</sup>의 기록

13 『일성록』 순조 7년 5월 12일.

14 이명우가 길을 떠난 시기는 3월 16일이고 이규원이 길을 떠난 시기는 4월 10일이다. 이규원은 4월 30일 울릉도 서쪽 소황토구미에 도착하여 조사했고 서울에 돌아와 고종에게 복명한 시기는 6월 5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미림, 2013, 「1882년 고종의 밀지와 울릉도 잠행 -이명우의 『鬱陵島記』에 대한 해제-」 『영토해양연구』 6호,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15 1882년 이규원이 조사 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의 초본이 『계초본』이고, 개인기록이 『울릉도 검찰일기』이다.

16 『鬱陵島記』(『목오유고』, 1917)

17 김기혁, 2011, 앞의 글, 122쪽; 이해은·이형근, 2006, 『만은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도형에 등장하는 지명은 다음과 같다.

이명우: 谷浦, 舊船倉, 國洞, 待風口, 小黃土口, 長作地, 苧浦, 千年浦, 錐峯, 通口尾, 香木洞, 紅門嶺, 黃土口, 黑作地

이규원: 島項, 竹島, 谷浦, 谷太嶺, 窟岩,<sup>18</sup> 羅里洞, 大·小苧浦, 大巖, 大黃土邱尾, 道方廳, 沙汰邱尾, 山幕洞,<sup>19</sup> 船板邱尾,<sup>20</sup> 小黃土邱尾, 臥達雄通邱尾, 雄通邱尾, 倭船艙, 長斫之, 長斫支浦,<sup>21</sup> 楮田浦, 中峯, 聖人峰, 竹岩, 竹浦, 倡優岩,<sup>22</sup> 天磨仇味, 千年浦, 燭臺岩,<sup>23</sup> 錐峯, 桶邱尾, 香木邱尾, 玄浦, 紅門街, 兄弟巖, 黑斫支, 黑斫之浦, 黑浦, 老姑巖, 門巖, 將軍巖, 蒜峰,<sup>24</sup> 苧浦, 鳳巖, 蒜峰, 將軍峰, 將軍巖, 華峰, 聖人峰, 道德峰, 活人峰, 錐巖, 華巖,<sup>25</sup> 祝融峰, 神倦峰, 恒峰, 衡峰, 嵩峰, 泰峰, 麒麟峰, 玉女峰

위의 지명을 보면, 홍문령(紅門嶺)과 홍문가(紅門街), 흑작지(黑作地)와 흑작지(黑斫支), 장작지(長作地)와 장작지(長斫之), 구선창(舊船倉)과 왜선창(倭船艙), 통구미(通口尾)와 통구미(桶邱尾), 향목동(香木洞)과 향목구미(香木邱尾), 소황토구(小黃土口)와 소황토구미(小黃土邱尾)로 같은 지역에 대한 두 사람의 기록이 다르다. 이명우는 국동(國洞)<sup>26</sup>과 대풍구(待風口)를 거론했지만 이규원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규원이 기록한 해안가와 산천 지명은 이전과 비슷하지만, 취

18 울진 근처의 지명으로 되어 있지만, 울릉도 안에도 같은 지명이 있다.

19 김기혁은 '蓼幕洞浦口'로 기술했다(김기혁, 2011, 앞의 글, 127쪽).

20 『울릉군지』는 선창으로 보았고(『울릉군지』, 100쪽), 이혜은·김기혁도 현재의 선창으로 보았으나 홍정원은 섬목으로 보았다(2017, 181쪽). 섬목은 아닌 듯하다.

21 김기혁은 현재의 사동에 비정했다(김기혁, 2011, 앞의 글, 128쪽).

22 이혜은·윤용출은 추봉 옆에 있는 바위로 비정했다(앞의 책, 64쪽 그림 3-11 참조).

23 김기혁은 촉대암을 삼선암에, 이혜은은 형제암을 삼선암에 비정했다.

24 김기혁은 周峰에 비정했다(김기혁, 2011, 앞의 글, 128쪽). 그러나 산봉은 천부 쪽에 있고, 주봉은 사동 근처에 '두리봉'으로 현전하므로 다른 봉우리로 보인다.

25 김기혁은 현재 통구미, 거북바위에 비정했다(김기혁, 2011, 위의 글, 128쪽).

26 國洞의 뜻을 풀면 '나라동'이 된다. '나라동'인데 '나라동'으로 잘못 듣고 훈차표기하여 '國洞'이 된 듯하다.

락과 포구 지명이 많이 증가했다. 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입도하여 살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1883년 봄부터 두 번에 걸쳐 정식 입도가 시작되었는데, 공식 기록에 보인 거주지는 곡포(谷浦), 대황토포(大黃土浦), 추봉(錐峯), 현포동(玄浦洞)이었다.<sup>27</sup> 현포동을 제외하면 이전부터 보였던 지명이다. 앞서 현작지(玄斫支), 현석구미(玄石龜尾), 흑작지포(黑斫之浦), 흑장구미(黑杖邱尾), 흑포(黑浦), 현포(玄浦) 등으로 보였는데, 1883년에는 현포동이 된 것이다. 1883년 일본 내무성은 야마구치 현령에게 울릉도 도항자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데, 8월 20일 대서기관 곤도 고시(近藤幸止)는 하기(萩)경찰서의 순사 요코타니 사이치(横谷佐一)가 조사한 정황을 외무경과 내무경에게 보고했다.<sup>28</sup> 요코타니가 조사한 정황은 「마쓰시마 정황서[松島景況書]」로 남아 있는데, “이 섬의 아자(字)<sup>29</sup> 中谷에 아사히 조가 있으며 아자 코르케에 아사히 조의 지조(支組)가 있습니다. 인원은 대략 95~96명이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sup>30</sup> 여기에 중국(中谷)과 ‘코르케’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코르케’는 우리말 ‘골개’를 옮겨 적은 것인데 앞서 이명우와 이규원이 ‘谷浦’로 표기했다.

같은 해에 내무성 소서기관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枝)는 일본인 쇄환을 위해 울릉도에 파견되어 10월 7일 섬에 도착하여 14일까지 조사했다.<sup>31</sup> 그는 “(10월) 6일 정오에 출항하여 다음날 7일 오전 9시에 울릉도 동북쪽 해안 아릭사(阿陸沙)라 부르는 곳에서 곧장 거룻배를 내려 상륙했음. 실제로 그곳에 있는 자 16-17정(丁) 정도 떨어진 곳인 아자(字) 中谷이라는 곳에 있는 자들

27 『光緒九年七月日 江原道鬱陵島新入民戶人口姓名年歲及田土起墾數交成冊』(1883)

28 경상북도사료연구회, 2018, 『조선국 울릉도에 불법 도항한 일본인 처분 건(朝鮮國蔚陵島犯禁渡航之日本人引戻処分一件)(1883.8.16)』 『독도 관계 일본 고문서 5』.

29 아자(字, 大字)는 고을 단위임. 『(신구대조) 조선전도 부군면리동 명칭 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에서는 조선의 里 또는 洞을 大字에 해당시켰다.

30 아사히 조에 고용된 오사카부 평민 우메조노 유이소가 귀국하자 요코타니가 우메조노로부터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31 히가키는 10월 26일 귀국하여 11월에 보고서를 작성했고, 내무경이 외무경에게 제출한 날짜는 11월 12일이다.(『독도 관계 일본 고문서 5』).

총 40여 명을 불러 일단 귀국을 명하자...”<sup>32</sup>라고 기록했다. 이어 그는 10월 7일 유학(幼學) 배충은과 응접한 일을 따로 기록했는데, 여기에도 ‘阿陸沙(섬안의 지명~원주)’와 ‘中谷(지명~원주)’이라는 지명이 보인다. 원주를 넣어 아록사(阿陸沙)와 중곡(中谷)이 마을지명임을 분명히 했다. 히가키는 울릉도 도형을 그리고 그 안에 지명을 기재하되 한자와 일본어 가타카나를 다음과 같이 병기했다. (괄호 안은 가타카나로 표기한 원주인데, 필자가 한글로 바꾼 것임. 가나다순)

가몬崎, 觀音崎, 觀音浦, 谷浦(골개), 廣大湫,<sup>33</sup> 國見崎, 窟岩, 槻谷, 羅里洞(라리굴), 大巖, 大亭浦(대보시개)<sup>34</sup>, 待風邱, 風待邱, 大黃土邱(대황토기미), 都房廳(도방청), 島項, 萬歲浦, 沙汰邱, 山谷, 山幕谷(산막골), 小亭浦(소보시개), 小黃土邱(소황토기미), 松谷, 水層層, 阿陸沙(아릭사), 窩撻里, 倭船倉, 要谷, 勇之谷, 長作支(장작개), 竹島, 中谷, 直谷, 千年浦, 天籟山(천라이산), 清水谷, 錐峯(송그산), 通邱尾(통기미), 支作支

수토관과 이명우, 이규원은 한자로만 기입했으므로 우리말 발음을 알 수 없었지만 히가키는 한자와 우리말 발음을 병기했으므로 괄호 안 호칭이 우리말임을 알 수 있다. 골개, 나리굴, 대모시개, 소모시개, 대황토구미, 소황토구미, 도방청, 산막골, 아릭사, 장작지, 천퇴산, 송곳산, 통구미 등이 그러하다. ‘コ-ルケイ’는 앞서 ‘谷浦’로 보였던 것인데 히가키가 ‘골개’로 표기했으므로 ‘골개’를 훈차표기한 것이다. 히가키는 ‘阿陸沙’를 ‘アリクサ’ 즉 ‘아릭사’로 표기하고 ‘阿陸沙(섬안의 지명)’라고 했는데 이후 1892년에 한글로 ‘아록사’ ‘알록사’가 보이므로 이들에서 음차표기한 것이 아록사(阿陸沙)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아록사·알록사’의 의미는 알 수 없다. ‘中谷’은 요코타니와 히가키에게서 보였는데, 히가키가 ‘(지명~원주)’라고 부기했으므로

32 『조선국 울릉도에 불법 도항한 일본인 처분 건』 제3권 「울릉도 출장 복명서」 1883년 11월

33 <울릉도도>

34 우리말은 ‘모시개’인데 일본어로는 ‘タイボウシゲイ’(다이보시개)로 표기했다. 소저포도 마찬가지로 ‘소보시개’로 표기했다.

로 지명임을 알 수 있지만 우리말을 병기하지 않아 누가 명명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中谷’이 한국에서는 흔한 지명이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흔한 지명이다. ‘中谷’을 풀면 가운데골짜기(가운데골, 안골)가 된다. 히가키는 도형에서 도방청 가까운 골짜기에 이 지명을 기재했다. 후일 『조선지지자료』에 ‘내평전’이 보이므로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듯하다. 히가키에게서 새로 보인 지명은 ‘觀音島(觀音崎·觀音浦)’, ‘國見崎’, ‘大巖’, ‘窟岩’, ‘水層層’ 및 골짜기 관련 지명(山谷, 松谷, 勇之谷土, 直谷, 清水谷)이다. ‘谷’은 ‘골’에 대한 훈차표기로 소나무골, 직골 등은 우리말로 볼 수 있지만 일본에도 곡(谷)이 들어간 지명이 적지 않다.

최근 <울릉도도(鬱陵島圖)><sup>35</sup>라는 지도가 공개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많은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명우에게서 보였던 ‘舊船滄’이 보이고, 이규원과 히가키에게서 보인 ‘邱尾’ 관련 지명 및 ‘阿陸沙’가 보이므로 1890년 이전의 도형으로 보이거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sup>36</sup>南伊, 廣大湫, 谷浦, 舊船滄, 窟巖, 羅里洞, 內秀乃田谷, 大黃土邱尾, 大巖, 大苧浦, 待風邱尾, 道房廳, 島項, 山幕谷, 小苧浦, 小黃土邱尾, 水層, 阿陸沙, 長浦, 丁口內船滄, 竹島, 錐山, 千年浦, 通邱尾, 香木谷, 玄浦

위 지명 가운데 □南伊와 丁口內船滄은 글자가 명확하지 않다. □南伊는 후일 ‘나미’라는 지명과 ‘沙公南’이 보이므로 ‘사공나미’를 음차표기한 듯하다. 후에 보이는 ‘내수전’이 여기서는 ‘內守乃田谷’으로 되어 있으며, 왜선창은 ‘丁口內船滄’으로 되어 있다.

수토제는 개척 이후인 1894년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수토관의 조사도 계속되었다. 1887년 평해 군수 겸 울릉도 첨사 박태원이 수토 후에 제출한 보

35 2019년 3월 3일, TV쇼 진품명품에 소개된 지도이다. 수토관이 작성한 지도로 소개되었다.

36 □는 원문 미상. 이하 마찬가지로.

고서에 보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sup>37</sup>

假道頭, 谷浦洞, 廣巖洞, 羅里洞, 大黃土浦, 道傍浦, 長社洞, 長浦洞, 苧浦洞, 竹田邱尾, 錐巖, 樋口尾, 香木谷, 黃土窟

박태원은 많은 지명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假道頭, 廣巖洞, 長社洞, 長浦洞이라는 지명이 새로 보였다.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것임에도 이명우와 이규원, 히가키, <울릉도도>, 수토기에 기재된 표기가 제각각이다. 저마다 들은 대로 옮기다보니 음차표기가 달라진 것이다. 이 시기에 오면 곡포가 곡포동, 저포가 저포동, 나리골이 나리동으로 보여 마을지명으로 정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 구미, 작지, 포(浦), 사키 등의 형태소를 붙인 지명이 많은데, 바닷가 지형과 관련 있음을 나타낸다. 히가키는 ‘가몬崎(女作支)’처럼 형태소로서 ‘사키’와 ‘작지’를 병기했는데, (검은)작지, (검은)구미, (검은)개 등에서 보인 우리말 형태소의 의미를 몰라 일본식(사키)으로 표기한 것이다.

정식으로 주민들이 입도한 뒤 마을지명이 증가하는 한편 한글로 표기한 지명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891년 울릉도 현포에 입도한 정래기는 1892년 「정처사 술회가」라는 가사를 지었다. 표지에는 “기유 이월 이십사일 슈집우 통구미 정처사 술회가라”로 되어 있고, 뒷면에는 “述懷歌 鄭處士家書 慶尙北道 鬱陵島 西面 通九味 鬱陵島 龜洞精舍”라고 쓰여 있다. 통칭 「정처사 술회가」라고 한다.<sup>38</sup> 「정처사 술회가」<sup>39</sup>에 보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한글고어로 된 원문을 필자가 현대어로 고침)

37 이원택, 2018, 앞의 글, 121쪽.

38 국어학자 서원섭이 1967년 울릉도 민요를 수집하던 중 서면 통구미동의 외숙에게서 한 권으로 성책(16장, 한지)되어 있는 순한글 가사 사본을 입수한 것을 이른다.

39 「정처사 술회가」는 정 처사(1835~1896) 즉 鄭來驤가 지은 순한글 가사이다. 1967년 울릉도 통구미동에서 입수한 서원섭에 따르면, 정처사는 1891년에 울릉도 玄圃에 입도한 뒤 아록사에 거주하는 자를 찾아가 거주할 곳을 찾았다. 그가 가사를 지은 것은 가사 책의 표지에 “기유 이월 이십사일.”이라고 쓰여 있지만 기유년은 1909년 작자 사후가 되므로 필사하여 성책한 해를 가리키고 실제로 가사를 쓴 시기는 1892년이다(서원섭, 1970. 『鄭處士述懷歌 攷』, 『어문논총』 4-1,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서원섭, 1969. 『울릉도의 지명유래』, 『지리교육』 3권 1호, 경북대학교 사대).

울도, 가두머리, 구무뚜러,<sup>40</sup> 구암, 귀인봉, 나리골, 남양동, 썬년섬 노적봉, 노인석, 도동, 동자석, 마암, 모시개, 문필봉, 아록사·알옥사, 웅통개, 우복동, 장군대, 준마봉, 중령, 천부동, 통구미, 현포·현포, 호연봉, 화개봉, 황토금

울릉도가 ‘울도’로 되어 있으며 우리말 지명이 많지만, 한자지명에서 온 것도 많다. 우리말 지명은 가두머리, 구무뚜러, 나리골, 썬년섬, 모시개, 알옥사, 웅통개, 통구미, 황토금 등이고, 한자지명에서 온 것은 울도, 구암, 귀인봉, 남양동, 노적봉, 노인석, 도동, 동자석, 마암, 문필봉, 우복동, 장군대, 준마봉, 중령, 천부동, 현포, 호연봉, 화개봉 등이다. ‘가두머리’는 1887년에 보였던 ‘假道頭’를, ‘구무뚜러’는 ‘구멍뚫어’ 즉 1786년에 보인 ‘孔巖’을 우리말로 표기한 것이다. ‘썬년섬’<sup>41</sup>은 1794년에 보인 ‘竹島’를 가리킨다. ‘웅통개’는 1906년 오쿠하라가 ‘玄浦(현포)(일명 웅도우개)’로 칭한 ‘웅통개’로서 현포(玄浦)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현포(玄圃)로 보인다. 이규원이 칭한 ‘와달웅통구미’는 ‘와달리’를 가리킨다. ‘아록사·알옥사’는 앞서 히가키가 칭한 ‘阿陸沙(아리사)’를 가리키므로 ‘阿陸沙’가 ‘아록사’ ‘알옥사’ ‘알록사’에서 왔음을 재확인시킨다. ‘현포·현포’는 흑작지, 현작지, 흑포, 현포, 가문崎 등이 ‘현포’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1892년에 새로 보인 지명은 남양동, 우복동, 천부동, 구암, 마암이다. 표기는 한글이지만 한자에서 온 지명이다. 즉 남양동은 ‘谷浦(골개)’에서 왔고 이후 ‘南洞(고리켄)’, ‘南陽洞(고리켄)’, ‘南陽洞(골개)’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골개~곡포’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지만 한자지명으로 바뀐 배경은 알 수 없다. 우복동 역시 우장동(牛腸洞), 우복동(遇伏洞), 우복동(牛伏洞) 등으로 표기는 다양하지만 한자지명으로 성립한 것이다. 천부동은 이전 지명과 연계시킬 만한 단서가 보이지 않는다. ‘구암’은 1883년 ‘굴암(窟岩)’에

40 ‘구무’는 ‘구멍’에 대한 경상도 방언이므로 ‘구무뚜러’는 孔巖을 가리킨다.

41 원문은 “대해 중의 썬년섬은”으로 되어 있는데 서원섭은 ‘대섬(죽도)’라고 표기했고, 김기혁은 ‘썬년섬’으로 표기하되 서원섭을 인용하여 ‘대섬’이라고 했다.

서 온 것이므로 와전되었을 뿐 새로 보인 지명은 아니지만, 이것이 다시 와전되어 ‘구암(龜岩)’으로 음차표기되었다. ‘마암’은 이후 『지지』에서 ‘馬岩·馬岩峙(말바위·말바위재)’로 보인다.

1897년 『독립신문』도 지명을 한글로 표기했는데, 1896년 9월 울릉도 도감 배계주의 보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명을 거론했다. (한글고어로 된 원문을 필자가 현대어로 고침, 괄호는 원주임)

저포동, 도동리, 사동, 장흥동, 남양동, 현포동, 태하동, 신촌(신촌동), 광암리(광암동), 턴부(턴부동), 라리동

모두 11개의 동리인데<sup>42</sup> 신촌과 신촌동, 광암리와 광암동, 천부와 턴부동과 같이 유사 지명이 함께 보인다. 신촌동과 태하동, 장흥동은 새로 보인 지명이다. 배계주가 수시로 일본인의 불법 행위를 정부에 보고하자, 정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명했는데 1899년에만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899년 6월 배계주가 부산해관 세무사 라포르트의 동행 하에 조사한 것이고, 두 번째는 9월 일본인 쇄환 임무를 띠고 원산영사관 외무서기생 다카오 겐조(高雄謙三)와 마야 함선의 해군 중위 후루카와 신자부로(古川鈺三郎)의 조사였다.<sup>43</sup> 이들의 보고서에는 南陽洞, 東洞, 茂洞, 竹岩, 昌洞, 鈺洞, 通龜尾, 玄洞, 錐山 등의 지명이 보인다. 東洞은 道洞의 발음과 비슷하고 茂洞은 葎洞과 유사하므로<sup>44</sup> 道洞과 葎洞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鈺洞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다. ‘왜선창’을 ‘창동’으로, ‘현포동’을 ‘현동’으로 표기한 것은 도방청이 도동으로, 저전동이 저동으로 간략해진 것과 같은 방식이다.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승격되기 이전 형성되어 있던 마을지명을 정리하면 대략

42 신문 기사에는 12동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1개 동명이다(『독립신문』 1897년 4월 8일).

43 유미림, 2018, 「현지조사로 밝혀진 대한제국기 울릉도 현황과 일본의 자원 침탈」, 『해양정책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4 같은 해에 전사능, 정상원 등과 일본인 나카무라 사이에 성립한 목재 매매 계약서에는 도동과 저동으로 되어 있다(『伐木關係雜件』, 1899.11.20).

다음과 같다. (괄호는 당시의 이칭)

곡포(남양동), 구암(굴암, 광암동), 나리동, 도동, 아륙사(사동), 산막동, 소  
황토구미, 수층층(수층동), 신촌동, 우북동(옥천동), 왜선창(창동), 와달리,  
장작지, 장흥동, 저동(저전동, 저포), 죽암, 천년포, 천부동, 추산, 태하동, 통  
구미, 현포동(현작지, 흑포), 홍문가(홍문동), 황토구미, 향목동

이들 지명은 대한제국 성립 이전부터 있었으므로 조선시대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890년대에 새로 보인 지명은 광암동, 남양동, 사동, 신촌동, 우북동, 장흥동, 창동, 태하동이지만, 남양동은 곡포에서, 사동은 아륙사에서, 창동은 왜선창에서, 태하동은 황토구미에서 온 지명이다. 우리말 지명이 점차 동명(洞名)의 형식을 띠고 한자지명으로 간략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대한제국기 울릉도 지명의 형성과 변천

#### 1. 칙령 제41호 반포 전후 지명의 변천

울릉도 도감은 일본인들의 불법 행위를 상부에 보고하는 한편 저지하러 했지만 그럴 만한 권한이나 행정력을 지니지 못했다. 대한제국 정부도 도감의 보고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에 항의하며 일본인의 철수를 요구할 뿐이었다. 일본인들은 거주 명분을 한국 측에 돌리며 철수하지 않고 있자 양국 정부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조사단을 파견했다. 1900년 6월 한국 측에서는 내부 시찰관 우용정 외에 동래감리서의 주사 김면수, 방판(幫辦) 김성원이 참가했고, 일본 측에서는 부산영사관의 부영사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와 경성 주재 일본공사관 경부보 와타나베 간지로(渡邊鷹治郎) 등이 참가했으며, 세무사 라포트트가 입회했다. 우용정은 ‘天府洞之古仙浦’, ‘玄圃

洞’, ‘台霞洞’<sup>45</sup>을 거론했고, 김면수는 울릉도에 13개 동이 있다고 보고 ‘台霞洞’과 ‘天府洞’, ‘雙燭巖’을 거론했다.<sup>46</sup>

조사단의 보고를 접한 대한제국 정부는 10월 25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군수를 두는 이른바 칙령 제41호를 제정, 27일 반포했다. 칙령 제 41호는 군청 소재지로 ‘台霞洞’을 명기했는데, 앞서 『독립신문』은 한글 ‘태하동’으로 명기했었다. 이를 일본인들은 ‘대하동’, ‘臺霞洞’으로 표기했고, 이후 일제 강점기 문헌에는 ‘태하동’과 ‘대하동’이 섞여 있으나 ‘대하동(臺霞洞)’ 표기가 더 많다.

아카쓰카 쇼스케가 보고서와 약도에서 기록한 지명은 다음과 같다.<sup>47</sup>

觀音崎, 島牧, 竹島, 光岩, 窟岩, 羅里洞, 南陽洞, 乃守田, 大苧浦, 道洞, 邊嶺, 沙公南, 沙洞, 山幕谷, 三本立, 水層層, 新里, 新村, 牛腹洞, 臥達里, 苧浦, 亭石浦, 竹岩洞, 中嶺, 昌洞, 天府洞, 錐山, 通龜尾, 鶴浦洞, 香木洞, 玄浦, 黃土九味

아카쓰카는 대부분 이전 지명을 계승했지만 우복동을 ‘牛腹洞’으로, 사동을 ‘沙洞’으로 표기했다. 그가 새로 거론한 지명은 ‘乃守田’, ‘邊嶺’, ‘沙公南’, ‘三本立’, ‘新里’, ‘亭石浦’, ‘鶴浦洞’이다. 이 가운데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있는 반면 새로 등장시킨 지명도 있는데,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한 것에 해당되는 것은 ‘鶴浦洞’, ‘三本立’이고, 새로 등장한 지명은 ‘邊嶺’, ‘新里’, ‘亭石浦’이다. ‘乃守田’은 ‘內秀乃田谷’에서 변전한 것이고, ‘沙公南’은 ‘沙工浦’에서 변전한 것이므로 새 지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말 지명을 한자지명으로 바뀐 경우를 보면, ‘小黃土口’, ‘小黃土邱尾’, ‘小黃土邱(쇼황토기미)’였던 것이 ‘鶴浦洞’으로 바뀌었다. 후일 『한국수산지』에서

45 유미림·조은희, 2008, 『개화기 울릉도·독도 관련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참조.

46 『각사등록』 14 경상도편, 『동래항보첩3』(1900.6.9.)

47 「鬱陵島 調査概況 및 山林調査概況 報告의 件」,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 제14권

“鶴浦洞은 과거 小黃土浦(자가라향토기미)..”라고 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三本立’은 자연지명인데, 형제암, 쌍촉암으로 불리다가 일본식으로 바뀐 것이다. 아카쓰카는 장흥동과 태하동(台霞洞)을 누락한 대신 ‘태하동’의 우리 말 지명 ‘황토구미’를 기재했다.

대한제국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행정적인 정비를 꾀하자 일본 정부도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경찰관 주재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1902년에 부임한 경부 니시무라 게이조(西村鉉象)는 부임하자마자 「한국 울릉도 사정[韓國鬱陵島事情]」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도 많은 지명이 등장한다. 그가 기록한 울릉도 부속도서와 마을지명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원주)

觀音崎, 觀音島, 島牧, 뗏섬(本邦人 竹島), 倭島, 間嶺, 光岩, 光岸, 窟巖, 南陽洞, 羅里洞, 羅里山, 乃守田, 臺霞洞, 道洞, 沙工南, 沙洞, 山幕谷, 水層層, 新村, 新里, 遇伏洞, 臥達里, 苧洞, 中嶺, 竹岩, 亭石浦, 昌洞, 千年浦, 天府洞, 錐山, 通龜尾, 香木洞, 玄浦

지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 다르거나 잘못 표기한 것이 눈에 띈다. 일례로 히가키가 기술한 ‘觀音崎·觀音浦’를 니시무라는 ‘觀音島·觀音崎’로 표기했고, 아카쓰카가 ‘島項’을 ‘島牧’으로 오기했던 것을 답습했다. 아카쓰카가 ‘三本立’으로 표기한 것을 니시무라는 ‘雙燭石(三本立)’ 즉 한국식 지명과 일본식 지명을 병기했다. ‘倭島’는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일본식 지명으로 보인다.<sup>48</sup> ‘間嶺’이 보이는데 이는 ‘邊嶺’ 즉 ‘갯령’을 혼차 표기한 것이 와전되어 간령(間嶺)으로 음차 표기된 것이다. ‘갯령’의 의미였다면 ‘冠嶺’ 혹은 ‘笠巖’으로 혼차표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카쓰카는 ‘천년포’를 누락했지만 니시무라는 ‘천년포’를 기입했고, 아카쓰

48 아마구치현에 이 지명이 있다. 쌀푸대를 쌓아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한 데서 온 지명이라는데, 그렇다면 울릉도에서는 ‘穴巖’(1711) ‘공암’(鬱陵島)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 글 전체에서 괄호에 연도만 표기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출전을 의미한다. 출전은 <참고 2>에서 밝혔다.

카는 ‘태하동’을 누락했지만 니시무라는 ‘臺霞洞’과 ‘臺霞川’을 언급하되 ‘台霞’를 ‘대하’로 음독했다.

니시무라 이전에는 골·곡(谷), 구미, 작지, 포, 암(岩) 등의 형태소가 많았다면, 니시무라에 와서는 산(山), 천(川), 동(洞) 등의 형태소가 붙은 지명이 많아졌다. 또한 곡포, 대황토구미, 사태구미, 소황토구미, 저포, 저전포, 향목구미, 흑작지포 등의 지명이 ‘洞’으로 통일된, 동명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경향은 1905년 이후 더욱 심해졌다.

## 2. 1905~1910년 사이 지명의 변천

1905년 12월 부산영사관의 영사관보 스즈키 에이사쿠(鈴木榮作)<sup>49</sup>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지명이 보인다. (가나다순)

光岩洞, 羅里洞, 南陽洞, 道洞, 沙洞, 水層洞, 新里洞, 新村洞, 玉泉洞, 臥達里, 長興洞, 苧洞, 苧洞內臥達里, 天府洞內竹岩洞, 通九味, 平里洞, 天府洞, 天府洞內昌洞, 天府洞內 玄浦, 上玄洞·中玄洞·下玄洞, 台霞洞, 鶴龜洞, 香木洞

이카쓰카와 니시무라에게서 보였던 ‘乃守田’과 ‘沙公南·沙工南’, ‘新里’, ‘亭石浦’ 표기가 이때 와서 약간 달라져, ‘新里’가 ‘新里洞’으로 바뀌었고 내수전, 사공남, 정석포, 우복동이라는 지명이 사라진 대신 ‘玉泉洞’, ‘平里洞’, ‘上玄洞·中玄洞·下玄洞’이라는 지명이 새로 보였다. ‘현포’가 있음에도 상현동과 중현동, 하현동이 새로 보인 것인데 이들은 이내 소멸되었다. 스즈키는 ‘苧洞內臥達里’, ‘天府洞內竹岩洞’, ‘天府洞內昌洞’이라는 식으

49 스즈키는 1905년에 두 번 울릉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외무대신(桂太郞)에게 보고한 바 있다. 그는 울릉도에 파견된 관리에게서 보고서를 받았을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거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鬱陵島現況』(7.31)으로 『通商彙纂』 제50호(1905.9.3. 발간); 『鬱陵島ノ現況ニ關スル報告書』(1905.12.6)(『金山領事館報告書』 2책 수록)는 『通商彙纂』 제2호(1906.1.23.)에 게재.

로 표기했다. 게다가 ‘우복동’을 ‘玉泉洞’으로 바꾼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스즈키는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한 후에 울릉도를 조사한 사람이다. 편입 후 1년이 지난 1906년 3월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한 일이 있었다. 시마네현 시찰단인데, 시찰단의 일원인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은 다음과 같이 지명을 기록했다. (괄호 안은 일본어 원주인데 필자가 한글로 바꿈)<sup>50</sup>

竹嶼(부-솔), 羅里洞, 南陽洞, 臺霞洞, 道洞(도동), 沙洞(아릭사), 新村洞, 苧洞(모시개), 苧洞內 臥達里, 玉泉洞, 長興洞, 天府洞內竹岩洞, 天府洞內 昌浦, 通九尾, 台霞洞, 玄浦

오쿠하라의 <울릉도견취도(鬱陵島見取図)>에 보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일본어 원주인데 필자가 한글로 바꿈).

竹嶼, 觀音崎, 三本立, 一本立, 카부토암<sup>51</sup>, 다치암<sup>52</sup>, 俵島, 羅里山, 羅里洞(나리골), 亭石浦(촌돌보), 竹岩(대바오), 天府洞(촌부동), 昌洞(에선창), 千年浦(촌넌포), 錐山(송곳산), 光岩(구암), 新村(신촌), 玄浦(현포)(일명 옹도우개) 香木洞(상나무골), 台霞洞(황토기미), 小台霞洞(자가라황토기미), 黃土邱尾, 山幕谷(산막골), 水層層(물칭칭), 屈岩(굴바오), 山土洞(산토동), 南陽洞(고리켄), 通九尾(통기미), 間嶺(간령), 國見崎, 中嶺(중사키), 新里(신리), 遇伏洞(우복동), 沙洞(아릭사), 道洞(도젠), 沙工南(샤쿠나미), 苧洞(모시개), 小苧洞(고모시개), 乃守田(나시존), 臥達里(와다리)

도형에 많은 지명을 기록한 셈인데 괄호 안의 표기는 한자의 음독 내지 우리말을 병기한 것이므로 유래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마을지명을

50 『竹島及鬱陵島』, 1906년 2월 말에 조사한 지명을 포함해서 적었다고 했으므로 시찰단이 오기 전에 지명 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1 '카부토'는 투구의 의미이다. 북저바위를 이른다.

52 축대바위를 이른다.

보면, 정석포(亭石浦)가 정돌보 즉 정돌포에서, 죽암(竹岩)이 대바오 즉 대바위에서, 창동(昌洞)이 예선창 즉 왜선창에서, 추산(雉山)이 송곳산에서, 광암(光岩)이 구암 즉 굴암에서, 현포(玄浦)가 웅통개에서, 태하동(台霞洞)이 황토기미에서, 소태하동(小台霞洞)이 자가라황토기미 즉 작은황토기미에서, 굴암(屈岩)이 굴바오 즉 굴바위에서, 남양동(南陽洞)이 고리켄 즉 골개에서, 사동(沙洞)이 아릭사에서, 사공남(沙工南)이 샤쿠나미에서, 저동(亭洞)이 모시개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은 ‘沙工南’을 ‘샤쿠나미’로 음독했다는 사실이다. ‘沙工浦’에서 ‘沙工南’으로 변천한 것인데 오쿠하라가 ‘샤쿠나미’로 잘못 읽었으므로 ‘살구남’으로 와전되는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 현재의 ‘杏南’은 ‘살구남’을 훈차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살구남’과 ‘杏南’은 ‘사공남’을 ‘샤쿠나미’로 잘못 읽은 데 기인한다. ‘천신포’는 ‘천년포’를 오기한 것이다. 오쿠하라는 한인 부락과 일본인 거류부락으로 구분했는데, 한인 부락은 정석포, 천부동, 창동, 천년포, 광암, 현포, 향목동, 소태하동, 산막골, 굴암, 산토동(사태구미~역주), 간령, 신리, 사공남, 소저동, 와달리이다. 일본인 부락은 추산, 신촌, 태하동, 수층층, 남양동, 통구미, 중령, 우복동, 사동, 도동, 저동, 내수전이다. 스즈키가 ‘우복동’을 ‘옥천동’으로 바꿔 표기했음에도 오쿠하라가 다시 ‘우복동’으로 적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시마네현 시찰단도 다음과 같이 지명을 기록했다.<sup>53</sup> (괄호 안은 일본어 원주인데 필자가 한글로 바꿈, ( )는 필자가 비정한 지명임)

가몬자키(玄浦), 간양(廣岩), 고나리골(소나리동), 고모시게(小亭浦), 고리켄(南陽), 龜尾(돈긴), 구암(龜岩), 굴바우(窟岩), 나리골, 南洞(고리켄), 니시진(내수전), 대바우(竹岩), 道洞, 도코동(도동), 물칭(水層), 모시게(저동), 沙洞, 산나막골(山幕谷), 샤쿠나미(沙工南), 小黃土浦(자가라황토기미), 쇼다랑(서달령), 손고사시, 新里, 신촌, 와다리, 오복동(우복동), 에이신

53 「다케시마 시찰」, 『「비(秘)다케시마」(메이지 38~41년),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 소장

촌(왜선창), 葶洞灣, 진양, 촌돌보(정돌포), 촌보도(천부동), 향토기미(황토구미)

시찰단도 오쿠하라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표기한 것인데, ‘龜尾’을 ‘돈긴’으로 적은 것은 ‘통구미’를 의미하는 듯하다. 오쿠하라는 ‘남양동’이라 적었지만 시찰단은 ‘남동’으로 적었다.

오쿠하라와 시찰단의 기록에서 마을지명은 다음과 같다.

廣岩, 羅里洞, 南洞·南陽洞, 道洞, 沙洞, 水層·水層層, 小黃土浦, 新里, 新村洞, 玉泉洞, 葶洞, 竹岩, 通九尾, 台霞洞·臺霞洞, 玄浦

이들 지명은 대부분 우리말에서 유래했고, 극히 일부가 한자지명(신리, 신촌, 우복동, 왜선창, 천부동)이다. 이들 가운데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손고사시, 진양이다.

일본 해군성은 1905년부터 1908년까지 조선 동안(東岸)을 측량했는데 울릉도는 1908년에 측량했고, 해도(306호)는 1909년 6월 작성되었다.<sup>54</sup> 해도에 나타난 지명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원주)

鬱陵島(松島), 竹嶼(Tei Somu, Boussole Rk), 鼠項島(Somoku Somu), 間嶺, 間嶺末(Kannian Kutsu), 孔岩, 屈岩, 屈岩末(Kuribau Kutsu), 光岩, 羅里洞, 南陽洞, 道洞, 北岩, 砂空南末(Shakunami Kutsu), 沙洞, 新里, 新村, 葶洞, 竹岩, 昌洞, 錐山, 台霞洞, 通龜尾, 鶴浦洞, 玄浦, 黃土金末(Hantogimi Kutsu)

위 지명을 보면 기존 지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

54 1908년에 측량하고 1909년에 간행한 해도 306호를 말한다. 타이틀은 『竹邊灣至水源端:朝鮮東岸』(해군성 수로부, 1909.6)이다.

한 것이 다르다. 뗏섬(竹島)을 ‘죽서’로 표기했고 서양 호칭 ‘부술 락’을 병기했다. ‘鼠項島’<sup>55</sup>에는 ‘Somoku Somu’ 즉 ‘섬목 섬’으로 표기했으므로 ‘島項’을 잘못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공남말’에 대해서는 ‘Shakunami’(샤쿠나미)와 ‘Kutsu’(구츠)로 음독했는데 1906년의 ‘沙工南(샤쿠나미)’에 ‘末’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황토금말’은 ‘황토금’에서 온 것으로 ‘황토구미’를 가리킨다. ‘屈岩’은 ‘Kuribau’ 즉 ‘굴바우’이므로 ‘窟岩’이 되어야 하는데 오기했다. ‘昌洞’은 ‘倭缸滄’→왜선창→舊船倉→창동→친부동내 창동→에이신촌에서 변전하여 ‘창동’이 된 것이다.

### 3. 『한국수산지』의 지명 표기

통감부는 한국의 수산현황을 조사하여 어업 관계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어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농상공부 수산국 주체로 『한국수산지』를 발간하도록 했다.<sup>56</sup> 울릉도 조사는 1909년 말에 완료되었는데, 농상공부 수산과장 이하라 분이치(庵原文一) 기사가 조사 및 편집업무를 총괄했고, 통감부 기수 기무라 고자부로(木村廣三郎)가 조사를 맡았다. 지명은 기존 문헌에 의거하되 문헌에 없는 것은 출장 보고서와 해도(1909)에 의거하여 명기했다. 지명의 표기 방식은 ① 한자로 표기하고 그 아래에 ② 우리말 호칭을 일본어 가나로 표기한 뒤, 다시 괄호 안에 ③ 음독을 한글로 표기한 뒤 다시 그 위에 ④ 음독을 일본어 가나로 표기하는 형태이다. 이를테면, 저동의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①한자 표기: 苧洞                      ②우리말의 일본어 표기: モシゲ
- ③음독: 모동                              ④음독의 가나표기: モトン

55 섬목을 표기하려던 것이 섬을 鼠로, 목을 項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56 서문에 따르면, 전국을 4구로 나누어 구마다 담당 조사원을 두어 조사하게 했는데, 1집은 1908년 2월부터 11월까지 각도의 조사를 마친 뒤 간행한 것이며, 경상도(남도) 15월 ‘울도군’이 실린 2집은 1910년 5월에 간행되었으나 1909년 12월에 편찬이 완료되었다.

위 지명에서 ④는 ③의 우리말 음독의 일본어 표기에 불과하므로 생략하고 ‘亭洞~모시개(모동)’ 형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원문은 한글 고어이므로 필자가 현대어로 바꿈)

남면: 亭洞~모시개(모동), 道洞(도동), 沙洞~아렉사(사동), 玉泉洞~옥센(옥천), 新里(신리), 長興洞(장흥동)

서면: 通龜洞~통기미(동기미), 石門洞(석문), 南陽洞~고리켄(남양동), 窟巖洞(굴바위), 南西洞(남서동), 鶴浦洞(학포동), 臺霞洞(대가동)

북면: 玄圃洞~가몬사키(현포동), 新村(신촌), 光巖(광암), 錐山~송곳산(츄산), 昌洞~에이센창(창동), 竹巖~대바우(죽암), 亭石浦~정포동(정석포)

위에서 우리말 음독으로 표기된 지명 즉 모시개, 아렉사, 옥센, 통기미, 고리켄, 가몬사키, 송곳산, 에이센창, 대바우, 정포동은 현지의 호칭이 범례에 밝혀져 있다. 이 가운데 한자를 음독한 것은 옥천, 왜선창이고, ‘가몬사키’는 일본식 지명이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모두 우리말에서 온 지명이다. ‘阿陸沙’의 음독인 ‘아렉사’는 1897년에 ‘沙洞’으로 바뀌었음에도 『한국수산지』는 ‘아렉사(사동)’를 병기했으므로 ‘아렉사’가 ‘阿陸沙’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亭石浦~정포동’은 앞에서 오쿠하라가 ‘亭石浦(촌돌보)’ 즉 정돌포에서 온 것임을 밝힌 바 있으므로 ‘정돌포’를 잘못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자 지명인 신리, 장흥동, 석문동, 남서동, 신촌은 정확한 유래를 알기가 어렵다. 우리말에서 유래했다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반 출신 내지 일본인이 명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스즈키가 ‘鶴圃洞’으로 잘못 표기했던 것이 『한국수산지』에서는 ‘鶴浦洞’으로 바로잡혔으나, 반대로 ‘玄圃洞’이 ‘玄圃洞’으로 오기되어 있기도 하다. 언문을 ‘가몬사키’로 적었으면서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잘못 적은 것이다. 이런 오류는 일본인들이 우리말 방언을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한국수산지』는 ‘臺霞洞(대가동)’으로 적었으므로 ‘대하동’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는데, 본래는 황토구미, 대황토구미, 대황토포, 황토금에서 유

래한 ‘태하동’을 가리킨다. ‘태하동’이 처음 보인 시기는 1892년이지만 우리말 지명은 그 이전부터 보였으므로 ‘태하동’이 문서상의 호칭임을 말해 준다. 다만 우리말 지명(황토구미)과 문서상의 호칭(태하동) 간의 연결고리는 찾기가 어렵다. 또한 『한국수산지』는 천부동(天府洞)이 죽암과 정석포 일대를 총칭하는 지명이자 문서상의 지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죽암은 ‘대바위’, 정석포는 ‘정돌포’라는 옛 이름이 있으므로 ‘죽암’과 ‘정석포’는 문서상의 호칭에 지나지 않는다. ‘천부동’과 이들 두 지명을 연결 지을 만한 직접적인 단서는 없다. 『한국수산지』에서 새로 보인 지명은 석문동(石門洞)과 남서동(南西洞)이다.

## IV. 일제 강점기 울릉도 지명의 와전과 고착

### 1. 『조선지리지』에 수록된 지명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는 조선총독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펴낸 자료이다.<sup>57</sup> 기본 체제는 한자 표기로 하고 한글을 병기하는 방식이지만 한글 표기가 없는 지명도 많다. 『한국수산지』 발간 이후 지명의 변천과정을 아는 데 유용하다. 경상남도 울도군을 3면으로 구분하여<sup>58</sup> 남면 13개, 서면 9개, 북면 12개의 동리명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한글이 병기된 것은 괄호 안에 넣었고, 고어는 필자가 현대어로 바꿈. 콜론의 설명은 원문의 비고임)

57 필사본이며, 54책으로 되어 있는데, 착간이 보이고 편집상 오류도 적지 않다. 울도군이 경상남도 소속으로 되어 있어 1914년 이전에 펴낸 것으로 보인다. 1919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은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의 성과에 의거하여 따로 간행했다. (신종원, 「필사본 『朝鮮地誌資料』 해제」 신종원 외 7인 공저, 2010,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 강원도편 연구』, 경인문화사, 13쪽)

58 산명(山名), 천명(川名), 간명(澗名), 시장명, 성보명(城堡名), 동리촌명(洞里村名), 제언명(堤堰名), 보명(淤名), 곡명(谷名), 현명(峴名), 고적명소명, 주막명, 서원명, 야명(野名) 등으로 구분했다.

남면의 동리명: 道洞, 沙工里(사공넘이), 亭洞(모시개), 朱砂谷(주사골):저  
동 안에 있음, 新興洞, 內守田, 臥達里, 沙洞, 內平田, 玉泉洞(우복동), 長興  
洞, 新里:장흥동 안에 있음, 蓮花洞<sup>59</sup>

서면의 동리명: 通九味洞, 石門洞, 南陽洞(골개), 龜岩洞, 囉叭嶺, 鶴圃洞,  
馬岩, 山幕谷(산막골), 台霞洞

북면의 동리명: 玄圃洞(감은작지), 雄通浦(웅통개):현포동, 平里洞, 新村:  
평리동, 光岩(구암), 羅里洞, 卵峰(알봉):나리동, 錐山(송곳산), 天府洞, 古  
船昌(예선창):천부동, 石圃洞(정돌포), 竹岩(대방위):석포동

『지지』는 대부분 『한국수산지』의 지명을 계승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북면의 ‘光巖(광암)’이 ‘光岩(구암)’으로, 서면의 ‘窟巖洞(글바위, 구루바위)’가 ‘龜岩洞’과 ‘龜岩峙(굴바위재)’로 기재되어 있다. 이 지명은 이후 ‘窟岩’과 ‘龜岩’사이에 혼동을 겪어 두 지명 및 ‘光岩’을 혼용하게 된다. 현재 서면에 ‘구암(굴암)’이, 북면에 ‘구암(광암)’이 있지만, 유래를 따른다면 ‘굴암(구암)’ ‘광암(구암)’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지지』는 ‘古船昌(예선창)’으로 표기했는데, 이는 ‘왜선창’의 ‘왜’를 ‘예’로 오인하여 ‘古’로 훈차 표기한 것이다. 이는 이명우(1882)가 ‘옛선창’으로 알고 ‘舊船倉’으로 훈차 표기한 것과 같다. 『한국수산지』에서의 ‘亭石浦(정포동)’이 『지지』에서는 ‘石圃洞(정돌포)’로 되어 있다. ‘정’(亭으로 음차)+‘돌’(石으로 훈차)이 ‘정돌’(石으로 훈차)+‘포’(圃로 음차)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포’는 포구를 의미하므로 ‘石浦洞’이 되어야 맞다.

『지지』는 ‘沙工里(사공넘이)’로 표기했는데, 1906년에 ‘사쿠나미’로 변전했던 것이 여기서는 바로잡혀 있다. 『한국수산지』는 ‘옥센’ 즉 ‘옥천’으로 표기했지만, 『지지』는 ‘玉泉洞(우복동)’을 병기했다. 계명(溪名)에서는 ‘愚伏洞溪(우복동걸)’로 표기하고 비고에서는 ‘玉泉洞’으로 표기했으므로 ‘우복동’이 최초의 호칭인지는 분명히 하지 않았지만 ‘옥천’에 앞서 보였던 지명

59 김기혁·윤용출(2006)은 道花洞으로, 『울릉군지』(2007)는 蓮花洞으로 표기했는데, 원문은 蓮花洞이다.

이다. 다만 두 호칭은 한자의 뜻이나 음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신리, 신촌, 평리동은 『지지』 이전부터 보였던 지명들인데 신흥동이 추가되었다. 현재는 ‘신흥동’이 소멸된 반면, ‘신리’와 ‘평리(신촌)’으로 남아 있다. ‘丙平田’은 『지지』에서 새로 보였는데, 풀면 ‘안평전’이 된다. 현재 울릉군이 고시한 자연마을에 안평전과 중평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안평전은 ‘丙平田’에서 유래한 듯하다. 이 외에도 ‘蓮花洞’, ‘囉<sup>60</sup>叭嶺’, ‘卵峰(알봉)’이 새로 보인 지명이다.

## 2. <조선지형도>와 지명의 와전

1917년 일본 육지측량부는 5만 분의 1축척의 <조선지형도(朝鮮地形圖)><sup>61</sup>를 제작한 바 있다. 이 지도에는 다음의 지명들이 보이는데, ‘一本立島(テ-アム<sup>1</sup>ワ-ダルリ<sup>2</sup>)’ 혹은 ‘(臥達里)’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했다. 괄호에 이칭을 넣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지도에 기재된 대로 입력하되, 한자 위에 쓰여 있는 일본어 가타가나는 한글로 바꿔 괄호에 넣어 표기했다. 일본어 발음을 정확히 한글로 표기하기 어려운 것은 통칭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했다.

空岩~공바오, 觀音島~관음도, 島項嘴~섬목치, 靑島(北亭岩)북정바오, 竹島~죽도, 一本立島(竹岩)대암, 燭臺岩~촉대바오, 可頭峰~가두봉, (間嶺)(간녕), 間嶺峙~간녕재, 冠冒峰~관모봉, 光岩(광암), (龜岩)(구바오), 羅里洞~나리굴, (卵峰)(알봉), 南西洞~남서동, 南陽洞~남양동, (丙守田)(대수전), 老人峰~노인봉, 大磴~큰등, (大苧浦)(큰모시개), (中苧洞)(가운데모시개), 待風坎~대풍감, 臺霞洞(대하동), 道洞~도동, 島廳, (小羅里洞)(작은나리굴), 羅里嶺~나리령, (馬岩)(말바오), (幕洞)(막동),

60 나발은 통상 囉叭로 표기하는데 『지지』에는 囉叭로 되어 있다.

61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에서 원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청구기호 K2-4578, 1책 경상북도 울릉도, 인쇄 시기는 1917년 6월 25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竹岩’(1882-b)이 보이는데, 최초 표기는 ‘大岩’(「鬱陵島」)이었다. 이것이 ‘竹巖’(178, 1794, 1882-b)으로 바뀌었다가 ‘大巖’(1883-b)을 거쳐 ‘竹岩’(1899)으로 정착했다. 한글 표기는 ‘대바오’였으므로 ‘一本立島(竹岩)대암’에서 말한 ‘죽암’과 현재의 마을지명 ‘죽암’은 다른 지역을 의미한다.

〈조선지형도〉에서 주목할 만한 지명은 ‘(杏南)(살구남)’이다. ‘沙工浦’ ‘沙公南’에서 왔는데 1906년에 ‘샤쿠나미’, 1911년에 ‘沙空南末(샤쿠나미구쓰)’로 바뀌었다가 ‘(杏南)(살구남)’으로 바뀐 것이다. 이 지명은 ‘사공넝이, 행남동’(1923), ‘사공넝어(살구남, 杏南)’(1928)로 변천했다가 해방 후에는 ‘사구내미(蛇口南)’(1969), ‘사구나미(살구남, 蛇口南, 杏南)’(1979)로 변천했다가 현재는 ‘행남(杏南)’으로 정착했다. ‘사구나미’는 일본어를 음차표기한 것이므로 ‘사공넝’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그러므로 현재 ‘행남(살구남)’으로 표기하는 것은 그 유래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한편 고유지명이 1917년에 다르게 와전된 예를 ‘구미’라는 형태소가 전부 ‘坎’으로 바뀐 데서 찾을 수 있다. ‘구미’는 해안의 만입부 지형을 의미하는 우리말이므로 邱尾, 仇味, 邱尾, 仇味, 丘尾, 龜尾, 九味, 口尾, 九尾 등으로 표기가 단일하지 않다. 그런데 〈조선지형도〉에 와서 ‘구미’를 ‘坎’으로 일괄 치환하여, ‘사태구미’를 ‘사태감’으로, ‘대풍구미’를 ‘대풍감’으로, ‘황토구미’를 ‘황토감’으로 바꾸었다. ‘坎’은 구덩이의 의미를 지니므로 ‘구미’의 의미와는 다르다. 일제가 ‘구미’를 ‘坎’으로 바꾼 것은 ‘구미(溝)’와 발음이 유사한 한자 표기를 강구하려다 고안한 결과로 보인다.

1919년 식물학자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은 지도(5만 분의 1)에 지명을 기입했다. 나카이는 먼 단위로 지명을 기입했지만 경계가 애매한 것이 있어 일단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괄호 안 지명은 일본어 원주인데 필자가 한글로 바꿈)

남면: 臥達里, 亭洞(모시개), 上亭洞, 乃守田(네시전), 道洞(도동), 沙空南

未,<sup>64</sup> 南望樓臺, 沙洞(아렉사), 玉泉洞(오복동), 通五味(통기미), 間嶺未<sup>65</sup>  
서면: 南陽洞(고리켄), 南西洞, 石門洞(세몬동), 삿타이굴,<sup>66</sup> 굴바우, 물층  
층계, 龜岩, 나발층, 말바우峙, 말바우, 山幕, 鶴圃(차가라), 台霞, 黃土未(황  
토기미)

북면: 竹岩(대바오), 天斧洞, 昌洞, 天石山, 羅里洞(나리골), 羅里洞峯, 錐  
山, 錐里, 平里, 老人峯, 玄圃, 玄圃洞

기타 부속도서와 봉우리 이름: 竹島, 觀音島, 三岩, 石峯, 上峯(920), 羅里洞  
峯(900), 卵峯(610), 彌勒峯(850), 柏木峙(항나무차), 兄弟岩(홍제바우)

나카이도 몇 개를 오기<sup>67</sup>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전 지명을 답습했다.  
그가 ‘沙洞(아렉사)’ ‘玉泉洞(오복동)’ ‘南陽洞(고리켄)’으로 표기한 것은  
한자지명이 괄호 안의 우리말 지명에서 유래했음을 확인시켜준다.

### 3. 신문과 잡지가 전한 지명 유래

지명의 유래를 적은 문헌은 별로 없으므로 한자지명에 우리말을 병기했  
을 경우 그것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 일제 강점기 신문과 잡지도 우리말  
을 병기하여 유래의 유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어느 것은 유래를 직접 기술  
하기도 했다. 1923년 이을(李乙)은 울릉도를 답사한 뒤 『개벽』에 「동해의 一  
點靑인 鬱陵島를 찾고서」<sup>68</sup>를 게재했는데, 다음과 같이 지명을 병기했다.  
(괄호는 원주)

道洞(본명 道房), 台霞洞, 亭洞(모시계), 臥達嶺, 竹島(대섬), 石圃洞, 觀音

64 마: 未의 오기로 보인다.

65 마: 未의 오기로 보인다.

66 '삿태굴'을 의미하는 듯하다.

67 天斧洞, 天石山, 玄圃洞, 柏木峙가 이에 해당한다.

68 『개벽』 41호(1923.11)

島, 三本立, 燭臺形의 竹岩, 天府洞, 芮船倉이라는 昌洞, 洪門洞(본명 紅箭門洞), 羅里洞(일명 白舍洞), 小羅里洞, 孔岩, 錐山(송곳산), 平里, 老人峯, 玄圃洞(거문개), 香木洞, 黃土坎(황토굴), 南陽洞, 鶴圃洞, 水層洞, 龜岩, 南西洞, 南陽洞, 石門洞, 幕洞, 通九味, 可頭峯, 中嶺, 長興洞. 新里, 玉泉洞, 아룩사라는 沙洞(본명 아래구석), 聖人峯, 羅里洞의 風穴, 草峰洞窟, 水層層

이는 도서지명과 마을지명을 거의 망라한 것인데, 표기 및 유래와 관련해 서 보면, 도동이 도방에서 유래했음과 ‘창동’이 ‘예산창’에서 유래했음을 밝힌 것이 주목된다. 그는 ‘예산창’임을 알지 못하고 ‘예산창’으로 보아 ‘예’를 ‘芮’로 음차표기했다. ‘羅里洞(일명 白舍洞)’은 나리를 백함으로 보고 ‘백함동’을 병기한 것이지만, 한자는 ‘百舍’이 맞다. ‘아룩사라는 沙洞(본명 아래구석)’은 ‘사동’이 ‘아래구석’에서 유래했음을 밝힌 것인데, ‘아룩사’를 ‘아래구석’으로 오인한 것이다. ‘玄圃洞(거문개)’ 역시 ‘거문개’를 병기했음에도 ‘玄圃洞’으로 오기했고, ‘石圃洞’도 마찬가지다. 같은 잡지에 「鬱陵島行」이라는 시를 쓴 ‘堤川 丁生’<sup>69</sup>도 ‘石圃洞’, ‘玄圃洞’으로 오기했다. 이는 1910년 이전 변천과정을 겪었던 많은 지명들이 일제 강점기에 와서 정착 나아가 고착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신문은 나리동을 ‘北面 罷里洞’(1917) 혹은 ‘羅至洞’(1934)으로 오기하거나, ‘정돌포’를 ‘鄭丕船倉’으로, ‘天府洞’을 ‘千府洞’으로 오기했다.<sup>70</sup> 石圃洞民(1927), 臺霞, 玉千洞, 通五味, 羅星洞, 玄圃洞, 天斧洞, ‘芹洞(모시계)’(1937) 등의 오기도 보였다. 유래가 제대로 전승되지 않은 채 전사하다보니 빚어진 오류이다.

1928년 『동아일보』는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11회에 걸쳐 이길용(李吉用)의 「도서순례 울릉도방면(烏嶼巡禮 鬱陵島方面)」을 연재한 적이 있는데, 도동에 대해서는 “도청이 있다는 이이 섬으로서의 『도회디』이다 원래가 험준

69 위의 글.

70 「東海의 平和孤島」(『매일신보』 1934년 2월 16일)

한 산악뿐이라 길이라고는 올리지 안흐면 내려가는 비탈뿐이오 도청이 있다고 해서 이곳만은 좀 길을 반반하게 만들어 두었다고 이 동리를 도동(道洞)이라고 불른다 한다”<sup>71</sup>고 했다. 대풍감(待風坎)에 대해서는 예전에 전라도 사람들이 식량을 싣고 와서 약초를 캐고 벌목을 해서 목선을 만든 뒤 바람을 기다렸다가 떠난 곳이라서 대풍감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했다.<sup>72</sup> 석포동에 대해서는 “정돌이 선창이 있는데 이곳에 아무도 배를 대일념도 못두든 어느 해 정돌이라는 어느 선부가 맨 처음으로 배를 대었다고 해서 정돌이 선창이라고 부른다 한다”고 소개했다. 이전에 ‘鄭疋船倉’이 보였는데, 여기서 ‘정돌’이 ‘정돌이’라는 사람이름으로 와전되었다. ‘사공넘어’에 대해서는 “이곳은 아무도 넘지 못하는 고개를 『사공』이 먼저 넘었다고 해서 『사공넘어』(와전되어 살구남 : 杏南)라고 불리는 도동업 바위부근 해상의 일이다”<sup>73</sup>고 했다. 즉 ‘사공넘어’에서 ‘살구남’을 거쳐 ‘행남’으로 와전된 것임을 밝힌 것이다. ‘와달리(臥達里)’에 대해서는 경사가 심해 산의 돌이 와달와 달하며 굴러내린다고 해서 와달리라고 부른다고 했고, ‘수층동’에 대해서는 “물리 층층이 흘러나고 물층층리(水層洞) 등 거의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구전되고 있던 유래를 기술하고 있다.

한편 이길용은 “이 봉에 올라서면 청명한 날에는 조선의 강원도는 물론 이오 일본땅이 보인다고 해서 일본사람이 국견봉(國見峯)이라고 제멋대로 이름을 부쳤다”<sup>74</sup>고 했다. 히가키(1883)와 오쿠하라(1906)가 ‘國見崎’를 언급했으므로 國見峯은 國見崎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는 일본식 지명임을 시사한다. 이 지명은 ‘假道頭’(1887)와 ‘가두머리’(1892)를 거쳐 ‘國見崎’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可頭峰’으로 정착했다. 오쿠하라는 間嶺(간령)과 ‘國見崎’를 별개의 지명으로 보았는데, 『일본 수로지』(1911)는 ‘間嶺末

71 『동아일보』 1928년 9월 2일.

72 『동아일보』 1928년 9월 7일.

73 『동아일보』 1928년 9월 9일.

74 『동아일보』 1928년 9월 6일.

(내지인 國見崎)’이라고 표기하여 동일시켰다.

1930년대에 오면 “저동 제1구 용암고개(南面 苧洞 第一區 龍岩峙)”<sup>75</sup>라고 하여 ‘용암치’가 새로 보이는가 하면, “북면 황토동(北面 黃土洞)(現在 西面 台霞洞)에 상륙하야~성황당 전설”이라고 하여 황토구미를 ‘황토동’으로 칭했다. 석문동은 “서면 남양 석문리(西面 南陽 石門里)”<sup>76</sup>라고 했듯이 이전에는 ‘석문리’로 칭했다. 『조선중앙일보』는 울릉도 지명이 사람이 가서 개척할 때마다 자기들이 지은 이름이라며 “도동(道洞)은 도구통 드러가는 것갓다 하야 도동이며, 사동(砂洞)은 길게 자갈을 까리는 것갓다 하야 사동이라 하엿다 하며, 저동(苧洞)은 모시풀이 만타하야 저동이라는 등 동리마다 재미있는 유래가 잇섯다”<sup>77</sup>고 유래를 기술했다. 이는 본래의 유래라기보다는 한자의 뜻을 풀어 연관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울릉도 지명은 개척 전후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본래의 의미가 잘못 전해졌고, 그 가운데 일부는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지명이 되었다. 와전된 지명은 정착과정을 거쳐 해방 이전 고착되었다. 이를 구전으로 전해들은 울릉주민들은 해방 후 정부 기관 조사자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리고 이는 『울릉군지』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 반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V. 맺음말

울릉도에서는 개척 이전부터 지명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1910년대 초에 는 대략 35개의<sup>78</sup> 고유 지명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1913년 12월

75 『조선중앙일보』 1934년 2월 10일.

76 『조선중앙일보』 1934년 3월 15일.

77 위의 기사.

78 현재 울릉군이 계시한 자연마을 지명은 모두 57개인데 이 가운데 35개가 1914년 이전에 생성된 지명이고 22개 지명은 1914년 이후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 구역 변경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sup>79</sup>을 공포하여 울도군을 경상남도 관할에서 경상북도 관할로 바꾸고 남면·북면·서면을 각각 3동으로 구획하는 9동 체제<sup>80</sup>를 확립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유지명이 한자지명으로 바뀌었고 행정구역 명칭에서도 사라졌다. 1915년에 울도군을 다시 울릉도로 바꾸고 이어 구제(區制)<sup>81</sup>를 실시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구역을 9동(洞)으로 하는 기본 골격은 일제 강점기 내내 유지되었다. 1961년 동계에서 리제(里制)로 바뀌었고 현재는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으므로 과거의 동리 명칭은 지번 주소에서 엿볼 수 있다.

『울릉군지』(1989) 이전 지명 관련 문헌으로는 개척민 손순섭의 『島誌: 울릉도사』(1950) 『울릉도 향토지』(1963), 국어학자 서원섭의 현지 조사(1967) 및 발표문(1969), 『석포 개척지』(1973),<sup>82</sup>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1979), 문보군의 『동해의 수련화』(1981),<sup>83</sup> 『개척백년 울릉도』(1983)를 들 수 있다. 『울릉군지』<sup>84</sup>는 이들 간행물을 반영하여 지명의 유래를 기술했다. 『한국지명 유래집』(2011)은 1961년부터 시작된 지명 고시<sup>85</sup> 및 『울릉군지』를 반영하여 간행되었다. 현재 울릉군 홈페이지와 디지털 울릉문화대전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지명 관련 정보는 이들 선행 자료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고찰했듯이 잘못 전해진 정보에 의거한 것이 많다. 지명의 표기 및 유래가 잘못 전해지게 된 원인을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79 1913년 12월 29일 공포, 1914년 3월 1일 시행, 관보 1914년 1월 4일 427호 게재

80 남면은 저동, 도동, 사동이고, 북면은 현포동, 나리동, 천부동이고, 서면은 남양동, 남서동, 태하동이다.

81 구제는 1952년에 폐지되었다.

82 창간호가 1968년 12월에 나왔다고 하는데 현전하는 것은 1973년에 서문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83 1970년대 후반에 석포주민이 작성한 것이다.

84 『울릉군지』(2007)는 1989년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1989년 간행본을 위주로 분석했다.

85 국토지리정보원은 1961년과 2000년, 2011년, 2012년에 걸쳐 지명을 고시한 적이 있다. 대부분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 형상에 붙인 지명들인 지라 누락된 마을지명이 많다. 이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얻었다.

첫째, 우리말 지명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기록자에 따라 다르게 음차 혹은 훈차표기하여 달라진 경우다. ‘구멍바위’를 ‘穴岩’, ‘孔岩’, ‘空岩’으로, 최고봉을 ‘中峯’, ‘上峯’, ‘聖人峯’으로 다르게 표기한 경우가 그런 예이다. 지명의 형태소 ‘구미’를 邱尾, 仇味, 邱尾, 仇味, 丘尾, 龜尾, 九味, 口尾, 九尾 등으로 표기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현재 통칭되는 ‘九味’는 본래의 뜻과는 상관없다. ‘작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지명의 유래를 현전하는 한자의 뜻을 풀어 설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通九味’를 아홉가지 맛과 연결짓거나 ‘通龜尾’를 거북이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이 그러하다. ‘黃土九味’도 ‘九味’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

둘째 유형은 기록자가 지명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혼돈을 겪어 달라진 경우이다. 현전하는 지명 오류의 많은 부분이 이로 인해서이고, 그 원인은 대부분 일본인의 한국어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서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현포, 석포, 학포를 들 수 있다. 이때의 ‘포’는 포구(浦)의 의미인데 농포(圃)로 잘못 이해하여 현포(玄圃), 석포(石圃), 학포(鶴圃)로 고착되었다. 즉 북면의 현포(玄浦)는 본디 玄作地(1786)→玄石龜尾(1831)→黑杖邱尾(1857)→黑作地(1882-a)→黑斫支, 黑斫之浦, 玄浦, 玄斫支(1882-b)를 거쳐 ‘玄浦洞’(1883-a)으로 정착했다. 일본인은 ‘가몬崎(玄作支)’라고 표기했지만 검은자갈 지형을 의미하므로 ‘작지’라는 본래의 의미와 통한다. 그러므로 ‘검은개’ 내지 ‘검은작지’는 ‘玄浦’로 훈차표기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1900년에 ‘玄圃’로 와전되었고, 이후 ‘玄浦’가 병존하다가 현재는 ‘玄圃’로 고착되었다. 한편 ‘검은개’는 해방 후 ‘감을계·감은개·감을계’로 와전되었다. 이에 『울릉군지』(2007)에서는 ‘감을계·감을계(玄溪)’, 즉 ‘검은 계곡’의 의미로 와전되었다. 개·작지와 계곡의 의미는 다른데 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남양 3리에 ‘감을계’가 보인다. 석포(石浦)는 본디 ‘정돌포’에서 온 것이므로 ‘亭石浦’로 표기되었는데, 정돌포, 정돌포 등으로 불리며 혼돈을 겪다가 ‘石圃洞’으로 정착했다. 석포를 ‘정돌포’로 이해하여 ‘亭野圃’ 표기가 보인 것은 해방 후 한인 기록에서다. 학포(鶴浦)는 본디 ‘작은황토구미’ ‘소황토구(小黃土口)’, ‘소황토구미(小黃土邱尾)’에서

은 것인데, 1900년에 ‘鶴浦洞’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으나 『지지』에서 ‘鶴圃洞’으로 오기하다가 현재는 ‘鶴圃’로 정착했다. 沙工浦·沙公南·沙工南도 마찬가지다. 1906년에 ‘샤쿠나미’로 오인되었던 것이 ‘살구남’으로 와전되어 결국 ‘杏南’이 되었다.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혼돈을 겪은 지명으로는 중령, 굴암, 산막을 들 수 있다. ‘中嶺’은 1892년부터 1961년 조사까지 줄곧 ‘중령’이었고, 1906년 오쿠하라도 일본인 부락의 하나로 ‘中嶺’을 기재했으므로 ‘中嶺’이 맞다. 그런데 1967년 현지 조사한 서원섭은 대나무가 많아 ‘竹嶺’이라 했다가 자음접변으로 인해 ‘중영’으로 불린다고 기술했다. 이 때 문인지 『울릉군지』(1989, 2007)는 ‘中嶺’과 ‘竹嶺’을 병기했다. ‘굴바위’의 훈차표기 ‘窟岩’을 ‘龜岩’으로, ‘갯령’의 훈차표기 ‘邊嶺’을 ‘間嶺’으로, ‘山幕’을 ‘蔘幕’으로 표기한 경우도 모두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이다.

셋째, 기록상 혹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글자 수를 줄이거나 두 지명을 하나로 병합한 경우가 있다. ‘도방청’을 ‘도동’으로, ‘아록사’를 ‘사동’으로, ‘저전동·저전포’를 ‘저동’으로, ‘수층층동’을 ‘수층동’으로 ‘통구미동’을 ‘통구동’으로, ‘왜선창’을 ‘창동’으로 줄인 것이 그러하다. 특히 ‘아록사’는 한자 ‘阿陸沙’로만 보였고 우리말은 ‘아록사·알록사’로 1892년에 보였지만 1897년에 ‘사동’으로 간략해졌고 현재 ‘사동’으로 정착했다. ‘阿陸沙’의 의미가 아래구석~下隅~臥玉沙·臥鹿沙로 잘못 전해지는 바람에 서원섭은 ‘아록사(沙洞)’로 표기하되 ‘옥같은 모래가 누워있다’는 뜻에서 ‘臥玉沙’라 불렀다가 ‘아록사’라 바뀌었고 한자식 동명으로 표기할 때 ‘沙’자만을 취해 ‘沙洞’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록사’가 발음이 유사한 ‘와록사’로 와전될 가능성은 있지만 ‘와옥사’로 와전되기는 쉽지 않다. 『울릉군지』는 서원섭의 설 외에 “사슴이 누워 있다(臥鹿沙)”는 유래도 언급했는데, 이는 ‘臥鹿沙’의 자의에 맞춰 해석한 것일 뿐 유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이 아니다. ‘사동’은 1897년부터 보인 지명이므로 서원섭의 설명대로 한자식 동명을 제정할 때 바뀐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사동’의 최초 표기가 ‘아록사’라는 사실조차 밝혀진 적이 없었다. 따라서 ‘아록사’의 의미도 제대로 밝혀지

지 않은 상태이다. 두 지명을 하나로 병합한 예는 사동과 장흥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옥천동으로 만들으로써 장흥동이 소멸된 것, 통구미동, 석문동, 남양동과 남면의 장흥동 일부를 병합하여 남양동으로 만들으로써 석문동과 장흥동이 소멸된 것을 들 수 있다.

넷째 유형은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바꾸면서 우리말이 아예 없어지거나, 동일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 한인과 일인에 따라 달라진 경우이다. 전자는 ‘대항토구미’를 ‘태하동’으로, ‘소항토구미’를 ‘학포동’으로, ‘골개’를 ‘谷浦’로 훈차표기하다가 ‘남양동’으로 바꾼 경우를 들 수 있다. 1892년 『정척사술회가』와 1897년 『독립신문』에서 ‘남양동’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남양’은 조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명이다. ‘곡포’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왜 ‘남양동’으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해방 이전까지 잔존하던 ‘골개’는 ‘골계’, ‘골개’로 와전되어, 1983년에는 ‘골계’를 ‘谷溪’로 훈차표기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서면에는 남양 1리에 골계(본마을)가 있는데 이는 ‘골개’에서 와전된 것이다. 후자는 일인이 붙인 ‘왜선창’이 있었는데 한인에 의해 ‘천부동’이 새로 생성된 경우이다. ‘왜선창’은 1899년에 ‘창동’으로 바뀌었지만, 1892년에 ‘천부동’이 새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왜선창’이 ‘창동’으로 바뀌기 전에 ‘천부동’이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왜선창’ 내지 ‘창동’은 ‘천부동’과 동일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인데, 후일 ‘천부’ 인접 지역의 지명으로 ‘본천부’가 새로 보였다. ‘본천부’가 처음 보인 것은 1961년 조사에서다. 서원섭은 ‘본천부’의 유래에 대하여, 바닷가에 살 수 없다고 여긴 두 양반이 살 곳을 발견하고 보니 천부라 했는데 후에 이곳을 예선창이라고 하기에 자신들이 발견한 곳을 본래의 천부라는 뜻으로 본천부라 이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왜선창’은 개척 초기부터 보인 지명이므로 개척민들이 예선창 혹은 왜선창을 몰랐다가 후에 알게 되었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먼저 생긴 지명에 ‘본’을 붙이지 않고 뒤에 생긴 지명에 ‘본’자를 붙인다는 것도 자연스런 명명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부동’은 ‘왜선창’이 일본인의 명명임을 보여주는 데 대응

하여 한인이 고안해낸 지명으로 짐작된다.<sup>86</sup>

이런 예에 비춰볼 때 우리말을 한자지명으로 바꾼 주체가 반드시 일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태하동과 천부동은 그 의미에 비춰볼 때 한인이 명명한 듯하고, 학포와 남양동은 일인이 명명한 듯하다. 1892년에 처음 보인 ‘우복동’은 한인이 명명한 듯한데 1905년 일본 기록에는 ‘옥천동’으로 바뀌어 있다. 서원섭은 ‘우복동·옥천동’의 유래를 설명하기를, 소가 없드려 있는 모습에서 ‘牛伏洞’으로,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시냇물이 옥 같이 맑다고 해서 옥천동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했지만, ‘牛腸洞’, ‘遇伏洞’, ‘牛伏洞’ 등으로 표기가 다양하므로 이 설은 맞지 않는다. 신촌, 신리, 신흥동, 평리 등은 한자지명이므로 한인이 명명했을 것 같지만 이 역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섯째 유형은 한인의 고유 지명을 일인이 일본식으로 명명한 경우이다. 이 경우 지명 뒤의 형태소를 일본식으로 바꾼 경우와 처음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바뀐 경우로 나뉜다. 전자는 우리말 ‘작지’를 ‘사키(崎)’로, ‘구미’를 ‘坎’으로 바꾼 경우가 해당된다. 이로 인해 대풍구미, 황토구미, 사태구미가 현재는 대풍감, 황토감, 사태감이 되었다. 후자는 ‘방패도’가 ‘관음도’로 바뀐 경우가 해당된다. ‘방패’와 ‘관음’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렇듯 지명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와전되거나 표기가 바뀐 것이 많다. 울릉도는 개척 이전부터 줄곧 일본인이 왕래하고 거주해왔던 특성상 지명에도 그들의 영향력이 드리워져 있다. 그 결과 현전하는 많은 지명이 일본인에 의해 와전된 측면이 있다. 개척기에 와전된 지명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정착했고 그것이 해방 후까지 이어져 고착했다. 고착된 지명은 1950년대 말부터 본격화한 현지 조사를 통해 재확인되었고, 1961년 4월의 지명 고시는 이들 지명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형성된 지명이라 하더라도 일인이 명명한 경우가 있고, 일제 강점기에 보인

86 이을(1923)은 天府洞이라는 지명이 과거 경북시찰사(慶北視察使) 윤시병(尹始炳)이 울릉도를 관찰할 당시 기념으로 붙인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1892년 이전 중앙정부는 선전관 윤시병을 특별히 파견하여 울릉도를 검찰하게 한 적이 있다.

지명이라 할지라도 조선시대 지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울릉도 지명을 조선시대 지명과 일제시대 지명으로 단순 구분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한글학회는 1964년부터 전국의 자연지명과 고적을 조사하여 『한국지명총람』을 간행했는데 수록된 내용은 대부분 현지인의 구전에 의존한 것이다. 문헌학적 고증 없이 구전에만 의존하여 수록한 정보는 역사적 적실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현전하는 지명가운데는 일제 강점기 후반에 새로 형성된 지명<sup>87</sup>도 적지 않다. 이들 지명에 대해서는 현지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좀 더 자료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음 <참고 1>은 지명 표기의 추이를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명의 일부를 뽑아 그 변천과정을 적은 것이다. 한 자료에서 여러 개의 이칭이 보일 경우 전부 적었다.

#### <참고 1> 지명의 변천 일람<sup>88</sup>

\*倭艇倉(1711) ~ 倭船倉(『鬱陵島』) ~ 倭船滄(1786) ~ 倭船倉(1857) ~ 舊船滄(鬱陵島圖) ~ 舊船倉(1882-a) ~ 倭船滄(1882-b) ~ 倭船倉(1883-b) ~ 昌洞(1899) ~ 天府洞之古船浦(1900) ~ 昌洞(1900-b) ~ 天府洞内昌洞(1905) ~ 天府洞内昌浦; 昌洞(예선창)(1906-a) ~ 예선촌(1906-b) ~ 昌洞(1909) ~ 昌洞(예선창, 창동)(1910) ~ 古船昌(예선창, 天府洞)(『지지』) ~ (昌洞)(창동)(1917-b) ~ 昌洞(1919) ~ 芮船倉이라는 昌洞(1923) ~ 昌洞(창동)(1961) ~ 예선창(天府)(1969) ~ 船倉(예船倉, 倭船倉, 倉洞)(1979) ~ 船滄浦(1981) ~ 살구남, 예선창(1983) ~ 옛船滄, 倭船滄, 天府(1989) ~ 예선창·天府(2007) ~ 왜선창(현재 천부1리에 보임)

\*沙工浦(鬱陵島) ~ 口南伊(鬱陵島圖) ~ 竹浦(1882-b) ~ 沙公南(1900-b) ~ 沙工南(1902) ~ 沙工南(샤쿠나미)(1906-a) ~ 샤쿠나미(1906-b) ~ 砂空南末(Shakunami Kutsu)(1909) ~ 沙工里(사공넘이, 『지지』) ~ 沙空南末(샤쿠나미

87 정도, 새각단, 본천부, 백운동, 줄맨등, 신포구, 양굴, 윤하추, 지통골, 제당골, 살강대 등이다.

88 울릉도 지명 가운데 가장 많이 와전된 지명을 뽑아 적은 것이다. 지명은 생성 연대순으로 제시하되, 괄호에 연도를 표기하는 형식으로 했다. 원문은 한글로 된 경우와 한자로 된 경우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원문대로 표기했다.

구쓰(1911) ~ (杏南)(살구남)(1917-b) ~ 沙空南未(1919) ~ 沙工님이, 杏南洞(1923) ~ 사공넘어(살구남, 杏南), 사공남방<sup>89</sup>(1928) ~ 杏南(살구남)(1961) ~ 사구내미(蛇口南)(1969) ~ 사구나미(살구남, 蛇口南, 杏南)(1979) ~ 杏南, 竹浦(1981) ~ 살구남(1983) ~ 杏南(살구남, 蛇口南, 竹圃)(1989) ~ 사구내미·사구너머(2007) ~ 행남(살구남) (현재)

\* 玄作地(1786) ~ 玄石龜尾(1831) ~ 黑杖邱尾(1857) ~ 黑作地(1882-a) ~ 黑浦, 黑斫支, 黑斫之浦, 玄浦, 玄斫支(1882-b) ~ 玄浦洞(1883-a) ~ 가문崎(玄作支)(1883-b) ~ 현포(1892) ~ 현포동(1897) ~ 玄洞(1899) ~ 玄圃洞(1900) ~ 玄浦(1900-b, 1902, 1905) ~ 玄浦(현포)(일명 응통개)(1906-a) ~ 가문작기(1906-b) ~ 玄圃洞(1906-c) ~ 현포(1908) ~ 玄圃洞(가문사키)(1910) ~ 玄圃洞(감은작지)(『지리지』) ~ 玄圃洞(1912) ~ 玄圃洞(1914) ~ 玄圃洞(1917-a) ~ (玄浦)(고물개)(1917-b) ~ 玄圃, 玄圃洞(1919) ~ 玄圃洞(거문개)(1923) ~ 현포(동아일보, 1934.2.18) ~ 玄圃洞(鬱陵島勢一斑-1938) ~ 玄圃洞(현포동)(1961) ~ 玄圃(1963) ~ 가문작지(玄圃洞), 玄浦(1969) ~ 玄圃里(현포, 가문짜지, 가면작지)(1979) ~ 감은작지·黑斫支·玄圃(1981) ~ 玄圃洞(가문작지, 거문작지, 黑斫支, 玄斫支, 玄圃)(1989) ~ 가물개, 가문작지(玄圃)(2007) ~ 玄圃·玄圃里(현재)

\* 谷浦(鬱陵島圖) ~ 谷浦(1882-a, b) ~ 谷浦(골게이)(1883-a, 1883-b) ~ 谷浦洞(1887) ~ 南陽洞(1892) ~ 남양동(1897) ~ 南陽洞(1900-b) ~ 南陽洞(南陽川)(1902) ~ 南陽洞(1905) ~ 南陽洞(고리켄)(1906-a) ~ 南洞, 고리켄(1906-b) ~ 남양동(1909) ~ 南陽洞(고우리켄, 남양동)(1910) ~ 南陽洞(1912) ~ 南陽洞(골개)(『지리지』) ~ 南陽洞(1914, 1917-a) ~ 南陽洞, 남양동(1917-b) ~ 南陽洞(고리켄)(1919) ~ 南陽洞(1923) ~ 南陽洞(남양동)(1961) ~ 南陽·남양동(1963) ~ 골개(南陽洞)(1969) ~ 골개(골계); 골개재(골계재, 태하재, 태하령)(1979) ~ 골개(谷浦, 洞浦, 南陽洞)(1981) ~ 골계(谷溪)(1983) ~ 골계(谷溪)(1989) ~ 남양동, 골계(谷溪), 谷浦(1989) ~ 골계(谷溪)(2007) ~ 골계(본마을)(현재 남양리); 남양리(현재)

\* 阿陸沙(鬱陵島圖) ~ 阿陸沙(아릭사)(1883-b) ~ 아록사·알록사(1892) ~ 사

89 『중의일보』 1928년 1월 30일. “울릉도 사공남방쓰테 동남방 약 백간을 기점(基点)으로 한 후에...”

동(1897) ~ 沙洞(1900-b, 1902) ~ 沙洞(1905) ~ 沙洞(아력사)(1906-a) ~ 沙洞(1906-b, 1906-c) ~ 沙洞(1909) ~ 沙洞(아력사, 사동)(1910) ~ 沙洞(『지지』) ~ 沙洞(1912, 1914) ~ 沙洞(1917-a) ~ 沙洞:사동(1917-b) ~ 沙洞(아력사)(1919) ~ ‘아록사라는 沙洞(본명 아래구석)’(1923) ~ 下隅(매일신보, 1939.8.25.) ~ 沙洞(사동); 지도상 지명 無(와록사)(1961) ~ 沙洞(1963) ~ 아록사(沙洞), 臥玉沙(1969) ~ 와록사(아록산, 아록사, 臥玉沙)(1979) ~ 沙洞(1981) ~ ‘사동(沙洞) 일명; 아록사’(1983) ~ 沙洞(아록사, 臥玉沙, 臥鹿沙)(1989) ~ 와록사(臥鹿沙)(2007) ~ 와록사·와록사·사동리·사동(현재)

\*小黃土口(1882-a) ~ 小黃土邱尾(1882-b) ~ 小黃土邱(소황토기미)(1883-b) ~ 小黃土邱尾(鬱陵島圖) ~ 鶴浦洞(1900-b) ~ 鶴圃洞(1905) ~ 小台霞洞(자가라황토기미)(1906-a) ~ 小黃土浦(1906-b) ~ 鶴浦洞(1909) ~ 鶴浦洞(학포동)(1910) ~ 鶴圃洞(『지지』) ~ (鶴圃洞)(학포동)(1917-b) ~ 鶴圃(차가라)(1919) ~ 鶴圃洞(1923) ~ 鶴圃洞(학포동)(1961-조사표) ~ 鶴圃·학포동(1963) ~ 작은황토구미(鶴圃洞)(1969) ~ 鶴圃洞(1979) ~ 작은황토굴(小黃土丘尾)·鶴浦(1981) ~ 학포(鶴圃)(1983) ~ 小黃土邱尾, 鶴圃(1989) ~ 작은황토구미·鶴圃(2007) ~ 학포·학포동(현재)

\*우복동(1892) ~ 牛腸洞(1900-b) ~ 遇伏洞(1902) ~ 玉泉洞(1905) ~ 오복동(1906-b) ~ 玉泉洞(1906-c) ~ 玉泉洞(옥센)(1910) ~ 玉泉洞(우복동)(『지지』) ~ (玉泉洞)(옥춘동)(1917-b) ~ 玉泉洞(오복동)(1919) ~ 玉泉洞(1923) ~ 玉泉洞(옥천동)(1961) ~ 옥천동(1963) ~ 牛伏洞·玉泉洞(1969) ~ 玉泉洞(牛伏洞)(1979) ~ 玉泉洞(1981) ~ 옥천동(玉泉洞)(1983) ~ 우복동·옥천동(1989) ~ 牛伏洞·玉泉洞(2007) ~ 옥천(현재 사동2리에 보임)

\*천부동(1892) ~ 턴부(턴부동)(1897) ~ 天府洞之古船浦(1900) ~ 天府洞(1900-a, b) ~ 天府洞(1902) ~ 天府洞(1905) ~ 天府洞(춘부동)(1906-a) ~ 춘보도(1906-b) ~ 天府洞(1906-c) ~ 天府洞(『지지』) ~ 天府洞(1912, 1914) ~ 天府洞(1917-a) ~ 天府洞:천부동(1917-b) ~ 天斧洞(1919) ~ 天府洞(1923) ~ 千府洞(1934) ~ 天府洞(천부동); 본천부(지도상 무)(1961) ~ 天府·천부동(1963) ~ 本天府(1969) ~ 本天府(1979) ~ 天府洞, 船艙浦(1981) ~ ‘천부(天府), 일명; 예선창’; 本天府

(1983) ~ 天府洞(1989, 2007) ~ 천부(왜선창) · 본천부; 선창(현재)

\*태하동(1892, 1897) ~ 台霞洞(1895, 1900-a, 1900-c) ~ 台霞洞 · 대하천(臺霞川)  
 (1902) ~ 台霞洞(1905) ~ 台霞洞(황토기미); 臺霞洞 · 台霞洞(1906-a) ~ 台霞洞  
 (1906-c) ~ 台霞洞(1909) ~ 臺霞洞(대가동)(1910) ~ 台霞洞(『지지』) ~ 台霞洞  
 (1912, 1914) ~ 臺霞洞 · 台霞洞(조선회보, 1915.3)(추가) ~ 台霞洞(1917-a) ~ 臺霞洞  
 (태하동)(1917-b) ~ 臺霞洞(경상북도통계연보, 1918) ~ 台霞(1919) ~ 台霞洞, 台霞  
 嶺(1923) ~ 太霞洞(조선중앙일보, 1934) ~ 臺霞洞(1938) ~ 臺霞洞(태하동)(1961-지  
 도), 태하동(1961-조사표) ~ 台霞 · 태하동(1963) ~ 큰황토구미(台霞洞)(1969) ~ 台  
 霞里(1979) ~ 큰황토굴(大黃土丘) · 台霞洞(1981) ~ 황토구미(台霞洞)(1983) ~  
 台霞洞(1989) ~ 큰황토구미 · 台霞里(2007) ~ 태하 · 台霞里(현재)

\*亭石浦(1900-b, 1902) ~ 亭石浦(촌도로보)(1906-a) ~ 촌도로보(1906-b) ~ 石  
 浦洞(1906-c) ~ 亭石浦(정포돈)(1910) ~ 石圃洞(정들포)(『지지』) ~ (石圃洞)(석포  
 동)(1917-b) ~ 石圃洞(1923) ~ 石浦(중외일보, 1927.8.14) ~ 鄭芝船倉(1928) ~ 石圃  
 洞(석포동)(1961-지도), 석포동 · 石圃洞(1961-조사표) ~ 石浦(1963) ~ 정야포(亭  
 野圃), 정들포(1968) ~ 정들포(石浦)(1969) ~ 정들개(정들포, 석포, 석포동)  
 (1979) ~ 石圃 · 石浦(1981) ~ 석포(石圃); 정들포(1983) ~ 정들개, 정들圃, 石圃  
 (1989) ~ 정들포 · 石圃(2007) ~ 석포(정들포)(현재)

### 〈참고 2〉 〈참고 1〉의 지명의 출전

연도	주관기관 혹은 기록자	출전(문헌명)
1750~1751	홍문관	《해동지도》의 《鬱陵島》
1786	수토관 김창윤	『일성록』 정조10년 6월 4일
1794	수토관 한창국	『정조실록』 정조18년 6월 3일
1807	수토관 이태근	『일성록』 순조7년 5월 12일
1827	수토관 하시명	『일성록』 순조27년 5월 19일
1831	수토관 이경정	『일성록』 순조31년 5월 14일
1849	수토관 이규상	『일성록』 헌종15년 5월 4일
1857	수토관 지희상	『각사등록』 27, 79(상-하)
《鬱陵島圖》 (19세기 중 · 후반 추정)	수토관 추정	《鬱陵島圖》(2019,3,3, KBS 방영)
1882-a	군관 이명우	『鬱陵島記』(『목오유고』, 1917)

1882-b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	『울릉도 검찰일기』 『계초본』
1883-a	강원감영	『光緒 9年 4月 鬱陵島開拓時船格糧米雜物容入假量成冊』
1883-b	내무성 서기관 히가키 나오에	『울릉도 출장 복명서』 1883년 11월(『조선국 울릉도에 불법 도항한 일본인 처분 건』 제3권)
1883-c	해군성	『수로잡지』 제41호
1886.12	해군 수로부	『환영수로지』 제2권 2판
1887.6.5.	수도관 박태원	『한성주보』 73호(7.25. 양력)
1892	정래기, 정치사술회가	서원섭, 『鄭處士述懷歌 攷』(1970)
1897(1896년 9월 보고)	독립신문 4월 8일	『독립신문』 1897.4.8.
1899.9	외무성과 해군성 관리	조사 보고서
1900	내부 사찰위원 우용정	『올도기』
1900-a	동래감리서 주사 김면수	『동래항보첩』 3, (1900.6.9) (『각사등록』 14 경상도판)
1900-b	부산영사관 부영사 아카쓰카 쇼스케	『鬱陵島 調査概況 및 山林調査概況 報告의件』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제14권)
1900-c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2	경부 니시무라 게이쵸	『韓國 鬱陵島事情』(『통상회찬』 제234호)
1905	경부 스텝키 에이사쿠	『鬱陵島ノ現況ニ關スル報告書』 (1905.12.6) (『釜山領事館報告書』 2책)
1906-a	교장 오키하라 헤키운	『竹島及鬱陵島』 (1907년 출판)
1906-b	시마네현 시찰단	『비(秘)』 다케시마』(1905-1908)
1906-c	통감부	칙령 제49호(1906.9.24)
1909	해군성 수로부	해도
1910(1908년 조사)	통감부	『韓國水産誌』 2집
1911	해군성 수로부	『日本水路誌』
지자(1910-1913 조사)	조선총독부	『朝鮮地誌資料』
1912	조선총독부	『구한국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1914	조선총독부	총독부령 제111호
1917-a	조선총독부	『신구 대조 조선전도 부군면리동명칭 일람』 (1917.4)
1917-b	육지 측량부	〈조선지형도〉(50,000분의 1축척)(1917.6)
1919	나카이 다케노신	『울릉도 식물조사서』
1920	일본 해군성	『日本水路誌』
1923	이을	『개벽』 41호
1928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8.9.1.-12
1934	조선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1934.2.10.; 3.15.
1961-지도 ; 1961-조사표	국토지리정보원(현)	『경상북도 울릉군 지명조사철』 (『조사표』)
1963	울릉군	『울릉도항토지』

## 울릉도 마을지명의 형성과 고착과정

1968	석포 주민	『석포 개척지』
1969(1967년 조사)	서원섭	『울릉도의 지명유래』
1970	서원섭	『정치사술회가고』
197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7권
1981	문보근	『東海의 수련화』
1983	울릉군	『개척백년 울릉도』
1989	울릉군	『울릉군지』
2007	울릉군	『울릉군지』
2011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현재	울릉군	울릉군 홈페이지
지형도(2017년 조사)	국토지리정보원	〈울릉도 지형도〉(25,000분의 1 축척)

## 참고문헌

《海東地圖》

〈鬱陵島圖〉

〈朝鮮地形圖〉(1917)

「光緒9年4月 鬱陵島開拓時船格糧米雜物容入假量成冊」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 1924)

『일성록』 『정조실록』

『각사등록』 14 경상도편 「동래항 보첩 3」(1900.6.9.)

『개벽』 41호(1923.11)

「鬱陵島記」(이명우, 『點吾遺稿』, 1917)

『鬱島記』

『鬱陵島檢察日記』; 『鬱陵島檢察日記啓草本』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중외일보』

『한성주보』 73호

『韓國水産誌』 2집

『朝鮮地誌資料』

『島誌: 울릉도사』(손순섭, 1950) (유미림 번역, 2016, 울릉문화원)

『울릉도 향토지』(울릉군, 1963)

『석포 개척지』(1968, 1973)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79)

『東海의 수련화』(문보근, 1981)

『개척백년 울릉도』(울릉군, 1983)

『울릉군지』(울릉군, 1989, 2007)

『한국지명 유래집』(국토지리정보원, 2011)

경상북도사료연구회, 2018, 『독도 관계 일본 고문서 5』, 경상북도.

신종원 외 7인 공저, 2010,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 강원도편 연구』, 경인문화사.

## 울릉도 마을지명의 형성과 고착과정

- 유미림·조은희, 2008, 『개화기 울릉도·독도 관련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혜은·이형근, 2006, 『만은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홍정원, 2017, 『朝鮮의 鬱陵島·獨島 認識과 管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혁·윤용출, 2006, 「조선-일제 강점기 울릉도 지명의 생성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18권 1호.
- 김기혁, 2011, 「조선 후기 울릉도의 수토기록에서 나타난 부속 도서 지명 연구」, 『문화역사지리』 23권 2호.
- 남경란, 2003, 「경북 동해안 방언의 어휘적 특징-울릉군 지역의 방언 어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총서』 28, 영남대학교.
- 남경란, 2008, 「울릉군 지명 연구」, 『독도연구』 4호, 영남대학교.
- 서원섭, 1969, 「울릉도의 지명유래」, 『지리교육』 3권 1호, 경북대학교 사대.
- 서원섭, 1970, 「鄭處士述懷歌 攷」, 『어문논총』 4-1,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유미림, 2013, 「1882년 고종의 밀지와 울릉도 잠행~이명우의 「鬱陵島記」에 대한 해제-」 『영토해양연구』 6호, 동북아역사재단.
- 유미림, 2018, 「현지조사로 밝혀진 대한제국기 울릉도 현황과 일본의 자원 침탈」, 『해양정책연구』 3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원택, 2018, 「19세기 울릉도 수토 사료 해제 및 번역」, 『영토해양연구』 15, 동북아역사재단.
- 『水路雜誌』 제41호(1883).
- 『寰瀛水路誌』 제2권 2판(1886).
- 『日本水路誌』(1911, 1920).
- 『明治三十七年海戰史』.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14권.
- 『通商彙纂』 제2호(1906.1.23.).
- 『通商彙纂』 제50호(1905.9.3.).
- 『「秘(秘)」 다케시마』(메이지 38-41년),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
-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1919, 『鬱陵島植物調査書』, 조선총독부.

## 국문초록

울릉도에서 지명은 조선 후기 수도관이 주변 도서와 산천의 형상에 의거하여 명명하는 데 지나지 않았으나 근대기에 개척령을 전후해서는 입도자가 늘어남에 따라 마을지명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명을 기록한 문헌을 보면, 기록자마다 들은 대로 옮기다보니 잘못 전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한국의 방언을 모르는 일본인이 더 심했다.

지명이 잘못 전해지게 된 원인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음을 빌리거나 뜻을 빌려 지명을 표기할 때 기록자마다 다르게 표기했기 때문이다. 구멍바위를 ‘穴巖’과 ‘孔岩’으로 다르게 표기하거나, ‘구미’와 ‘작지’를 저마다 다르게 표기한 것이 이에 속한다. 둘째, 기록자가 지명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혼돈을 겪어 달라진 경우이다. 현전하는 지명 오류의 대부분이 이로 인해서인데 일본인에 의해 와전된 경우가 많다.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서이다. 玄浦를 玄圃로, 石浦를 石圃로, 鶴浦를 鶴圃로 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셋째, 기록상 혹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글자 수를 줄이거나 두 지명을 하나로 병합한 경우이다. ‘도방청’을 ‘도동’으로, ‘저전동·저전포’를 ‘저동’으로, ‘아륙사’를 ‘사동’으로, ‘통구미동’을 ‘통구동’으로, ‘왜선창’을 ‘창동’으로 바꾼 경우가 이에 속한다. 넷째, 우리말 지명대신 한자지명으로 바꾼 경우이다. ‘대황토구미’와 ‘소황토구미’, ‘골개(谷浦)’ 등을 태하동, 학포동, 남양동으로 바꾼 것이 이에 속한다. 다섯째, 한인의 고유 지명을 일인이 일본식으로 바꾼 경우이다. ‘구미’를 ‘감(坎)’으로 바꾼 것, 관음도의 이전 명칭인 방패도가 사라진 것이 대표적이다.

울릉도는 개척 이전부터 일본인의 왕래가 잦았던 만큼 지명에서도 그 영향이 드리워 있다. 그 결과 현전하는 지명이 잘못 전해지거나 원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된 배경에는 일본인의 영향이 매우 크다. 한인에 의해 와전된 지명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정착했고 해방 후에는 한인에 의해 그대로 답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해방 후에 새로 만들어진 지명도 있다. 조선시대 지명 가운데는 일본인이 명명한 경우가 있고, 일제 강점기의 지명

이라 할지라도 조선시대 지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경우가 있으므로 생성 연도에 의거하여 조선시대 지명과 일제 강점기 지명으로 단순 분류하기는 어렵다. 이제 울릉도 지명의 오류가 밝혀진 이상 현재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바로 수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발간된 『울릉군지』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울릉도, 사공남, 아륙사, 玄浦, 石浦, 鶴浦

## ABSTRACT

### Formation and Fixation Process of Village Names in Ulleungdo

Yoo Mi-rim

(Korea-Asia Cultural Institute, Director)

Geographical names in Ulleungdo used to be confined to what the inspector had named for the surrounding islands, mountains and streams. However, the number of village names began to rise as the number of people entering the island increased in the modern period. Literature where place names are recorded show errors as the authors wrote as what they heard. This problem is particularly severe when it comes to the names recorded by Japanese who had few understanding of Korean dialect.

There are several causes of the misrepresentation of the place names. First, when a place name was written by transcribing the sound or the meaning, the result could vary per person who recorded the name. Second, the recorder could be confused by mis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place name or due to similar pronunciation. That is why the current place names show many errors. Further, the failure of the Japanese to understand Korean dialects aggravated this error. Third, for record purposes or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the number of characters was reduced or two names were merged together. Fourth, some names were changed from Korean to Chinese characters. Fifth, there were cases where the Japanese replaced Korean names with Japanese names, which resulted in altered meaning of the place n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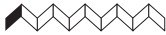
Ulleungdo had been frequently visited by Japanese people even before it was pioneered, thus the geographical names of the island reflect the influence of the Japanese. The Japanese influence is very significant on the background to the names that have been incorrectly transferred or the names that carry different meaning. The names that had been misrepresented by Koreans settled down as the island went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after the liberation, the names have been followed by Koreans to the present day.

Also, there are names newly designated after the liberation. However, some of the place names from the Joseon Dynasty were developed by the Japanese, while some of the geographical name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ould be an extension of the names used in the Joseon Dynasty.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imply classify them into place names from Joseon and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ased upon the year of formation. As the errors of the place names in Ulleungdo have been revealed now, information currently

available online should be corrected immediately and reflected in the forthcoming *Ulleunggunji* (The geography of Ulleung-gun).

Key words

Ulleungdo, Sagongnam(사공남), Haengnam(행남), Aryuksa(아륙사), Hyunpo(玄浦), Seokpo(石浦), Hakpo(鶴浦)



# 동해 표기 관련 일본 주장 비판 연구: IHO S-23 분석을 중심으로

백인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I. 머리말

일본 정부는 “일본해는 일본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십여 년간 IHO S-23(Limits of Oceans and Seas)<sup>1</sup> 제4판의 발간을 막아왔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정치적 구호와 같다. 지명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무시하고, 국제지명의 성격을 호도하며, IHO S-23의 도입과 변천 과정의 특징을 외면하는 것이다.

IHO S-23 개정과 관련된 다수의 IHO 회원국과 전문가들은 동해 병기의 타당성을 지지한다. IHO는 S-23 관련 기술적 결의 A2.4.6을 통해 당사국들의 바다 명칭에 대한 합의를 촉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병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와 프랑스는 동해 병기를 위한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안한 바 있고, 북한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의 의견서를

\* 논문 투고일: 2019. 10. 31. 심사 완료일: 2019. 11. 13. 게재 확정일: 2019. 11. 14.

1 국제수로국(IHB,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은 1970년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S-23 제1판부터 제3판까지는 IHB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IHB 발간 S-23도 IHO S-23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제출하기도 하였다.<sup>2</sup>

IHO 주요 회원국들이 동해 병기에 우호적인 이유는 IHO S-23 제1판부터 제4판 초안에 이르기까지 바다 명칭을 선정할 때 병기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해협/라망슈(English Channel/La Manche)”, “알래스카 및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수역(The Coastal Waters of Alaska and British Columbia)” 등은 IHO S-23의 제1판부터 제4판 초안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대표적인 병기형 바다 명칭이다.<sup>3</sup>

한편, 동해 단독 표기가 아닌 동해 병기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동해 병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IHO S-23에는 바다 명칭의 병기를 실제 적용한 사례들이 있다. IHO S-23은 1판부터 3판까지 영어판과 불어판으로 발간되었고, 영어와 불어지명이 다른 경우들이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Sea of Japan’ 단독 표기를 지지한다. 그리고 남북한과 일본 사이의 지명표기 논란에 대해서 국제기구는 ‘편의적’인 이유를 들어서 ‘Sea of Japan’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지명위원회(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 USBGN)는 2014년 9월 9일 동해 관련 미국의 공식 외국어 표준지명을 ‘Sea of Japan’으로 결정한 바 있다.<sup>4</sup> 그 이유로 한 나라의 영토 밖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지명이 표준지명이 되며, 널리 쓰이고 현재 사용되는 영어지명을 표준지명으로 삼는 자신들의 정책을 제시하였

2 호주의 제안서. [https://www.iho.int/mtg\\_docs/com\\_wg/S-23WG/S-23WG2/Proposals/Proposa\\_by\\_Australia.pdf](https://www.iho.int/mtg_docs/com_wg/S-23WG/S-23WG2/Proposals/Proposa_by_Australia.pdf)(2018.12.5. 검색); 프랑스의 제안서. [https://www.iho.int/mtg\\_docs/com\\_wg/S-23WG/S-23WG2/Proposals/Proposal\\_by\\_France.pdf](https://www.iho.int/mtg_docs/com_wg/S-23WG/S-23WG2/Proposals/Proposal_by_France.pdf)(2018.12.5. 검색); 북한의 의견서. [https://www.iho.int/mtg\\_docs/com\\_wg/S-23WG/S-23WG2/Proposals/Comments/DPRK\\_comments\\_on\\_proposals\\_13Aug10.pdf](https://www.iho.int/mtg_docs/com_wg/S-23WG/S-23WG2/Proposals/Comments/DPRK_comments_on_proposals_13Aug10.pdf)(2018.12.5. 검색)

3 영국해협/라망슈(English Channel/La Manche)는 제1, 2, 3판은 영어판과 불어판이 각각 출판되었고, 제4판 초안은 영어지명만 사용하면서 괄호 안에 불어명을 표기하였다; 제3판은 “동남 알래스카 및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수역(The Coastal Waters of Southeast Alaska and British Columbia)”, 제4판은 “Coastal Waters of Southeast Alaska and British Columbia”이다. 모두 동남(southeast)이 추가되었다. 제4판 초안에서는 정관사(the)를 생략했다.

4 [http://geonames.nga.mil/gns/html/PDFDocs/Sea%20of%20Japan%20Statement\\_Sept14.pdf](http://geonames.nga.mil/gns/html/PDFDocs/Sea%20of%20Japan%20Statement_Sept14.pdf)(2018.12.5. 검색)

다. 이러한 견해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IHO S-23 제3판(1953)이다. 따라서 '일본해(Sea of Japan)'를 사용하는 국제기구 및 각국의 견해를 바꾸기 위해서는 IHO S-23의 동해 병기 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김신은 지난 2004년 IHO S-23 제1판부터 제4판 초안(2002)까지 전체 바다 명칭의 변천을 제시하고, 병기 사례를 분석하여 책으로 발간하였다.<sup>5</sup> 주성재는 2007년 IHO S-23 제3판과 제4판 초안(2002)의 병기 지명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sup>6</sup>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IHO S-23의 다양한 병기 사례와 유형의 변천과정을 제1판부터 제4판 초안까지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IHO S-23은 국제지명의 표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특히 IHO S-23의 바다 명칭 병기 역사는 일본의 주장이 식민지 지배의 중요한 수단으로 지명을 오용했던 잘못된 역사를 반박하려고 하고 있으며, IHO와 국제사회의 평화적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병기 사례 유형화를 통해 IHO S-23 운영 원칙과 논리를 재검토하고, 지명학의 관점에서 일본의 동해 표기 첫 번째 주장부터 분석함으로써 그 주장의 문제점과 허구성을 논하고자 한다.

## II. IHO S-23 도입의 배경

### 1. IHO(IHB)의 설립 목적

국제수로기구(IHO)는 수로분야를 대표하는 정부 간 기구이다. IHO는 1921년 국제수로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IHB)으로 설립되었다.

5 김신, 2004, 『동해의 경계와 명칭』, 지영사.

6 주성재, 2007, "The Case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ea Nam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Justifying the Name East Sea", 『대한지리학회지』 42(5), 745~760쪽.

1970년에 현재의 이름인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IHO의 핵심적인 목적은 세계의 바다와 대양과 가항수역에 대해 적합하게 조사하고, 적합한 해도를 작성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19세기 많은 해양국가는 군함과 상선에 발전된 수로지와 해도를 제공하기 위해 수로국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해도와 수로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989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해사회의(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에서 상설 국제위원회를 설립하지는 제안이 있었고, 1908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항해총회(International Congress of Navigation)와 국제해사회의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있었다. 1919년 런던에서 열린 제1차 국제수로총회(International Hydrographic Conference)에 24개국에서 참가해서, 표준화된 방식의 해도 및 수로지 제작방법, 가장 편리한 해도와 수로지의 형태, 모든 국가 간에 원활한 수로정보 교환, 각국 수로학자들 간의 원활한 조연과 토론의 기회 제공 등을 다루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것들은 모두 IHB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이 회의의 결과로 상설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모나코의 제안으로 IHB는 주 사무국을 모나코에 두고 1921년 18개국이 참가하여 설립되었다.<sup>7</sup>

## 2. IHO의 주요 기능

IHO의 주요 기능은 수로조사 및 해도작성의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표준은 모든 회원국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거의 보편적으로 IHO의 표준이 사용된다는 것은 전 세계 국가 수로국의 출판물과 서비스가 일관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항해자 등 사용자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HO S-23은 유엔의 국제지명 표준화에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 유엔지

7 IHO, 2005, *The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second edition, 4-8.

명전문가그룹(UN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GEGN)은 해양과 해저지명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해 바다 명칭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IHO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IHO S-23이 바다 명칭의 국제적 표준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IHO S-23이 본질적으로 표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복수의 지명을 표준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에서 본다면 IHO S-23은 표준 지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IHO S-23이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도 작성과 관련된 다른 표준들과 마찬가지로 '바다 명칭의 표준지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복수지명 또는 병기 지명도 표준이 될 수 있다.

〈표 1〉 IHO 주요 특별 출판물(Special Publication)

구분	설명
S-4	IHO 해도 및 해도규격 규정
S-5A	Category "A" 수로조사자 기준
S-5B	Category "B" 수로조사자 기준
S-8A	Category "C" 수로조사자 기준
S-8B	Category "D" 수로조사자 기준
S-11	국제해도 준비 및 유지, ENC 계획, 그리고 국제해도 목록 등의 지침
S-12	등대 및 안개 신호 표준화
S-23	해양과 바다의 경계
S-32	수로사전(온라인)
S-44	IHO 수로조사 표준
S-49	항로지정 안내 표준
S-52	ECDIS의 해도 정보 및 디스플레이 규격

8 Kadmon, 1997, *Toponymy—the Lore, Laws and Language of Geographical Names*, Vantage Press, p.224.

S-53	IMO/IHO/WMO 합동 해상안전정보 설명서
S-57	IHO 디지털 수로데이터 전송 표준
S-58	ENC 인증 항목
S-60	WGS 84 자료변환 사용자 설명서
S-61	래스터 전자해도(RNC) 제품 규격
S-62	데이터 생산자 목록
S-63	IHO 데이터 보호 계획
S-64	IHO ECDIS용 시험용 데이터 세트
S-65	ENCs 생산, 유지, 배포 지침
S-66	전자해도와 사용기기 조건에 관한 사항
S-99	S-100 지리공간정보 등록소 조직과 관리를 위한 운용절차
S-100	IHO 보편적 수로데이터 모델(Universal Hydrographic Data Model)
S-102	해저지형 표면 제품 규격

### 3. IHO S-23 도입과 변천

가장 체계적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와 명칭을 만든 곳은 국제수로기구(IHO)지만, 이 지명들이 만들어지고 변천되어 온 과정은 ‘국가 지명 표준화(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와는 큰 차이가 있다. 국가적으로는 지명표준화를 단일 지명의 선택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지만, 국제적인 지명표준화는 국가 간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이해관계가 상이해서 복수의 지명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1919년 IHB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S-23)”를 도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둘러싸인 바다의 경계는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나의 해협이 연결하는 두 개의 바다 또는 해양이 어떤 바다 혹은 어떤 해양인지 알 수 있도록 언급할 것에 대해 동의한다.
2. 최종적으로 IHB가 인증한 이러한 성격의 출판물의 모든 복사물은 간단

히 “이 도표에서 보여주고 관련 글에서 설명한 경계 구분은 단지 국가수로 국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완전한 지리학적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는 표시를 할 것을 권고한다.

3. S-23은 현재 출판물 그룹으로부터 영구적 가치를 갖는 출판물 그룹으로 이전하기로 결의한다.

4. 국가기관들과 상업적 기구들의 S-23의 사용 증가의 관점에서, IHB는 내용의 업데이트를 위해 이 출판물의 개정을 수행한다는 것을 결의한다.<sup>9</sup>

결의문 1은 바다의 경계를 나누는 기준이 해협이며, 해협과 연결된 바다들의 명칭을 정하기 위해 바다의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결의문 2는 이러한 경계 구분이 편의적인 것임을 출판물에 밝히도록 하고 있다.

결의문 3은 S-23을 IHO의 영구적 가치를 갖는 출판물로 분류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결의문 4는 S-23이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IHO S-23의 목적은 다양한 국가에서 발행하는 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특히 항해자들이 바다 명칭에 대한 혼동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도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결의된 여러 사항 중의 하나이다. IHO S-23은 다른 나라의 해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수의 바다 명칭도 사용하였다.

영국해도에서는 영국해협(English Channel), 비스케이만(Bay of Biscay)으로, 프랑스해도에서는 라망슈(La Manche), 가스코뉴만(Golfe de Gascogne)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IHO S-23에서는 수용하였다.

IHO S-23은 포용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바다 명칭의 통일을 추

9 IHO, 2010, “Limits of Oceans and Seas(S-23)”, 32/1919 as amended, *Resolutions of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Publication M-3, 2nd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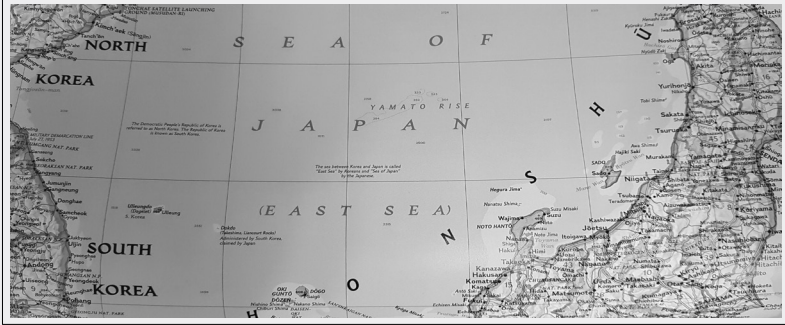
구해왔다. 그러한 특징들은 바다 명칭에 있어서 충돌하는 복수지명 사용을 수용하고, 어떤 합의에 도달하면 그에 따른 변화를 다시 수용해 왔다.

바다의 지명은 바다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이용하는 나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고유명사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언어적 특성에 따라 달리 표현되며, 이용자가 많은 바다일수록 각 나라마다 다양한 고유명사를 갖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IHO S-23의 도입과 변천과정은 각국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통일성을 추구해왔다. 공식적인 바다 명칭의 사용은 항해자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수지명을 수용하는 바다 명칭을 제정함으로써 갈등을 줄여온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92년부터 남북한의 노력으로 동해 병기에 대한 지리학적 관심이 축적되었고, 그 결과 전 세계 주요 출판사의 지도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 스톨트만(Stoltman)은 동해연구회가 주최하는 24회 해양지명국제세미나(The 24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발표문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의 『세계지도집(Atlas of the World)』 제10판(2015)에서 “Sea of Japan(East Sea)”의 병기와 그 영향을 지적하였다.<sup>10</sup> 이 지도집의 〈한국과 일본〉 지역지도에서는 지도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한국인들은 동해, 일본인들은 일본해라 부른다.(The Sea between Korea and Japan is called “East Sea” by Koreans and “Sea of Japan” by Japanese)”라고 지도 안에 붉은 글씨로 설명하였다.<sup>11</sup>

10 Joseph Stoltman, 2018, “Dual naming of geographic features”, *Proceedings of the 24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p.17.

11 National Geographic, 2015, *Atlas of the World*, 10<sup>th</sup> edition, p. 91.



〈그림 1〉 National Geographic, Atlas of the World, 10<sup>th</sup> edition, p.91.

### III. IHO S-23 병기 사례 분석

김신(2004)의 제1판부터 제4판 초안(2002)을 망라한 각 바다 명칭의 변천 및 병기사례 연구와 주성재(2007)의 병기 유형 분석을 바탕으로 제1판부터 제4판 초안(2002)까지 각 판본별 병기 유형과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다.

#### 1. IHO S-23 제1판

1928년 IHO(IHB)는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도와 수로지 등에 표시할 세계의 주요 바다와 해양에 대한 명칭을 발표한다.<sup>12</sup> 그리고 영국 해군 해도(번호 673)에 해역, 해역번호, 바다 명칭을 표시한 지도로 출간하였다.<sup>13</sup>

12 김신, 앞의 책, 16-19쪽; IHB, 1928, Limits of Oceans and Seas, Special Publication No. 23, Monte-Carlo.

13 IHB, 1928, "the World, Limits of Oceans and Seas"(Map).

### 1) 지명병기 사례

제1판에서 지명을 병기하는 경우는 6곳이었다. 이 중 3곳(16, 17, 22)은 영어표기 고유명사와 불어표기 고유명사가 완전히 다른 경우이다. 2곳(8, 42)은 두 지역 사이에 놓인 바다를 양 지역명을 사용해서 ‘또는(or)’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한 경우이다. 나머지 1곳(14)은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아일랜드해와 세인트조지해협”이다.

〈표 2〉 IHO S-23(1928) 바다 명칭 병기 사례

번호	영문지명	한글지명
8	Greenland or Norwegian Sea	그린란드해 또는 노르웨이해
14	Irish Sea and St. George's Channel	아일랜드해 및 세인트조지해협
16	English Channel, La Manche	영국해협(영), 라망쉬(불)
17	Bay of Biscay, Golfe de Gascogne	비스케이만(영), 가스코뉴만(불)
22	Caribbean Sea, Mer des Antilles	카리브해(영), 앤티리스해(불)
42	Andaman or Burma Sea	안다만해 또는 버마해
49	Naikai or Inland Sea	나이카이 또는 내해

### 2) 복잡한 지명 표기 사례

복잡한 해역에 대한 명칭으로는 3곳(5, 13, 53)을 들 수 있다. 카테가트해협(5)은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 복잡한 해협들을 포괄하는 명칭이다. 알래스카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수역(53)은 긴 설명을 포함한 병기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스코틀랜드 서안 내해(13)는 영국의 영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다른 나라가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표 3〉 IHO S-23(1928) 설명형 지명 사례

번호	영문지명	한글지명
5	Kattegat, Sound & Belts	카테가트해협
13	Inner Seas off the West Coast of Scotland	스코틀랜드 서안 내해
53	The Coastal Waters of Alaska & British Columbia	알래스카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수역

## 2. IHO S-23 제2판 분석

IHO는 1919년 S-23 결의(32/1919 as amended)에 따라 S-23의 업데이트를 추진하여 1937년 S-23 제2판을 발행한다.

### 1) 지명병기 사례

(1) 제2판에서도 여전히 병기된 바다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 ① 8번 그린란드해 또는 노르웨이해(Greenland or Norwegian Sea)
- ② 14번 아일랜드해 및 세인트조지해협(Irish Sea and St. George's Channel)
- ③ 42번 안다만해 또는 버마해(Andaman or Burma Sea),
- ④ 46번 중국해(China Sea (Tung Hai)),
- ⑤ 49번 나िका이 또는 내해(Naikai or Inliand Sea)

(2) 제2판에서 새롭게 병기된 경우도 있었다.

- ① 26번 ‘아키펠라고’에 ‘에게해’라는 명칭을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아키펠라고(에게해) (The Archipelago (Aegean Sea)).
- ② 12a 랍테프해 (또는 노르덴숄드해)(Laptev Sea (or Nordenskjöld sea))도 신규로 도입하면서 병기가 이루어졌다. 러시아 출신 랍테프(Dmitry Laptev, 1701~1771; Khariton Laptev, 1700~1763)와 스웨덴 출신 노르덴숄드(Otto Nordenskjöld, 1869~1928)는 북극 탐험가이다.

(3) 제2판에서도 영어명과 프랑스어명의 고유명사가 다르게 사용되었다.

- ① 16번 영국해협(English Channel), 라망쉬(La Manche)
- ② 17번 비스케이만(Bay of Biscay), 가스코뉴만(Golfe de Gascogne)
- ③ 22번 카리브해(Caribbean Sea), 앤티리스해(Mer des Antilles)

〈표 4〉 IHO S-23(1937) 바다 명칭 병기 사례

번호	영문지명	한글지명	비고
8	Greenland or Norwegian Sea	그린란드해 또는 노르웨이해	
12a	Laptev Sea (or Nordenskjöld sea)	랍테프해 (또는 노르덴숄드해)	신규 병기
14	Irish Sea and St. George's Channel	아일랜드해 및 세인트조지해협	

## 동해 표기 관련 일본 주장 비판 연구: IHO S-23 분석을 중심으로

16	English Channel, La Manche	영국해협, 라망슈	영불 병기
17	Bay of Biscay, Golfe de Gascogne	비스케이만, 가스코뉴만	영불 병기
22	Caribbean Sea, Mer des Antilles	카리브해, 앤틸리스해	영불 병기
26	The Archipelago (Aegean Sea)	아키페라고 (에게해)	병기 추가
42	Andaman or Burma Sea	안다만해 또는 버마해	
45	South China Sea (Nan Hai)	남중국해 (난하이, 南海)	중국어 병기
46	China Sea (Tung Hai)	중국해 (통하이, 東海)	중국어 병기
47	Yellow Sea (Hwang Hai)	황해 (황하이, 黃海)	중국어 병기
49	Naikai or Inliand Sea	나이카이(內海) 또는 내해	일본어 병기
53	The Coastal Waters of Alaska & British Columbia	알래스카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수역	

### (4). 제2판에서도 여전히 설명형 명칭이 계속 사용된다.

① 5번 카테가트 해협(Kattegat, Sound & Belts)은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 협을 지칭한다. 여기서 ‘Sound’와 ‘Belts’는 해협을 뜻하는 스웨덴어 ‘sund’와 덴마크어 ‘baelt’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S-23 제4판 초안(2002)에는 사운드해(Sound Sea), 외레순해협(The Sound, Øresund), 스토레벨트해협(Storebaelt), 릴레벨트해협(Lillebaelt) 카테가트해협(Kattegat)으로 세분화되었다.

② 13번 스코틀랜드 서안 내해(Inner Seas off the West Coast of Scotland)

③ 53번 알래스카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 수역(The Coastal Waters of Alaska & British Columbia)은 설명형 병기 사례이다.

(표 5) IHO S-23(1937) 설명형 지명 사례

번호	영문지명	한글지명
5	Kattegat, Sound & Belts	카테가트해협
13	Inner Seas off the West Coast of Scotland	스코틀랜드 서안 내해
53	The Coastal Waters of Alaska & British Columbia	알래스카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수역

### 3. IHO S-23 제3판 병기 사례 분석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S-23의 개정작업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1953년 S-23 제3판이 나왔다. 1980년대부터 준비한 제4판의 작업이 지

연되면서 1953년 S-23 제3판이 지금 현재 가장 공신력 있는 바다 명칭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 1) 지명 병기 사례

(1) 복수지명을 사용하였던 그린란드해(5)와 노르웨이해(6)를 분리하였다.

(2) 기존의 지명에 복수지명이 부가된 경우가 있었다.

동인도제도(인도네시아)(East Indian Archipelago(Indonesia))(48)가 그 예이다.

(3)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기존 명칭을 괄호에 병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① 페르시아만을 이란만으로 바꾸고, 페르시아만을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이란만(페르시아만)(Gulf of Iran(Persian Gulf))(41)

② 제2판의 지명이 제3판에서 영어명과 프랑스어명이 달라진 경우가 있었다.

시암만(Gulf of Siam)이 프랑스어 지명으로는 타이만(시암만)(Golfe de Thaïlande (Siam))(47)으로 변경되었다. 프랑스어판의 타이만은 이전에는 영어와 같이 시암만이었는데 제3판에서 바꾸고, 괄호에 ‘Siam’을 병기했다. 시암만은 제4판 초안에서는 타이만으로 영어명칭도 바뀐다.

(4) 복수지명 중에서 현지 지명을 변경한 경우가 있었다.

일본 내해(Naikai or Inland Sea)를 “세토나이카이 또는 내해(Seto Naikai or Inland sea)”(53)로 변경하였다.

(5) 제3판에서 신규로 추가된 해역 중에 병기된 경우가 있었다.

① 대서양에 추가된 하위해역 중 발레아레스해(이베리아해)(Balearic Sea(Iberian Sea))(28(c))가 병기되었다.

② 말라카<sup>14</sup>·싱가포르 해협(Malacca and Singapore Strait)(46)이 추가되었는데 병기하였다. 그리고 하위해역을 말라카해협(Malacca Strait)(46(a))과 싱가포르 해협(Singapore Strait)(46(b))으로 나누었다.

14 말라카(Malacca)는 멜라카(Melaka)의 옛지명. (표준국어대사전)

(6) 이전의 병기도 계속 사용하였다.

- ① 랍테프해(또는 노르덴숄드해)(10)
- ② 아일랜드해와 세인트조지해협(Irish Sea and St. George's Channel)(19)
- ③ 에게해(아키펠라고)(28(h)). 제2판까지는 아키펠라고(에게해)(The Archipelago (Aegean Sea))
- ④ 안다만해 또는 버마해(Andaman or Burma Sea)(42) 등이다.

(7) 영어와 프랑스어식 지명의 병기 사례도 계속 사용된다.

- ① 영국해협(English Channel), 라망슈(La Manche)(21)
- ② 비스케이만(Bay of Biscay), 가스코뉴만 또는 비스케이만(Golfe de Gascogne ou baie de Biscaye)(22)

- ③ 카리브해(Caribbean Sea), 앤티리스해(Mer des Antilles)(27)
- ④ 시암만(Gulf of Siam), 타이(시암)만, Golfe de Thaïlande(Siam) 등이다.

프랑스어판에서는 ‘안다만해 또는 버마해’<sup>(44)</sup>를 기존에 ‘버마해(Mer de Birmanie)’로 표기하다가 영어판에 맞추어 ‘Mer des Andaman ou Mer du Birmanie’로 병기하였다.

(8) 제3판에서도 여전히 바다 명칭이라 부를 수 없는, 어떤 해역을 설명하는 명칭이 계속 사용된다.

- ① 카테가트 해협(Kattegat, Sound & Belts)(2)
- ② 스코틀랜드 서안 내해(Inner Seas off the West Coast of Scotland)(18)
- ③ 동남 알래스카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수역(The Coastal Waters of South-east Alaska & British Columbia)(59) 등이다. 59번은 ‘알래스카’를 ‘동남 알래스카’로 지칭하면서 더 긴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지명은 설명형이면서 동시에 병기형 지명이다.

〈표 6〉 IHO S-23(1953) 바다 명칭 병기 사례

번호	영문지명	한글지명	
10	Laptev Sea (or Nordenskjöld sea)	랍테프해 (또는 노르덴숄드해)	
14	Irish Sea and St. George's Channel	아일랜드해 및 세인트조지해협	
21	English Channel, La Manche	영국해협, 라망슈	영불 병기

22	Bay of Biscay, Golfe de Gascogne	비스케이만, 가스코뉴만	영불 병기
27	Caribbean Sea, Mer des Antilles	카리브해, 앤틸리스해	영불 병기
28(c)	Balearic Sea (Iberian Sea)	발레아레스해 (이베리아해)	신규, 병기
28(h)	The Archipelago (Aegean Sea)	아키페라고 (에게해)	
41	Gulf of Iran (Persian Gulf)	이란만 (페르시아만)	신규, 병기
42	Andaman or Burma Sea	안다만해 또는 버마해	
46	Malacca and Singapore Strait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	신규, 병기
46(a)	Malacca Strait	말라카해협	신규
46(b)	Singapore Strait	싱가포르해협	신규
47	Gulf of Siam Golfe de Thaïlande (Siam)	시암만 타이만(시암만)	불어 신규 및 병기
48	East Indian Archipelago (Indonesia)	동인도제도(인도네시아)	병기 추가
45	South China Sea (Nan Hai)	남중국해 (난하이, 南海)	
46	China Sea (Tung Hai)	중국해 (통하이, 東海)	
47	Yellow Sea (Hwang Hai)	황해 (황하이, 黃海)	
53	Seto Naikai or Inland sea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또는 내해	명칭변경
59	The Coastal Waters of Southeast Alaska & British Columbia	동남 알래스카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 수역	

현재 사용하고 있는 IHO S-23 제3판(1953)에서도 병기형 지명 및 설명형 지명이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새롭게 추가된 해역의 경우에 병기가 더 활발함으로 알 수 있다.

#### 4. IHO S-23 제4판 초안(2002) 분석

##### 1) IHO S-23 제4판 초안(2002) 경과

“IHO S-23 제4판 초안(2002)” (이하 제4판 초안)의 개괄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1977년 11차 국제수로총회(International Hydrographic Conference)에서 S-23 제4판의 출판을 결정했다. 국제수로총회 결정 17번(Decision No. 17)은 다음과 같다.

“총회는 지도학자, 국가기관, 그리고 상업적 기구들에 의한 사용증가의 관

점에서 국제수로사무국이 S-23 내용의 개정을 맡기로 했다.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국제수로사무국(IHB)은 임시 워킹그룹이 대표해서 출판물의 검토와 업데이트와 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요청한다.”

워킹그룹의 대표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프랑스, 서독, 일본, 소련, 영국, 미국이 지명되었다.

… 영국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출해서, 워킹그룹에서 회람하고 세부사항을 수정한 후 채택하고, 1979년 11월 S-23개정에 착수했다. … 1986년 제출된 제4판 초안은 부결되었다. … 이 초안은 그 수정 결과이다.

제4판의 본문과 지도에서 사용된 이름과 경계는 국가수로국이 자신들이 만든 해도를 분류하고 수로지를 준비할 때 오로지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다. 경계는 완전하고 정확한 지리적 연구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조사의 수로데이터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름과 경계는 해양학자들과 다른 이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S-23에 사용된 경계는 어떤 경우든 법적 또는 정치적 의미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sup>15</sup>

제4판 초안 서론에서 새로운 대양과 바다의 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① 10개의 주요구역과 하위구역으로 바다의 체제를 구성하였고, ② 바다 명칭은 고유명칭을 사용하지만 두 나라 이상 관련된 해역의 속성명칭은 영문명칭을 사용하며, ③ 지명사용에 반대가 존재하면 만장일치로 합의하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IHO 기술결의 A4.2에 따라 병기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sup>16</sup>

15 IHO, 2002, *Names and Limits of Oceans and Seas, S-23 Final Draft*, p.i.

16 Ibid., pp.i-ii. [https://www.iho.int/mtg\\_docs/com\\_wg/S-23WG/S-23WG\\_Misc/Draft\\_2002/S-23\\_Draft\\_2002\\_HEADING.doc](https://www.iho.int/mtg_docs/com_wg/S-23WG/S-23WG_Misc/Draft_2002/S-23_Draft_2002_HEADING.doc)(2018.9.10. 검색)

## 2) 제4판 초안의 주요 쟁점: 동해 병기

S-23 제4판의 첨예한 쟁점은 동해/일본해 병기와 관련되어 있다. 결국은 이 초안에도 동해부분은 실리지 못했다. 그러나 초안의 서론에서 IHO 기술결의(Technical Resolution) A4.2, paragraph 6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합의와 병기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즉,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공통의 이름으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영국해협과 라망쉬(e.g. English Channel/La Manche)의 예를 들어 병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본문 상에 각각의 언어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East Sea/Japan Sea”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지리적 형상물(예를 들어 만, 해협, 군도 등)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형상물의 단일 지명의 확정에 합의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 ① 서로 다른 공식언어를 사용하고, ② 공통의 이름에 합의할 수 없다면, ③ 단 소축적 해도와 같이 이를 담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sup>17</sup> 문제가 되는 각각 언어의 이름을 해도와 수로지에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 예. 영국해협/라망쉬(English Channel/La Manche).

It is recommended that where two or more countries share a given geographical feature (such as, for example, a bay, strait, channel or archipelago) under a different name form, they should endeavour to reach agreement on fixing a single name for the feature concerned. If they have different official languages and cannot agree on a common name form, it is recommended that the name forms of each of the languages in question should be accepted for charts and publications unless technical reasons prevent this practice on small scale

17 번호와 밑줄은 논의의 편의상 추가함.

charts, e.g. English Channel/La Manche.”<sup>18</sup>

먼저 ③번 “소축적 해도와 같이 이를 담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의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가장 긴 바다 명칭을 가진 “동남 알래스카 및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수역(Coastal Waters of Southeast Alaska and British Columbia) (7.11)”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②번은 일본이 계속 합의를 거부할 경우에, “각각 언어의 이름을 해도와 수로지에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 바에 따르면 된다.

①번에서 남북한과 일본이 “서로 다른 공식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북한과 일본이 주장하는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가 영어 지명으로 관련국들의 공식 언어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술결의 A2.4.6의 근본적인 정신은 관련국의 합의를 강조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병기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남북한과 일본이 사용하고자 하는 국제지명이 영어인 경우에도 이를 병기하는 것이 국제지명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과 정치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만(Persian Gulf)과 아라비아만(Arabian Gulf)의 문제도 일단 병기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기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병기지명이 정착되거나 새로운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IHO S-23의 바다 명칭 관련국들의 갈등이 해결된다면, IHO S-23 제4판의 발간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4판 초안에서도 바다 명칭에 대한 병기가 계속되고 있다. 제4판 초안에서는 영어명칭에 대한 불어명칭을 괄호 안에 병기했다는 특징이 있다.

<sup>18</sup> Ibid, Appendix C. [https://www.iho.int/mtg\\_docs/com\\_wg/S-23WG/S-23WG\\_Misc/Draft\\_2002/S-23\\_Draft\\_2002\\_APPENDICES.doc](https://www.iho.int/mtg_docs/com_wg/S-23WG/S-23WG_Misc/Draft_2002/S-23_Draft_2002_APPENDICES.doc)(2018.9.10. 검색)

〈표 7〉 IHO S-23(2002) 바다 명칭 병기 사례

번호	영문지명	한글지명	비고
1.7	English Channel (La Manche)	영국해협 (라망슈)	영불 병기
1.7.1	Dover Strait (Pas de Calais)	도버해협 (칼레해협)	신규 영불 병기
1.8	Bay of Biscay (Golfe de Gascogne)	비스케이만 (가스코뉴만)	영불 병기
3.1.1.3	Balearic Sea (Iberian Sea)	발레아레스해 (이베리아해)	
7.11	Coastal Waters of Southeast Alaska and British Columbia	동남 알래스카 및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수역	

IHO S-23의 지명병기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일본의 반대와 한국의 주장을 지켜본 IHO 회원국과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병기 주장을 지지해 왔다. 호주와 프랑스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동해와 일본해를 표기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동해(7.6)의 하위수역으로 타타르해협(7.6.1)이 추가될 예정이다. 남해의 경우 별도의 수역으로 분리하려는 논의가 있었는데, 서양 고지도에서는 일본해라 표기한 지도에서조차도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수역을 대한해협(Korea Strait)로 표기해왔던 것을 근거로 대한해협으로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한해협은 부산과 일본 사이의 해협만을 의미할 수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IV. IHO S-23의 병기 유형과 판본별 특징

### 1. 지명병기 유형과 판본별 특징

제1판부터 제4판 초안까지 바다 명칭 병기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1판의 병기 유형과 특징

제1판의 병기 사례는 9건이 있다.

- ① 그린란드해 또는 노르웨이해(Greenland or Norwegian Sea)(8)
- ② 안다만해 또는 버마해(Andaman or Burma Sea)(42)
- ③ 중국해 또는 통하이(China Sea or Tung Hai)(46)
- ④ 아일랜드해 및 세인트조지해협(Irish Sea and St. George's Channel)(14)
- ⑤ 알래스카 및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수역(The Coastal Waters of Alaska and British Columbia)(53)
- ⑥ 카테가트해협(Kattegat, Sound & Belts)(5)
- ⑦ 영국해협(영), 라망쉬(불)(English Channel, La Manche)(16)
- ⑧ 비스케이만(영), 가스코뉴만(불)(Bay of Biscay, Golfe de Gascogne)(17)
- ⑨ 카리브해(영), 앤틸리스해(불)(Caribbean Sea, Mer des Antilles)(22)

이 9건을 좀 더 세분화하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각각의 이름을 단독으로 써도 무방한 “or형 병기” 유형

① 그린란드해 또는 노르웨이해, ② 안다만해 또는 버마해, ③ 중국해 또는 통하이

는 각각의 이름으로 써도 무방한 병기형태이다.

둘째, 역시 각각의 이름을 단독으로 써도 무방한 영어와 불어를 병기하는 “영불 병기” 유형

⑦~⑨번은 영어명과 붙어명이 다른 경우이다.

셋째, 분리할 수 없는 “and형 병기” 유형

④ 아일랜드해 및 세인트조지해협, ⑤ 알래스카 및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수역은 병기형태이지만 분리할 수 없는 형태이다.

넷째, 여러 개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요약형 병기” 또는 “Kattegat 형 병기” 유형

⑥ 카테가트해협은 설명형 바다 명칭이면서 두 개 이상의 지명들이 포함된 병기형 바다 명칭이다.

## 2) 제2판의 병기 유형과 특징

제2판에서는 제1판의 병기 사례에 더하여 병기가 추가되었다. 제2판 병기의 특징은 신규로 병기하는 경우에 괄호 안에 병기하는 형태를 따르다는 점이다. 괄호형 병기의 경우도 각각의 이름을 단독으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 ① 랍테프해(또는 노르덴숄드해)(Laptev Sea(or Nordenskjöld sea))(12a)
- ② 아키펠라고(에게해)(The Archipelago(Aegean Sea))(26)
- ③ 남중국해(난하이)(South China Sea(Nan Hai))(45)
- ④ 중국해(통하이)(China Sea(Tung Hai))(46)
- ⑤ 황해(황하이)(Yellow Sea(Hwang Hai))(47)

이후 판본에서도 각각 단독 표기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괄호형 병기를 채택한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 본 National Geographic Atlas(10th edition)(2015)의 “Sea of Japan(East Sea)”도 이러한 병기 형식을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 3) 제3판의 병기 유형과 특징

제3판에서도 병기가 증가하였다.

병기가 늘어난 것은 새로운 해역을 추가하면서 병기된 사례, 신규 명칭을

도입하면서 기존 이름을 괄호 안에 병기한 사례, 기존 이름에 병기를 추가한 사례 등이 있다.

- ① 발레아레스해(이베리아해)(Balearic Sea(Iberian Sea))(28(c))
- ②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Malacca and Singapore Strait)(46)
- ③ 이란만(페르시아만)(Gulf of Iran(Persian Gulf))(41)
- ④ 타이만(시암만)(불)(Golfe de Thailande (Siam))(47)
- ⑤ 동인도제도(인도네시아)(East Indian Archipelago(Indonesia))(48)

① “발레아레스해(이베리아해)”, ②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은 새로운 해역을 추가하면서 병기한 사례이다.

③ “이란만(페르시아만)”, ④ 불어명칭 “타이만(시암만)”은 기존의 해역이름에 신규 지명을 추가하고 기존 지명을 괄호 안에 병기한 경우이다.

⑤ 동인도제도(인도네시아)는 기존 명칭에 병기가 추가된 사례이다.

제3판 병기된 사례 중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은 말라카해협 또는 싱가포르해협으로 단독 표기가 불가능한 유형이다.

한편 기존에 병기되었던 해역을 분할하여 별도의 해역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그린란드해 또는 노르웨이해”를 별도의 해역으로 분리하면서, 병기했던 하나의 해역을 “그린란드해(Greenland Sea)(5)”와 “노르웨이해(Norwegian Sea)(6)”로 분리하였다.

#### 4) 제4판 초안의 병기 사례

제4판 초안의 병기 사례는 하위해역 개념을 도입하면서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설정된 하위해역에도 병기된 경우가 있었다. 기존에 영어판과 불어판으로 분리되어 있던 바다 명칭이 일단 제4판 초안에서는 영어만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는데, 영어명칭에 대해 괄호 안에 불어명칭이 병기된 사례가 4개 있었다. 그중에서 1.7.1번 도버해협(칼레해협)은 신규로 병기된 사례이다.

제4관 초안의 병기 사례도 “and형 병기”를 제외하고는 단독 표기가 가능한 유형이다.

제4관 초안에서도 “동남 알래스카 및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수역”은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페르시아만은 이란만을 삭제하고 페르시아만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페르시아만에 거부감을 느끼는 아랍권 국가들은 페르시아만 사용을 반대하고 아라비아만(Arabian Gulf)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 IHO S-23 병기 사례 유형

IHO S-23은 지난 100년 동안 회원국들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져 왔다. 항해의 안전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도에 표시하는 해양과 바다의 명칭을 표준화한 것이다. IHO S-23은 그 해양과 바다의 표준화된 명칭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명표준화 방식보다 훨씬 유연한 표준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진행되는 표준화와 같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1백 년간의 IHO S-23 제정 및 개정 과정은 국가 간에 지명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과 경험을 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HO S-23의 유연한 지명 표준화의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관련국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명을 병기하는 것이다. 둘째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설명형 지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병기 형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선택적 병기형식(‘or’)과 일괄적 병기형식(‘and’)으로 나눌 수 있다.

선택적 병기형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둘 중 어느 하나의 지명으로 단독 표기되는 경우와 영어/불어 병기처럼 계속해서 병기되는 경우가 있다.

병기 형태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택적 병기 I (or형 병기) :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나 가능

- ① 그린란드해 또는 노르웨이해(Greenland or Norwegian Sea) (1, 2판)
- ② 안다만해 또는 버마해(Andaman or Burma Sea) (1, 2, 3판)
- ③ 랍테프해(또는 노르덴쇼드해)(Laptev Sea (or Nordenskjöld sea)) (2, 3판)
- ④ 중국해 또는 통하이(China Sea or Tung Hai) (1판)

2) 선택적 병기II(영블 병기) :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나 가능

- ① 비스케이만(영), 가스코뉴만(불)(Bay of Biscay, Golfe de Gascogne) (1, 2, 3판)
- ② 영국해협(영), 라망쉬(불) (English Channel, La Manche) (1, 2, 3판)
- ③ 카리브해(영), 앤틸리스해(불) (Caribbean Sea, Mer des Antilles) (1, 2, 3판)

3) 선택적 병기III(괄호형 병기) :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나 가능

- ① 비스케이만(가스코뉴만)(Bay of Biscay(Golfe de Gascogne)) (4판)
- ② 영국해협(라망쉬)(English Channel(La Manche)) (4판)
- ③ 도버해협(칼데해협)(English Channel(La Manche)) (4판)
- ④ 발레아레스해(이베리아해)(Balearic Sea(Iberian Sea)) (3, 4판)
- ⑤ 아키펠라고(에게해)(The Archipelago(Aegean Sea)) (2, 3판)
- ⑥ 동인도제도(인도네시아)(East Indian Archipelago(Indonesia)) (3판)
- ⑦ 이란만(페르시아만)(Gulf of Iran(Persian Gulf)) (3판)
- ⑧ 타이만(시암만)(Golfe de Thailande(Siam)) (3판 불어)
- ⑨ 동중국해(통하이)(Eastern China Sea(Tung Hai)) (2판)
- ⑩ 중국해(통하이)(China Sea(Tung Hai)) (3판)
- ⑪ 황해(황하이)(Yellow Sea(Hwang Hai)) (2, 3판)
- ⑫ 남중국해(난하이)(South China Sea(Nan Hai)) (2, 3판)

4) 일괄적 병기 : 병기만 가능한 형태

- ① 아일랜드해 및 세인트조지해협(Irish Sea and St. George's Channel) (1, 2, 3판)
- ② 말라카·싱가포르 해협(Malacca and Singapore Strait)(3판)

③ (동남)알래스카 및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수역(Coastal Waters of (South-east) Alaska and British Columbia) (1, 2(3, 4)판)

〈표 8〉 IHO S-23 병기 사례 종합

판본	고유 번호	영문지명	한글지명	비고
1	42	Andaman or Burma Sea	안다만해 또는 버마해	
2	42	Andaman or Burma Sea	안다만해 또는 버마해	
3	42	Andaman or Burma Sea	안다만해 또는 버마해	
4	5,14	Andaman Sea	안다만해	단독 표기
3	28(c)	Balearic Sea (Iberian Sea)	발레아레스해(이베리아해)	신규 병기
4	3,1,1,3	Balearic Sea (Iberian Sea)	발레아레스해(이베리아해)	
1	17	Bay of Biscay, Golfe de Gascogne	비스케이만(영), 가스코뉴만(불)	영불 병기
2	17	Bay of Biscay, Golfe de Gascogne	비스케이만(영), 가스코뉴만(불)	영불 병기
3	22	Bay of Biscay, Golfe de Gascogne	비스케이만(영), 가스코뉴만(불)	영불 병기
4	1,8	Bay of Biscay(Golfe de Gascogne)	비스케이만(가스코뉴만)	영불 병기
1	22	Caribbean Sea, Mer des Antilles	카리브해(영), 앤틸리스해(불)	영불 병기
2	22	Caribbean Sea, Mer des Antilles	카리브해(영), 앤틸리스해(불)	영불 병기
3	27	Caribbean Sea, Mer des Antilles	카리브해(영), 앤틸리스해(불)	영불 병기
4	1,10	Caribbean Sea	카리브해	단독 표기
1	46	China Sea or Tung Hai	중국해 또는 통하이	토착지명 병기
2	46	Eastern China Sea(Tung Hai)	동중국해(통하이)	
3	46	China Sea(Tung Hai)	중국해(통하이)	
4	7,3	East china Sea	동중국해	중국명 삭제
4	1,7,1	Dover Strait(Pas de Calais)	도버해협(칼레해협)	신규 영불 병기
1	43	East Indian Archipelago	동인도제도	
2	43	East Indian Archipelago	동인도제도	
3	48	East Indian Archipelago(Indonesia)	동인도제도(인도네시아)	병기 추가
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동해 표기 관련 일본 주장 비판 연구: IHO S-23 분석을 중심으로

1	16	English Channel, La Manche	영국해협(영), 라망슈(불)	영불 병기
2	16	English Channel, La Manche	영국해협(영), 라망슈(불)	영불 병기
3	21	English Channel, La Manche	영국해협(영), 라망슈(불)	영불 병기
4	1.7	English Channel(La Manche)	영국해협(라망슈)	영불 병기
1	8	Greenland or Norwegian Sea	그린란드해 또는 노르웨이해	
2	8	Greenland or Norwegian Sea	그린란드해 또는 노르웨이해	
3	5	Greenland Sea	그린란드해	분리
3	6	Norwegian Sea	노르웨이해	분리
4	9.6	Greenland Sea	그린란드해	
4	9.7	Norwegian Sea	노르웨이해	
1	39	Persian Gulf	페르시아만	
2	39	Persian Gulf	페르시아만	
3	41	Gulf of Iran(Persian Gulf)	이란만(페르시아만)	기존지명 병기
4	5.6	Persian Gulf	페르시아만	
1	44	Gulf of Siam	시암만	
2	44	Gulf of Siam	시암만	
3	47	Gulf of Siam, Golfe de Thailande(Siam)	시암만, 타이만(시암만)	불어 병기 추가
4	6.3	Gulf of Thiland	타이만	
1	14	Irish Sea and St. George's Channel	아일랜드해 및 세인트조지해협	
2	14	Irish Sea and St. George's Channel	아일랜드해 및 세인트조지해협	
3	14	Irish Sea and St. George's Channel	아일랜드해 및 세인트조지해협	
4	1.4	Irish Sea	아일랜드해	단독 표기
1	5	Kattegat, Sound & Belts	카테가트해협	
2	5	Kattegat, Sound & Belts	카테가트해협	
3	2	Kattegat, Sound & Belts	카테가트해협	
4	2.4	Sound Sea	사운드해	분리
4	2.6	The Sound	외레순해협	분리
4	2.7	Storebaelt	스토레벨트해협	분리
4	2.8	Lillebaelt	릴레벨트해협	분리

4	2,9	Kattegat	카테가트해협	분리
2	12a	Laptev Sea(or Nordenskjöld sea)	랍테프해(또는 노르덴숄드해)	신규 병기
3	10	Laptev Sea(or Nordenskjöld sea)	랍테프해(또는 노르덴숄드해)	
4	9,2	Laptev Sea	랍테프해	단독 표기
3	46	Malacca and Singapore Strait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	신규 병기
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	45	South China Sea	남중국해	
2	45	South China Sea(Nan Hai)	남중국해(난하이)	토착지명 병기
3	45	South China Sea(Nan Hai)	남중국해(난하이)	
4	6,1	South China Sea	남중국해	단독 표기
1	26	The Archipelago	아키펠라고	
2	26	The Archipelago(Aegean Sea)	아키펠라고(에게해)	병기 추가
3	28(h)	The Archipelago(Aegean Sea)	아키펠라고(에게해)	
4	3,1,2,4	Aegean Sea	에게해	단독 표기
1	53	The Coastal Waters of Alaska and British Columbia	알래스카 및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수역	
2	53	The Coastal Waters of Alaska and British Columbia	알래스카 및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수역	
3	59	The Coastal Waters of Southeast Alaska and British Columbia	동남 알래스카 및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수역	
4	7,11	Coastal Waters of Southeast Alaska and British Columbia	동남 알래스카 및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수역	
1	47	Yellow Sea	황해	
2	47	Yellow Sea(Hwang Hai)	황해(황하이)	토착지명 병기
3	47	Yellow Sea(Hwang Hai)	황해(황하이)	
4	7,4	Yellow Sea	황해	단독 표기

### 3. 국제지명의 역사로서 IHO S-23

IHO S-23은 IHO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1919년 IHO S-23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어 올해로 100주년이 되었다.

IHO S-23은 지난 100년간의 세계 바다 명칭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의가 모호한 국제지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명명되고 정의되어야 하는지를 참조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이다. 수많은 논란, 잠정적 합의, 최종적 합의, 바다 명칭의 변화 등 다양한 사례를 담고 있는 세계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IHO S-23은 일반적인 표준지명의 논의와는 다른 사례들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나 지역 내에서 “지명의 표준화”라는 용어는 경합하는 여러 지명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IHO S-23에서는 단일 지명을 고집하지 않았다.

단일명칭을 고수하는 이유는 복잡성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S-23에는 단일명칭보다 훨씬 긴 바다 명칭이 사용되어 왔고, 제4판 초안에서도 사용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IHO S-23이 추구해온 것은 단순성이 아니라 바다 명칭의 호환성과 포용성에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V. 동해 표기 관련 일본의 주장 비판

동해 명칭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주장은 ① 기본적인 견해, ② 일본해 호칭문제 개요, ③ 근거 없는 한국의 주장, ④ 일본의 반론, ⑤ 유엔, 미국도 일본해 사용, ⑥ 세계 각국의 고지도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① 기본적인 견해와 ② 일본해 호칭문제 개요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과 문제점

동해 명칭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기본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일본해는 일본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입니다. 일본은 일본해의 호칭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박할 것이며, 일본해의 단일호칭을 앞으로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본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유엔을 비롯하여 많은 국제기구에 의하여 인정된 것입니다.”<sup>19</sup>

(日本海は日本海に対する国際的に確立した唯一の呼称です。我が国は日本海の呼称に対する根拠のない主張に断固反駁するとともに、日本海の単一呼称を引き続き確保していくため、国際社会に対し、本件問題に対する正しい理解と我が国への支持を求めてきています。このようなわが国の主張は、国際社会において、国連をはじめとする多くの国際機関によって認められています。)<sup>20</sup>

그 주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다. “The name ‘Sea of Japan’ is the only internationally established name for the sea area concerned.”

나. (한국과 북한의) 일본해 호칭에 관한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19 일본 외무성, 「일본해 호칭문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 [http://www.kr.emb-japan.go.jp/major\\_policies/maritime/index.html](http://www.kr.emb-japan.go.jp/major_policies/maritime/index.html) (2018.9.7. 검색)

20 日本 外務省, 「日本海 呼称問題」, [https://www.mofa.go.jp/mofaj/area/nihonkai\\_k/index.html](https://www.mofa.go.jp/mofaj/area/nihonkai_k/index.html) (2018.9.7. 검색)

다. ‘가’와 ‘나’의 주장에 대해서 유엔 등 국제기구가 인정했다.

### 1)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지명이 아니다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다”라는 주장은 한국과 북  
한 등 관련국의 문제제기만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이다.

#### (1) 국제적으로 확립된 지명이란 용어는 없다

IHO S-23의 성립과 개정과정은 합의 또는 병기가 원칙이다. 2개 국가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에 대한 지명은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병기해 온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판부터 제4판 초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  
태의 병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IHO의 기술결의 A4.2.6을 통해서 명확  
히 천명한 바가 있다.

2012년 제10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의장이 일본 대표단에게 국제  
지명(international name)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하자 일본은 어떤 바다에 대한  
지명은 존재하는 언어만큼 많지만 IHO는 통일성과 항해의 편의 그리고 해  
상안전을 위해 하나의 국제지명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  
다.<sup>21</sup>

앞서 IHO S-23의 다양한 병기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IHO가 “일본해”  
와 같은 단일한 국제지명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일본이 만들어낸 허구이다.

여기서 일본은 IHO를 내세워 하나의 국제지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IHO의 공식적인 바다 명칭은 다양한 병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  
지 않았다. 의장을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을 기만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IHO S-23에는 다양한 병기형 명칭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병기된 이

21 주성재, 2012, 「동해 표기의 최근 논의 동향과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47(6), 879  
쪽; United Nations, 2012, “Ten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E/CONF.101/144)”, p.21~22.

름들은 모두 IHO의 공식 바다 명칭이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란 일본이 IHO S-23 관련 국제지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 (2) 강압적 지명의 강요

일본이 동해에 대해 일본해(Sea of Japan)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공유하는 지형에 대해서, 관련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하나의 명칭만을 강요하는 것은 정복지나 식민지의 지배를 위해 강압적으로 특정 지명의 사용을 강요하는 태도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전국의 지명을 고의적으로 개명하였다. 서울의 명례방(明禮坊)을 명치정(明治町)으로, 밀양시와 울주군 경계의 천왕산(天王山)을 천황산(天皇山)으로, 강원도 가리왕산(加里王山)의 王을 旺으로 바꾸는 등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명들을 일본식으로 바꾼 전력이 있다. 개별 지명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을 구실로 수많은 지명을 말살하고, 생소한 수많은 지명을 만들어냈다. 지명을 통해 땅과 역사를 단절시키고, 강압적 통치를 실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 2) 동해 표기 요구는 당사국의 권리

“일본해 호칭에 관한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국가 간에 공유하는 지형에 대한 지명과 관련하여 역사적, 지리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여러 나라와 관련된 지형에 대한 지명에서 관련된 나라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이름에 대해 협의하거나 병기해야 한다는 것이 IHO S-23의 병기 사례에 나타나 있다.

동해 표기에 대한 남북한의 주장은 당연한 권리이다. 국제사회에서 그 권리를 방해하려는 것은 제국주의의 관점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 3) 유엔 등 국제기구의 동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 (1) 사무국의 관행과 국제기구의 동의를 혼동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유엔 등 국제기구가 인정했다”는 것은 어떤 국제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Sea of Japan’ 사용에 대해 의제로 논의한 바가 없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동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국제기구가 일본해 사용을 인정한 경우는 없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외교부 동해 명칭에 잘 설명되어 있다.<sup>22</sup>

-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자료 등을 통해 유엔이 ‘일본해’ 표기를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엔이 아니라 유엔사무국으로, 사무국의 ‘일본해’ 표기 사용은 192개 유엔 회원국의 입장과는 무관한 사무국의 편의적 관행에 불과합니다.
- 또한 유엔사무국은 ‘분쟁지명에 대한 양자간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사무국 내부의 관행에 의거, ‘일본해’ 단독 표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행은 사무국 내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편의적인 관행일 뿐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사무국은 이러한 관행이 관련국간의 분쟁에 있어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분쟁당사국 일방의 입장 강화를 위해 원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본의 주장은 유엔사무국의 관행을 오용한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일본이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면 유엔사무국 차원에서 일본해(Sea of Japan)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무국 내부의 편의적 관행을 일본식으로 해석한 것

22 외교부, 「동해 표기의 정당성, 일본의 잘못된 주장」, [http://www.mofa.go.kr/www/wpge/m\\_3838/contents.do\(2018.9.10. 검색\)](http://www.mofa.go.kr/www/wpge/m_3838/contents.do(2018.9.10. 검색))

에 불과하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유엔사무국의 “Sea of Japan” 사용과 관련하여 완전히 중립적 견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난 26년간 IHO S-23 발간 방해 및 폐기 유도

일본이 유일한 공식지명을 제공하는 IHO S-23의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찌면 일본은 가능한 한 IHO S-23이 폐기되기를 바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바다 명칭에 대한 공식문서가 사라진다면 유엔사무국의 2004년 일본해 사용 관행을 이유로 일본해 단독 표기가 계속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일본의 “일본해 호칭문제 개요”의 문제점

일본 외무성의 “일본해 호칭문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본해는 아시아 대륙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열도 및 사할린에 의해 북태평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해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일본해’라는 호칭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유럽에서 우선 확립된 것으로 그 후 200여 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양에서 분리된 해역의 명명 방식에는 해역을 격리하는 주요한 열도호(列島弧)나 반도명과 관련된 것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해’라는 호칭도 이 해역이 존립하기에 불가결한 ‘일본열도’에 의해 북태평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지리적인 형상에 착안한 것이며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널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는 한국 및 북한을 제외한 세계 주요 각국 지도의 97% 이상이 ‘일본해’라는 호칭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널리 국제적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한국 및 북한은 ‘일본해’의 호칭 변경을 돌연 제기하였고 그 이후에도 유엔의 관련 회의와 국제수로기

구(IHO)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차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주장은 ‘일본해’라는 호칭이 일반적으로 된 것은 20세기 초반 일본의 확장주의,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므로 해당 해역의 명칭을 한국 및 북한이 사용하는 ‘동해’로 개칭하거나, 또는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병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및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를 관철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sup>23</sup>

동해 명칭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일본해는 아시아 대륙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열도 및 사할린에 의해 북태평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해역입니다.
2. ‘일본해’라는 명칭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사이에 유럽에서 확립되었다.
3. 200년간 안정적으로 사용되었다.
4. 동해는 일본열도에 의해 태평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해라 하였다.
5. 세계 주요 각국 지도의 97%가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6.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한국과 북한이 일본해 명칭 변경을 돌연 제기했다.
7. ‘일본해’ 명칭이 일반적으로 된 것은 20세기 초 일본의 확장주의, 식민주의의 결과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 1)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로 둘러싸인 바다

“일본해는 아시아 대륙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열도 및 사할린에 의해 북태평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해역입니다.”

23 일본 외무성, 「일본해 호칭문제- 1. 일본해 호칭문제 개요」, [http://www.kr.emb-japan.go.jp/major\\_policies/maritime/outline.html](http://www.kr.emb-japan.go.jp/major_policies/maritime/outline.html)(2018.9.10. 검색)

이러한 정의는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열도에 의해 일본해가 구분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남북한, 러시아 등을 뺐다.

1992년 남북한이 동해 표기를 주장한 이래로 국제적으로 동해는 항상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동해수역은 한국·북한·일본·러시아 4개국에 인접하고 있으며, 특히 동 국가들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해 수역에서 여러 국가가 ‘관할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sup>24</sup>

영문 위키백과에서도 “동해는 일본열도·사할린·한반도·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주변해이다.”라고 하고 있다.

“The Sea of Japan(see below for other names) is a marginal sea between the Japanese archipelago, Sakhalin, the Korean Peninsula and Russia.”<sup>25</sup>

기본적인 지리적 사실에 대한 언급을 누락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왜곡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2) 제국주의적 일본해 명칭 관련 이의제기에 대한 논점 바꾸기

“‘일본해’라는 명칭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사이에 유럽에서 확립되었다”

이 주장은 비논리적이고 비학문적인 주장이다.

24 외교부, 「동해(East Sea) 표기의 정당성, 나. 지명표기 관련 국제규범」, [http://www.mofa.go.kr/www/wpage/m\\_3838/contents.do](http://www.mofa.go.kr/www/wpage/m_3838/contents.do) (2018.9.10. 검색)

25 [https://en.wikipedia.org/wiki/Sea\\_of\\_Japan](https://en.wikipedia.org/wiki/Sea_of_Japan) (2018.9.10. 검색)

먼저 “확립되었다”는 단어보다 “일부에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그리고 지리학적으로 서양에서 일본해를 사용하게 된 것은 불완전한 지리적 지식에 따른 혼동의 결과이다.

일본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라는 시기를 배제하고자 18세기 말 19세기 초라는 시기를 내세웠다. 그 이전 시기 과거 동해의 명칭과 앞으로의 미래 동해 명칭에 대해서, 특정시기의 관점을 가지고 영속성을 주장하는 것이 국제지명에서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일본이 동해와 같은 지명의 병기를 거부하고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제국주의적 지명에 대한 집착을 스스로 천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 3) 서구의 불완전한 지리지식과 지명 혼란

“200년간 안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표현은 “유럽인들의 동해 또는 일본해 지명혼란이 200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한국과 일본의 서양 고지도 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럽의 지도제작자들은 불완전한 지리적 지식과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일본해”, “동해(East Sea)”, “한국해(Sea of Korea)”, 심지어는 “중국해(Sea of China)” 등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지리적 지식도 완전하지 않았고, 지명의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사용된 이름들일 뿐이다.

일본의 주장처럼 말한다면 동해는 유럽인들이 300년 이상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상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동해를 인식한 것은 유럽인들보다 훨씬 이후의 일이다. 유럽의 지도와 임진왜란 이후 한국의 지도를 통해서 비로소 일본은 동해를 인식할 수 있었다.

일본이 동해를 일본 서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일본의 북쪽에 있는 바다인 동해를 일본이 공식적으로

북해라 불렀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본서기』에서 말하는 북해<sup>26</sup>는 동해가 아닌 대마도와 일본 큐슈 사이의 바다인 대한해협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당시 북해에 대한 인식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나 일본의 『행기도(行基圖)』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일본서기』에 언급된 시기에는 『행기도』가 보여주는 대로 바다를 인식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1764년 벨린(Bellin, Jacques Nicolas)의 “일본제국지도(Carte de L'Empire du Japon)”<sup>27</sup>에는 동해 쪽에 ‘한국해(Mer du Corée)’를, 태평양 쪽에는 ‘일본해(Mer du Japon)’를 표기하였다. 이 지도는 전통적인 일본의 행기도 계열의 지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양 일본 지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서양인들의 일본 지형에 대한 향상된 인식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동해가 일본과 관련된 바다라기보다는 한국과 관련된 바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통해서 본 행기도는 서쪽이 동중국해이고 동쪽이 태평양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북쪽 바다는 한국의 바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한국해’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동해의 반대편인 태평양에 ‘일본해’를 표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1700년대에는 유사한 지도에 동해를 “Sea of Korea” 또는 “일본의 북해” 라는 표현이 흔해한다.

26 “... 대답하기를 “의부가라국왕(意富加羅國王)의 아들로 ... 혈문(穴門; 아나토)에 도착했을 때에 ... 그러나 내가 그 사람됨을 살펴보니 틀림없이 왕이 아님을 알고 즉시 다시 돌아왔다. 길을 알지 못해서 섬과 포구에 계속 머물렀다. 북해로부터 돌아와 출운국(出雲國; 이즈모)을 거쳐 여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 『일본서기』 卷第六 수인천황(垂仁天皇) 2년. 동북아역사넷, 일본서기, [http://contents.nahf.or.kr/search/itemResult.do?levelId=ns,d\\_0013\\_0030\\_0030\\_0010&setId=722118&position=4](http://contents.nahf.or.kr/search/itemResult.do?levelId=ns,d_0013_0030_0030_0010&setId=722118&position=4)

27 Jacques Nicolas Bellin, 1764, “Carte de L'Empire du Japon”, *Le Petit Atlas Maritime Recueil De Cartes et Plans Des Quatre Parties Du Monde*, <http://www.davidrumse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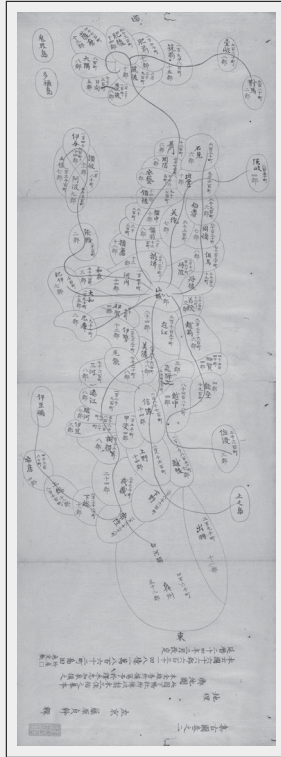


〈그림 2〉 류코쿠대 소장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부분



〈그림 3〉 Bellin(1764)의 일본제국지도(Carte de L'Empire du Japon)

출처 : [www.davidrumsey.com](http://www.davidrumsey.com).



〈그림 4〉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집고도(集古圖)』(834-4) 내 「연력 여지도」

#### 4) 동해는 동중국해, 오호츠크해, 태평양과 구분

“동해는 일본열도에 의해 태평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해라 하였다.”라는 것은 상상력에 의존한 허구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동해는 한반도·일본열도·러시아로 둘러싸인 바다이다.

한반도를 기준으로 서해·남해·동해가 구분된다. IHO 23에 따르면 동해는 대한해협을 통해 동중국해와 연결된다. 따라서 한반도에 의해서 동중국해와 구분된다. 그리고 타타르해협과 라페루즈해협을 통해 오호츠크해와 연결된다. 따라서 사할린섬과 북해도에 의해 동해와 오호츠크해가 구분된다.

일본은 지리적 사실을 발췌하여 한반도나 러시아의 존재를 무시하고 사 이비 지리학적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열도에 의해서만 동해가 구분 된다고 하는 주장은 지리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 5) 통계적 거짓말, 세계 주요 각국 지도의 97%

이것은 초보적인 통계적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모집단을 특정할 수 없어서 퍼센트를 낼 수 없는 경우임에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모집단을 조정하여 이런 결과를 주장하였다. 일반 광고에서도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는다.

지명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명 사용자들의 문제이다. 현실에서 지명의 표준화란 일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지형에 대해서 동일한 명칭을 부여하여 소통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정 지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존재하고 동일한 지형에 대해 다른 지명을 사용하는 집단이 존재할 때 복수의 지명이 각 집단의 표준지명으로 공존하게 된다.

동해 표기 문제는 통계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내세우고 있다. 동해와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들이 어떤 이름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IHO S-23의 개정을 통해 동해 병기가 실현되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알래스카주 우트키오야비크(Utqiagvik)는 대부분의 사전과 지도에 배로(Barrow, Utqiagvik)로 표기되어 있다.<sup>28</sup>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2016년 투표를 통해 이전까지 공식지명이었던 배로 대신에 토착지명인 우트키오야비크로 도시명을 변경하였다.<sup>29</sup>

따라서 통계적 수치는 지명결정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가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28 구글지도. <https://www.google.co.kr/maps/@68,3223411,-156,7253646,5,61z?hl=ko> (2018.12.5. 검색);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B%B0%B0%EB%A1%9C\\_\(%EC%95%8C%EB%9E%98%EC%8A%A4%EC%B9%B4%EC%A3%BC\)](https://ko.wikipedia.org/wiki/%EB%B0%B0%EB%A1%9C_(%EC%95%8C%EB%9E%98%EC%8A%A4%EC%B9%B4%EC%A3%BC)) (2018.12.5. 검색)

29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Utqiagvik\\_Alaska](https://en.wikipedia.org/wiki/Utqiagvik_Alaska) (2018.12.5. 검색)

## 6) 1992년 한국과 북한의 동해 표기 요구는 당연한 권리행사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한국과 북한이 일본해 명칭 변경을 돌연 제기했다”

권리를 가진 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남북한은 유엔의 비회원국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 회원국으로서 참여할 수 없었다.

나아가 1992년 동해 표기 주장을 돌연 제기했다는 것은 일본의 착각이다. 한일 간에는 이미 1965년 한일어업협정 부속서의 동해와 관련해서 서로 이견이 노출되어, 각국의 협정문에는 동해와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한 바가 있다.<sup>30</sup>

대한민국의 법령 내용을 어업협정문에 담은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동해”로 표기해야 하는데, 일본이 이의를 제기하고 일본의 협정문에는 “일본해(日本海)”로 표기하였다.

외교부는 1965년 한국은 일본과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동해 지명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사실 등 지속적인 활동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6·25 전쟁 이후 국가를 재건하면서 우리는 ‘동해’ 표기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가령 1965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 당시 한·일 양국은 해역의 이름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동해’와 ‘일본해’를 자국어판 협정문에 각각 별도로 사용키로 결정한 적이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동해 지명을 되찾기 위한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30 “대한민국이 동해에서 인정하고 있는 60톤 미만의 어선에 의한 새우 저인망 어업을 제외함”.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http://www.law.go.kr/trtySc.do?tabMenuId=tab64&query=%EB%8C%80%ED%95%9C%EB%AF%BC%EA%B5%AD%EA%B3%BC+%EC%9D%BC%EB%B3%B8%EA%B5%AD+%EA%B0%84%EC%9D%98+%EC%96%B4%EC%97%85#licTrty3660> (2018.12.5. 검색)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정부는 199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이후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처음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국제회의에서 공식 제기하게 되었습니다.<sup>31</sup>

한국전쟁과 냉전시대를 겪으면서 남북한은 국제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대립하였다. 냉전의 종식으로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 하였고, 첫 번째 맞는 1992년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SGN)에서 동해 표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동해 표기 요구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시정 요구이다. 일본은 한국과 북한이 돌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서 동해 표기 요구에 대해서 호도하고 있다. 동해 표기 요구에 대해 합의를 못한다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것이 일본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동해 표기 또는 동해 병기에 대해 남북한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일본이 당연히 수용해야 할 동해 병기를 막기 위해 IHO S-23의 발간까지 방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02년 초안이 마련된 IHO S-23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간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서 발간 지연의 책임이 남북한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 7) 일본식 지명 개정과 창씨개명을 강제한 20세기 일본제국주의

‘일본해’ 명칭이 일반적으로 된 것은 20세기 초 일본의 확장주의, 식민주의의 결과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일본 제국주의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명개정을 통해 땅과 결부된 사회적 지속성을 파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창씨개명을 강제함으로써 개인

31 외교부, 「동해 표기의 정당성, 가. '동해' 표기의 역사적 배경」, [http://www.mofa.go.kr/www/wpge/m\\_3838/contents.do](http://www.mofa.go.kr/www/wpge/m_3838/contents.do) (2018.9.10. 검색)

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파괴하고자 하였다.

지명과 이름에 집착하는 일본제국주의의 특성은 일본해(Sea of Japan)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지난 27년간의 일본의 동해 표기에 대해 잘못된 논거를 바탕으로 반대하고, IHO S-23 4판의 발간을 방해해온 행태가 반증한다. 여전히 확장주의 식민주의의 국가주의적 관점에 매몰된 사고가 동해 표기를 방해하는 외교적 행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해라는 이름이 일본제국주의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도외시하고,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미화에만 힘쓰는 잘못된 일본식 사고일 뿐이다.

## VI. 결론

IHO와 회원국들은 IHO S-23을 통해 공식적인 바다 명칭을 제시함으로써 해도 및 수로지 사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HO S-23은 최근 국가별로 진행되는 지명표준화 과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식적인 바다 명칭을 만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다양한 형태로 이질적인 지명을 병기하는 것이다.

동해 병기는 바로 이러한 IHO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병기하면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 IHO S-23 제4판에 동해가 병기되면, 국제기구는 IHO S-23 병기에 따라 동해지명 표기와 관련된 모든 곳에 병기된 명칭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각국의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한국·북한·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생각할 때 어느 한쪽을 단독 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국과 북한, 일본은 병기된 명칭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단독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동해 표기를 둘러싼 일본의 비이성적인 주장이나 행태를 보면,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의식이 매우 편향되고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마찬가지로 동해 표기 관련 주장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

식과 논리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 동해 표기 문제에 대응할 때에는 일본의 첫 번째 주장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반박할 필요가 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동해 표기 관련 주장은 그럴듯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며, 지명학적 관점에서,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문명과는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신, 2004, 『동해의 경계와 명칭』, 지영사.
- 주성재, 2007, “The Case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ea Nam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Justifying the Name East Sea”, 대한지리학회지 42(5).
- 주성재, 2012, 「동해 표기의 최근 논의 동향과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47(6).
- IHB, 1928, “the World, Limits of Oceans and Seas”(Map).
- IHB, 1953, Limits of oceans and seas, 3rd edition.
- IHO, 2002, Limits of oceans and seas, 4th edition, Final draft.
- IHO, 2005, The History of the Interantional Hydrographic Bureau, second edition.
- IHO, 2010, “Limits of Oceans and Seas(s-23)”, 32/1919 as amended, Resolutions of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Publication M-3, 2nd edition.
- Stoltman, Joseph, 2018, “Dual naming of geographic features”, Proceedings of the 24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 Kadmon, 1997, Toponymy—the Lore, Laws and Language of Geographical Names, Vantage Press.
- National Geographic, 2015, Atlas of the World, 10th edition.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http://www.law.go.kr/trtySc.do?tabMenuId=tab64&query=%EB%8C%80%ED%95%9C%EB%AF%BC%EA%B5%AD%EA%B3%BC+%EC%9D%BC%EB%B3%B8%EA%B5%AD+%EA%B0%84%EC%9D%98+%EC%96%B4%EC%97%85#licTrty3660>(2018.12.5. 검색).
- 외교부, 「동해 표기의 정당성, 일본의 잘못된 주장」, [http://www.mofa.go.kr/www/wpge/m\\_3838/contents.do](http://www.mofa.go.kr/www/wpge/m_3838/contents.do).
- 龍谷大,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http://www.afc.ryukoku.ac.jp/kicho/cont\\_13/1390.html?l=0&q=%E6%B7%B7%E4%B8%25](http://www.afc.ryukoku.ac.jp/kicho/cont_13/1390.html?l=0&q=%E6%B7%B7%E4%B8%25).
- 일본국회도서관, 『集古圖(834-4)』, 「延曆輿地圖」, <http://dl.ndl.go.jp/info:ndljp/pid/2590910>.
- 일본 외무성, 「일본해 호칭문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 <http://www>.

kr.emb-japan.go.jp/major\_policies/maritime/index.html.

日本 外務省, 「日本海 呼称問題」, [https://www.mofa.go.jp/mofaj/area/nihonkai\\_k/index.html](https://www.mofa.go.jp/mofaj/area/nihonkai_k/index.html).

Australia, 2010, “Proposal by Australia to the S-23 Working Group”. [https://www.iho.int/mtg\\_docs/com\\_wg/S-23WG/S-23WG2/Proposals/Proposa\\_by\\_Australia.pdf](https://www.iho.int/mtg_docs/com_wg/S-23WG/S-23WG2/Proposals/Proposa_by_Australia.pdf).

Bellin, 1764, Carte de L'Empire du Japon. <http://www.davidrumsey.com>.

France, 2010, “Proposal by the S-23WG FR delegation”. [https://www.iho.int/mtg\\_docs/com\\_wg/S-23WG/S-23WG2/Proposals/Proposal\\_by\\_France.pdf](https://www.iho.int/mtg_docs/com_wg/S-23WG/S-23WG2/Proposals/Proposal_by_France.pdf).

DPRK, 2010, “DPRK comments on proposals”. [https://www.iho.int/mtg\\_docs/com\\_wg/S-23WG/S-23WG2/Proposals/Comments/DPRK\\_comments\\_on\\_proposals\\_13Aug10.pdf](https://www.iho.int/mtg_docs/com_wg/S-23WG/S-23WG2/Proposals/Comments/DPRK_comments_on_proposals_13Aug10.pdf).

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 Foreign Names Committee, 2014, “Statement Regarding the US Board on Geographic Names’ Decision on the Name ‘Sea of Japan’”. [http://geonames.nga.mil/gns/html/PDFDocs/Sea%20of%20Japan%20Statement\\_Sept14.pdf](http://geonames.nga.mil/gns/html/PDFDocs/Sea%20of%20Japan%20Statement_Sept14.pdf).

## 국문초록

1992년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에서 남북한이 동해 표기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일본은 일본해 단독표기를 고집하면서, 정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해 단독표기를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IHO S-23(해양과 바다의 경계)에서 사용하는 바다 명칭의 분석을 통해 일본 주장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IHO는 항해와 관련된 기술적 분야의 표준화를 추구한다. 해양지명에 있어서도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공식 해양지명을 만들어 이용해왔다. IHO는 여러 국가와 관련된 해양의 명칭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복수의 지명을 병기해왔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IHO에서 동해와 일본해 병기 문제를 논의하는 회원국 전문가들도 동해병기에 우호적이다.

일본은 IHO의 오랜 회원국으로서 IHO S-23의 도입 목적과 정신을 되돌아보고, 동해/일본해 병기의 타당성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동해, 일본해, 명칭병기, IHO S-23

## ABSTRACT

A Critical Study of the Japanese Argument on the naming of East Sea

Paik In-ky  
(Korea Maritime Institute)

At the 6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1992), both South and North Korea raised the issue of the name on the East Sea. Since then, Japan has insisted on the exclusive use of the name “Sea of Japan”.

This study attempts to criticize the problem of Japanese claims by analyzing the names of the oceans and seas used in IHO S-23.

The IHO seeks standardization in the technical fields related to navigation. IHO arranged official maritime names for the convenience of navigators and other users. In IHO S-23, multiple names have been allowed to be used in various types for bodies of water and maritime features that contain area beyond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a single nation. According to this tradition, experts from IHO member countries discussing the issue of the East Sea and the Sea of Japan at IHO tended to take a favorable position of multiple naming.

As an important member of the IHO, Japan is required to look back on the purpose and spirit of the IHO S-23, and to actively review the multiple naming of the “East Sea/ Sea of Japan”.

Keywords

East Sea, Sea of Japan, Multiple naming, IHO S-23



# 울진 대풍헌 현판 영세불망지판류 (永世不忘之板類) 자료의 해제 및 번역

해제 및 교열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탈초 및 번역 **정명수**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 1. 울진 대풍헌에 걸린 영세불망지판류(永世不忘之板類) 자료에 관하여

대풍헌(待風軒)은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관(搜討官)이 수토군(搜討軍)을 이끌고 울릉도로 출항하기 위하여 순풍을 기다리던 건물의 이름이다.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에 있다. 대풍헌 소장 자료 중 「완문」(完文)과 「수토절목」(搜討節目) 등 고문서는 『영토해양연구』 16호(2018)에 해제와 번역문을 게재하였고, 상량기문(上樑記文)과 현판 중 기문류(記文類) 자료는 『영토해양연구』 17호(2019)에 해제와 번역문을 게재하였다.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현판 중 영세불망지판류(永世不忘之板類) 6점이다. 6점은 다음과 같다.

\* 이 해제와 교열은 동북아역사재단 울릉도·독도·동해 관련 한일 고사로 총집 연구(NAHF-2019-기획연구-1)의 일환으로 수행됨.

표1. 영세불망지판 현황<sup>1)</sup>

번호	현판 명칭	제작 시기	찬자
①	平海郡守沈能武李琬翁永世不忘之板	1870년(고종 7) 7월	
②	越松萬戶張源翼永世不忘之板	1870년 7월	朴齊恩(記)
③	平海郡守李容益永世不忘之板	1871년(고종 8) 4월	
④	越松營將黃公永世不忘之板	1872년(고종 9) 8월	方五(撰) 金洙謨(書)
⑤	銓任孫周衡孫沫栢孫益彰永世不忘之板	1878년(고종 15) 11월	方五(記)
⑥	都監朴億伊永世不忘之板	1878년 11월	方五(書)

기문류(記文類)와 영세불망지판류(永世不忘之板類)로 나눈 것은 현판 자료의 분량을 적절히 나누어 논문집에 게재하기 위하여 편의상 나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영세불망지판’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현판 제목들은 현판에 원래 새겨진 것이 아니고, 2012년 문화재 등록을 위하여 울진군에서 명칭을 새로 붙인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당시에 ‘영세불망지판(永世不忘之板)’이라는 용어는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아래에서 소개할 ‘월송만호장원익영세불망지판(越松萬戶張源翼永世不忘之板)’의 경우 그 기문 안에 ‘전만호장공원익영세불망지판(前萬戶張公源翼永世不忘之板)’이라는 명칭이 나온다. 이 글에서는 간편하게 지칭하기 위하여 기왕에 만들어 붙여진 현판 제목을 사용한다.

이 여섯 개의 현판은 대풍헌에 걸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울릉도 수토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평해군수심능무이윤흡영세불망지판(平海郡守沈能武李琬翁永世不忘之板)은 평해군수를 지낸 심능무(沈能武)와 이윤흡(李琬翁)이 구산동(邱山洞)에 울릉도(蔚陵島) 수토(搜討)를 위한 경비를 보태준 일에 대하여 그 공을 기리는 현판이다. 기문에는 “병인년(1866, 고종3)에 심능무(沈能武)공(公)이 수령으로 부임한 후에 본동의 형편을 애석하게 여겨, 70금(金)을 내어 당년의 수토할 때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였다. 『승정원일기』에 따르

1 이 표는 심현용 박사가 작성한 “대풍헌 현판 현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심현용, 2015, 「울진 대풍헌의 울릉도·독도 수토 자료와 그 역사적 의미」, 영남대 독도연구소 편, 『울진 대풍헌과 조선시대 울릉도·독도의 수토사』, 선인, 200~201쪽 참고.

면, 심능무는 1865년 3월 8일 평해군수에 임명되었고,<sup>2</sup> 1867년 2월에 부친상을 당하여 관직을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sup>3</sup> 여기서 말한 “당년의 수토”는 1867년의 수토일 가능성이 크다. 1866년은 수토가 없는 해이고, 1867년 봄에 월송만호 장원익의 수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능무가 군수로 부임한 것은 1865년이지만, 구산동에 수토 비용을 보태준 것은 1866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가 1867년 2월에 평해군수에서 물러나 떠나기 때문이다. 또 이윤흡(李琬翁)은 1867년 2월 17일 평해군수에 임명된다. 그런데 1868년 7월 8일 이용익(李容益)이 평해군수에 임명되기 때문에 이 무렵 이윤흡이 평해군수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sup>4</sup> 따라서 무진년(1868, 고종5)에 수토 비용을 보태준 것이다.

② 월송만호장원익영세불망지판(越松萬戶張源翼永世不忘之板)은 1867년 울릉도를 수토한 월송만호 장원익이 무진년(1868, 고종5)에 대풍헌이 있는 구산동에 20금(金)을 보내 수토 비용에 보태도록 한 것을 칭송한 현판이다. 구산동은 그 돈을 ‘수토보용전(搜討補用錢)’이라고 이름하였으며, 현판은 ‘전 만호장원익공을 영원토록 잊지 못하는 현판[前萬戶張公源翼永世不忘之板]’이라고 이름하였다. 현재 이 현판을 ‘월송만호장원익영세불망지판(越松萬戶張源翼永世不忘之板)’이라고 칭한 것은 문화재 등록시에 정하였기 때문인데, 기문 내용 속에 있는 이름 ‘전만호장공원익영세불망지판(前萬戶張公源翼永世不忘之板)’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③ 평해군수이용익영세불망지판(平海郡守李容益永世不忘之板)은 1868년 7월

2 『승정원일기』고종 2년(1865) 3월 8일.

3 『승정원일기』고종 4년(1867) 2월 16일 “강원감사 조석여의 장계에 ‘평해군수 심능무가 부친상을 당했다’고 하자, (임금이) 전교하기를 ‘해당 조로 하여금 구전으로 (평해군수를) 차출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내라’고 하였다.”(『승정원일기』고종 4년(1867) 2월 16일)

4 이윤흡(李琬翁) : 고종 4년(1867) 2월 17일에 “이조(吏曹)의 구전정사(口傳政事)로 이윤흡을 평해군수로 삼았다.”고 하였다.(『승정원일기』고종 4년(1867) 2월 17일) 그리고 고종 5년(1868) 7월 8일 “이용익을 평해군수로 삼았다.”(『승정원일기』고종 5년(1868) 7월 8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즈음 이윤흡이 평해군수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에 평해군수로 부임한 이용익(李容益)<sup>5</sup>이 구산동에 100금(金)을 내어 수토 비용에 보태 사용하도록 한 공을 칭송한 기문이다.

④ 월송영장황공영세불망지판(越松營將黃公永世不忘之板)은 기사년(1869, 고종 6)에 영찰(營察) 황지해(黃之海)가 구산동에 30금(金)을 주어 수토 비용에 보태 사용하게 한 공을 칭송한 기문이다. 그런데 이 기문에 ‘월송영장황공영세불망지판(越松營將黃公永世不忘之板)’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오류이다. 월송포진에는 만호(萬戶)가 부임하고, 삼척포진에는 영장(營將)이 부임한다. 그리고 영찰(營察)은 영장이 아니다. 영찰(營察)은 원주 감영에 있던 아전 벼슬의 일종이 아닌가 추정된다.<sup>6</sup> 무엇보다 기문에 ‘황영찰지해(黃營察之海)’라는 직명과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황영찰지해영세불망지판(黃營察之海永世不忘之板)’ 또는 ‘영찰황공지해영세불망지판(營察黃公之海永世不忘之板)’으로 칭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된다. 그런데 앞의 평해군수이용익영세불망지판(平海郡守李容益永世不忘之板)에 평해군의 ‘이방(吏房) 황지해(黃之海)’가 나오는데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⑤ 전임손주형손말백손익창영세불망지판(銓任孫周衡孫沫栢孫益彰永世不忘之板)은 울릉도 수토를 위해 구산동에 도움을 준 손씨 3대를 칭송하는 기문이다. 먼저 갑신년(1824, 순조24)에 손주형(孫周衡)이 전임(銓任)<sup>7</sup>으로 있으면서 경내의 소금 상인들에게 거두는 석두세(石頭稅)<sup>8</sup>를 모두 구산동(邱山洞)에 주어 보태어 쓰게 하였고, 기유년(1849, 현종15)에 손주형의 족질(族姪) 손종간(孫宗侃)이 또한 전임(銓任)으로 있으면서 전소(銓所)<sup>9</sup>에 공납하던 소금 1섬을 영원히 견감시켜 주었으며, 지금은 손자 손수백(孫洙栢)이 그 뜻을 계승하여 일파

5 이용익(李容益) : 고종 5년(1868) 7월 8일, “이용익을 평해군수로 삼았다.”고 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5년(1868) 7월 8일〕 고종 8년(1871) 6월 1일 “이용익을 다대포첨사로 삼았다.”고 하여 평해군수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승정원일기』 8년(1871) 6월 1일〕

6 참고로 『하재일기(荷齋日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11일 맑음... 원주(原州)로 내려가는 사람을 만나 편지를 써서 영(廉) 영찰(營察)에게 보냈다.”〔하재일기(荷齋日記), 1 (1) 신묘년(1891) 1월〕

7 전임(銓任) : 이방(吏房)을 지칭하는 말로 생각됨.

8 석두세(石頭稅) : 소금 가마니(石頭)에 매기는 세금으로 보임.

9 전소(銓所) : 이방(吏房)이 근무하던 작청(作廳)을 지칭하는 말로 보임.

다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문의 명칭과 관련하여, ‘전임손주형손말백손익창영세불망지판(銓任孫周衡孫沫栢孫益彰永世不忘之板)’에서 ‘익창(益彰)’은 기문에서 ‘더욱 빛나다’라는 뜻의 서술어로 사용되었지 이름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임(銓任) 손주형(孫周衡)의 공덕을 칭송한 것이며 후손들은 그의 공덕을 더 빛내기 위해 거론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문의 명칭은 “전임손공주형영세불망지판(銓任孫公周衡永世不忘之板)”으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된다. 이 기문에는 “울릉도(鬱陵島)를 1년의 간격을 두고 2년마다 수토”한다는 수토 주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수토를 위해 상인들에게 석두세를 거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⑥ 도감박억이영세불망지판(都監朴億伊永世不忘之板)은 병자년(1876, 고종13)과 정축년(1877)에 농사와 고기잡이 모두 흉년이 들었고, 마을의 체납된 조세가 산처럼 많아졌는데 같은 마을의 도감(都監) 박억이(朴億伊)가 자신의 5두(斗) 논을 팔아 구산동의 공납을 전부 충당한 공로를 칭송한 기문이다. 이 현판은 울릉도 수토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구산동이 수토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마을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도감(都監)은 마을의 세금을 거둬 납부하는 역할을 맡은 동직(洞職)으로 추정된다.

제2장에는 한문 원문과 한글 번역문을 싣고, 제3장에는 현판 사진을 싣는다. 현판 사진은 모두 울진군청 학예연구사 심현용 박사가 제공한 것이다.

## II. 영세불망지판류의 원문과 번역문

### ① 「평해군수심능무이윤흠영세불망지판」

「平海郡守沈能武李玠翁永世不忘之板」

古昔賢侯之惠於民澤於民者，凡幾，而孰如沈等李等兩侯之惠澤者乎。惟我洞在郡北十里，背山臨海，村落櫛比，一境居最矣。奈之何陟營·越嶺之

間三年搜討於蔚島也. 待風於本洞, 未知創自何時, 而供億之費, 每每不少, 洞樣漸致蕭條, 倒懸之勢, 莫之能解矣. 何幸丙寅沈公能武下車後, 深軫本洞事勢, 捐出七十金, 以補當年搜討時所費, 洞民息肩. 又於戊辰李公琬翁, 特憐本洞之竟無措處, 劃給權卜十五結于本洞, 使之放賣以搜補討年冗費, 空年所賣者, 亦使取殖而次次添補, 則今或如之, 來年如之, 無限將來, 錢可滋長, 洞可蘇醒矣. 原來權卜者, 烟司柴艸之從結役, 入用於官廩者也, 而名以權卜, 防賣於差役, 則十五結一年所賣價, 爲三十金矣. 捐廩而防弊, 付洞而生殖, 則卜與錢殊, 人莫敢接嘴犯手, 與洞終始, 猗歎豈哉, 孰非民也, 本洞候風所, 而偏苦倍他. 孰非侯也, 兩等傾月廩, 而措劃裕後. 其惠其澤, 山可并峙, 海與俱深, 奚但碑口於當時, 宜可銘肺於後世. 遂梓以記之, 永矢不諼也.

上之七年庚午七月日.

前尊位 李景厚、金光鍊、安大哲、安景祚、金正郁、金錫鍊

時尊位 金相郁

洞首 金守億

有司 李在秀

「평해군수심능무이윤흡영세불망지판」

옛날에 어진 수령 가운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모두 몇이나 되었으며, 그 가운데 누가 심능무(就能武), 이윤흡(李琬翁) 두 수령처럼 은혜를 베풀었겠는가. 우리 구산동(邱山洞)은 평해군(平海郡) 북쪽 십 리에 있고 산을 등지고 바다에 임해 있으며 촌락이 즐비하여, 온 경내에서 풍광이 으뜸을 차지한다.

어찌하여 삼척포영(三陟浦營)<sup>10</sup>과 월송포진(越松浦鎭)<sup>11</sup>은 3년을 간격으로<sup>12</sup>

10 삼척포영(三陟浦營): 강원도 삼척포에 설치된 진영(鎭營).

11 월송포진(越松浦鎭): 조선시대 강원도 평해군 월송포에 설치된 수군진(水軍鎭). 현재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일대.

12 3년을 간격으로: 원문에 '간삼년(間三年: 3년을 간격으로 4년마다)'으로 되어 있다. 울릉도 수도가 실시된 처

울릉도(蔚陵島)를 수도(搜討)하였는가. 본동(本洞)에서 바람을 기다리는 것(待風)이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수도에 필요한 비용이 매년 적지 않아서 구산동의 형편이 점점 적막해지고 거꾸로 매달린 형편에 이르렀으나, 누구도 해결할 방도가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병인년(1866, 고종3)에 심능무(沈能武) 공(公)이 수령으로 부임<sup>13</sup>한 후에 본동의 형편을 애석하게 여겨, 70금(金)을 내어 당년의 수도<sup>14</sup>할 때 비용을 충당하니 동민(洞民)의 어깨가 가벼워졌다. 또 무진년(1868, 고종5)에는 이윤흠(李玠翁)<sup>15</sup>공(公)이 본동이 끝내 이 일을 처리할 방도가 없는 것을 특별히 염려하여, 권복(權卜)<sup>16</sup> 15결(結)을 본동에 떼어 주고 동민들로 하여금 시초(柴草)를 판매하여 수도하는 해에 쓰이는 자살한 비용을 보충토록 했으며, 수도(搜討)가 없는 해에 시초 판매한 것으로 또한 이자를 취하여 차츰차츰 보태게 하였다. 금년에도 이처럼 하고 내년에도 이처럼 한다면 장래에 무한토록 돈이 불어나고 마을이 소생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권복(權卜)이라는 것은 연사(煙司)<sup>17</sup>의 시초(柴草)<sup>18</sup> 가운데 결역(結役)<sup>19</sup>에

음에는 간이년(間二年: 2년을 간격으로 3년 마다) 수도가 원칙이었으나, 영조 후반부터 간년(間年) 또는 간일년(間一年: 1년을 간격으로 2년 마다) 수도로 바뀌었다. 이 당시에는 간일년 수도가 행해졌다.

13 병인년(1866, 고종3)에 심능무(沈能武) 공(公)이 수령으로 부임: 『승정원일기』고종 2년(1865) 3월 8일 기사에 따르면 심능무는 1865년 3월 8일 평해군수에 임명된다. 그리고 『승정원일기』고종 4년(1867) 2월 16일에 “강원감사 조석여의 장계에 ‘평해군수 심능무가 부친상을 당했다’고 하자, (임금이) 전교하기를 ‘해당 조로 하여금 구전으로 (평해군수를) 차출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내라’고 하였다” (以江原監司曹錫與狀啓, 平海郡守沈能武, 遭父喪事, 傳曰, 令該曹口傳差出, 催促下送)라고 하여, 심능무를 대신할 수령을 차출하는 기사가 보인다.

14 당년의 수도: 현판의 기록대로 심능무가 1866년에 부임하였다면 1866년은 수도가 없던 해이므로, 당년은 1867년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1867년에는 월송만호 장원익이 울릉도를 수도하였다. 장원익의 공을 기려 구산동에서는 대풍헌에 「월송만호장원익영세불망지판」을 걸었다.

15 이윤흠(李玠翁): 『승정원일기』고종 4년(1867) 2월 17일 “이조(吏曹)의 구전정사(口傳政事)로 이윤흠을 평해군수로 삼았다.” (吏曹口傳政事, 以李玠翁爲平海郡守.)

16 권복(權卜):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민결(民結)에 전세(田稅)를 임시로 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17 연사(煙司): 봉화대를 맡은 부서로 보인다.

18 시초(柴草): 땔나무로 쓰는 마른 풀.

19 결역(結役): 조선 후기에 토지에 부과되었던 역(役), 부가세의 일종으로 정식 세금인 전세(田稅), 대동미(大同米), 삼수미(三手米), 결전(結錢) 이외로 지방의 여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던 세금이다. 원래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여 대동미란 명목으로 토지에서 결(結) 당 12두(斗)를 거두어 백성에게서 일체의 요역(徭役)을 면제하고, 대동미 중의 일부를 유치미(留置米)란 명목으로 지방에 남겨 두어 지방의 경비에 이용하도록 하였

따라 관아 창고에 넣어두고 쓰는 것이다. 권복이라고 명목을 붙이고 차역(差役)<sup>20</sup>에게 방매(防賣)<sup>21</sup>하면 15결의 일 년 판매 가격이 30금(金)이 된다. 이것을 관아 창고에서 출연(出捐)하여 폐단을 막고, 구산동에 맡겨 이자를 불리게 하였다. 권복은 돈과 현저하게 달라서 감히 입에 대거나 손대는 사람이 없고 구산동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되었으니 이름답고 훌륭하도다!

누가 백성이 아니겠는가마는 후풍소(候風所)<sup>22</sup>가 본동(本洞)에 있기에 고통이 다른 곳보다 배나 심하였다. 누가 수령이 아니겠는가마는 두 수령은 모두 월봉을 털고(권복을) 떼어주는 조치를 취하여 뒷세대를 넉넉하게 해주었다. 그 혜택이 산처럼 높고 바다 같이 깊으니, 어찌 당대의 칭송에서 그치겠는가. 마땅히 후대인의 가슴 속에도 새겨야 할 것이다. 마침내 현판에 기문을 새겨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한다.

금상 7년(1870, 고종7) 경오(庚午)년 7월 모일에.

전준위 이경후·김광련·안대철·안경조·김정육·김석련, 시준위 김상욱,  
동수 김수억, 유사 이재수.

## ② 「월송만호장원익영세불망지판」

「越松萬戶張源翼永世不忘之板」

聖上三年丙寅, 原營人張公源翼, 以搜討官來, 守越松. 議者以爲蔚島千里, 水路艱險, 公曰, “國事而登舟, 何異於安如齋閣.” 明年丁卯, 行次茲洞, 詢于民曰, “譯官而留, 沙格而餽, 費汝之洞乎.” 民曰, “邛津之爲待風所, 果自何昔而無, 於式年, 增竈炊爨, 倍戶收錢, 孤兒分其苦, 匹婦出其斂, 民之爲

다. 원칙적으로는 백성에게 잡역(雜役)을 거두는 관행은 없어져야 했으나, 지방에서는 불시의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지방관이 적절히 여러 비용을 부과하였는데, 토지 결수(結數)를 기준으로 지방민에게 징수하기 시작하여 결역(結役)이란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

20 차역(差役) : 성인 남정(男丁)을 각종 공역(公役)에 차출하거나 이들이 차출되는 일을 말한다.

21 방매(防賣) : 방납(防納)을 위한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뜻함.

22 후풍소(候風所) : 수도관이 수도군을 거느리고 울릉도로 출항하기 위하여 순풍이 부는지 살피는 곳. 곧 순풍을 기다리는 대풍헌(待風軒).

瘼, 大略如此焉.” 公聞甚惻然, 迺於是日遂啓發, 蓋其急於國, 故速於民也. 翌年戊辰, 公以二十金來之于洞曰, “投河之醪, 不能味汝之衆, 而若有少補於用, 則庶可滋味之及汝耶.” 衆皆頌德. 不即用之于當日, 而兩年生息, 又得數十金矣. 若使繼此, 而久遠贏餘, 則民之用, 何患乎無補, 而公之德, 亦何患乎微而泯哉. 以其有補於搜討, 故名其錢曰, ‘搜討補用錢’, 又其不泯乎厚德, 故榜其梓曰, ‘前萬戶張公源翼永世不忘之板’云.

庚午七月上澣, 土人朴齊恩記.

前尊位 李景厚·金光鍊·安大哲·安景祚·金正郁·金錫鍊

時尊位 金相郁

洞首 金守億

有司 李在秀

「월송만호장원익영세불망지판」

금상(今上) 3년 병인년(1866, 고종3)에 원영(原營)<sup>23</sup> 사람인 장원익(張源翼)<sup>24</sup> 공이 수토관(搜討官)으로 와서 월송(越松)을 지키게 되었다. 논의하는 자들이 울릉도(蔚陵島)는 천리이고 뱃길도 어렵고 위험스럽다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나랏일로 배를 타는 것이 관아에 편안히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듬해 정묘년(1867, 고종4)에 구산동(邱山洞)에 행차하여 동민(洞民)에게 물기를 “역관(譯官)을 머물게 하고 사격(沙格)<sup>25</sup>을 대접하는 데, 너희 동(洞)에서 비용을 대는가?” 하였다. 동민이 대답하기를, “구산진(邱山津)<sup>26</sup>에서 대풍소(待風所)<sup>27</sup>를 운용한 것이 어느 옛날인들 없었겠습니까마는 식년

23 원영(原營) : 강원 감영이 원주에 있었기 때문에 원주 감영 혹은 줄여서 원영(原營)이라고 함.

24 장원익(張源翼) : 『승정원일기』고종 3년(1866) 12월 20일 “장원익(張源翼)을 월송만호(越松萬戶)로 삼았다.”

25 사격(沙格) :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 사공(沙工)과 결꾼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26 구산진(邱山津) : 지금의 구산항으로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에 위치한 항구이다.

27 대풍소(待風所) : 수토관이 수토군을 거느리고 울릉도로 출항하기 위하여 순풍을 기다리는 곳. 대풍헌(待風軒)을 말함.

(式年)<sup>28</sup>에 부뚜막을 늘려 밥을 지어야 하니, 호구(戶口)를 배로 불러 돈을 거두느라 고아에게 고통을 분담시키고 아녀자에게 세금을 내게 합니다.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대략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공이 듣고 매우 측은하게 여겨 그날로 바로 장계를 띄웠으니[啓發]<sup>29</sup>, 아마도 나랏일과 백성을 급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해 무진년(1868, 고종5)에 공이 20금(金)을 구산동에 보내면서 “강물에 던진 술<sup>30</sup>이라 너희들에게 맛보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쓰임에 보탬이 된다면 아마도 그 혜택이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고 하자, 못 사람이 모두 그의 덕을 칭송하였다. 그날에 바로 쓰지 않고 2년 동안 이자가 늘어서 또 한 수십 금이 되었다. 만약 이대로 계속되어 오래도록 재화가 남아있다면 어찌 백성들의 쓰임에 보탬이 없을까 걱정하겠으며, 공의 덕행이 또한 어찌 사라질까 걱정하겠는가. 그것이 수토(搜討)에 보탬이 있었기에 그 돈을 ‘수토보용전(搜討補用錢)’이라고 이름하고, 또한 그의 두터운 덕행도 민멸되지 않을 것이기에 판각(板刻)한 글로 편액(扁額)을 거니, 곧 ‘전 만호 장원의 공을 영원토록 잊지 못하는 현판(前萬戶張公源翼永世不忘之板)’이다.

경오(庚午, 1870, 고종7)년 7월 상순(上旬)에, 사인(士人) 박제은이 짓다.

전존위 이경후·김광련·안대철·안경조·김정욱·김석련, 시존위 김상욱, 동수 김수억, 유사 이재수.

### ③ 「평해군수이용익영세불망지판」

「平海郡守李容益永世不忘之板」

夫捐廩救瘼, 明府之善政, 銘心不忘, 吾民之感頌也, 惟茲邱山津, 卽鬱陵島

28 식년(式年) : 자(子), 묘(卯), 오(午), 유(酉) 따위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로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 해에 과거를 실시하거나 호적을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3년마다 울릉도를 수토(搜討)하기 때문에 식년이라고 말할 듯하다.

29 장계를 띄웠으니[啓發] : 상부 관청이나 조정에 보고한 일을 가리키는 듯하다.

30 강물에 던진 술 : 월왕(越王) 구천(勾踐)이 오(吳)나라를 치러 갈 때 부모(父老)들이 술을 바치자 그 술을 강물에 부어 병사들이 다 마실 수 있게 하여, 병사들을 감격시키고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그 고사의 원래 의미보다 미미한 액수를 비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搜討時候風所, 而陟營越鎮, 間年行之之時, 浮費浩多, 切有賢勞之歎矣. 今我侯李公諱容益氏, 深用爲憂, 捐出百金, 附之均役所, 存本取利. 以二分五里邊爲之, 每年利條, 分春秋出給本津, 以爲補用之資. 此眞結實之根, 而生稻之田也. 以之而國役共濟, 以之而民瘼更蘇, 惠澤之廣, 不啻若當前碧海, 本利之固, 奚但如在後邱山也. 茲用劊劊揭于洞壁. 凡爲洞民者, 食實而知其根, 飯稻而知其田, 常目銘心, 以爲永世不忘云爾.

同治十年辛未四月日.

時戶長 黃允河

吏房 黃之海

副吏房 孫武英

色吏 孫維燮

前尊位 金相郁·金光鍊·安景祚·金正郁·金成淵

時尊位 安大哲

洞首 李在秀

有司 權在洪·孫度振

都掌務 金璧哲

別掌務 李景淵

原

前洞首 金永業·尹學遜·金允業·權在彥·安萬大·李元業·金在玉·金光鍊·金秉載·金光浩·金泰辰·金正哲·安磐石·朴億伊·權在益

「평해군수이용익영세불망지판」

대체로 창고의 곡식을 풀어서 폐단을 구제하는 것은 현명한 관청의 선정(善政)이요, 마음에 새겨 잊지 않는 것은 우리 백성이 감격하여 은덕을 칭송하기 위함이다. 오직 이 구산진(邱山津)은 울릉도(鬱陵島)를 수토(搜討)할 때에 바람을 살피는 곳(候風所)으로, 삼척포영(三陟浦營)과 월송포진(越松浦鎭)에서 격년으로 수토를 거행할 때마다 불필요한 비용이 너무 많아 모두 고생스러

움을 탄식하였다.

지금 우리 수령(평해 군수) 이용익(李容益)<sup>31</sup> 공이 이 점을 크게 근심하여 100 금(金)을 내어 균역소(均役所)<sup>32</sup>에 주어 원금은 보존하고 이자를 취하게 했다. (그러자 균역소에서) 2푼 5리 정도로 정해서 매년 이자조를 봄가을로 나누어 본진(本津)<sup>33</sup>에 내어주어 비용에 보태는 자산으로 삼았다. 이는 참으로 열매가 맺히는 뿌리요, 곡식이 생산되는 논밭이었다. 그것으로 나라의 역사(役事)를 함께 해결하고 그것으로 백성들이 고통에서 다시 소생하니, 두루 미치는 혜택은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 같을 뿐만이 아니며 원금과 이자의 견고함은 어찌 뒤에 있는 구산(邱山)과 같을 뿐이겠는가. 이에 현판에 새겨 동사(洞舍) 벽에 걸어두니, 동민(洞民)들은 열매를 먹으면 뿌리의 덕을 알고 밥을 먹으면 밭의 덕을 알게 되듯, 항상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길 것이므로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동치(同治) 10년(1871, 고종8), 신미(辛未)년 4월 모일에.

시호장 황윤하, 이방 황지해<sup>34</sup>, 부이방 손무영, 색리 손유섭, 진존위 김상욱·김광련·안경조·김정욱·김성연, 시존위 안대철, 동수 이재수, 유사 권재홍·손도진, 도장무 김벽철, 별장무 이경연. 끝.

전동수 김영업·윤학손·김윤업·권재연·안만대·이원업·김재욱·김광수·김병재·김광호·김태진·김정철·안반석·박억이·권재익.

31 이용익(李容益) : 『승정원일기』 고종 5년(1868) 7월 8일, “이용익을 평해군수로 삼았다.” 또 『승정원일기』 고종 8년(1871) 2월 1일 “전강원감사 조귀하(趙龜夏)가 아뢰길, … 평해군수 이용익은 관청의 무너진 곳을 일일이 수리하고 지붕을 이었으며, 기민을 구제하고 나룻터의 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모두 녹봉을 출연하여 경내를 안정시켰습니다. …” 『승정원일기』 고종 8년(1871) 6월 1일 “이용익을 대대표청사로 삼았다.”

32 균역소(均役所) : 아전들이 근무하는 작청(作廳) 또는 지방 사족들의 향청(鄉廳)을 일컫는 듯함.

33 본진(本津) : 대풍헌이 있는 구산진을 말함.

34 이방 황지해 : 이방(吏房) 황지해(黃之海)는 「월송영장황공영세불망지판(越松營將黃公永世不忘之板)」에 나오는 황영찰지해(黃營察之海·영찰 황지해)와 이름이 같으므로 동일인으로 추정됨.

④ 「월송영장황공영세불망지판」

「越松營將黃公永世不忘之板」

分人以財謂之惠, 沒世不忘謂之思也. 本洞卽間年搜討時待風所, 而應站一番, 動費百金, 以是而財力朽然, 洞樣蕭如. 粵在己巳黃營察之海, 恒垂庇護之澤, 特施出等之惠, 捐三十金而付諸洞. 經一二載, 而演其殖, 洞有食實之利, 人得飲泉之美. 然則食實而不知其本, 可乎. 飲泉而不知其源, 可乎. 人之惠, 可謂實之本泉之源, 既銘於心, 又銘於書, 使后之人另念其實之本泉之源云爾.

同治十一年壬申八月日, 幼學方五撰, 幼學金述謨書.

老斑 金相郁·金光鍊·安大喆·金正郁·金成淵

前洞首 金永業·金允業·權致祥·李元業·金炳在·金光銖·安盤石·朴億伊  
·權在益·李永周·安萬大·金在玉·李應伯

時尊位 安景祚

洞首 金光浩

有司 安大郁

都掌務 安昌祚

別掌務 金岩回

「월송영장황공영세불망지판」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은혜’라 하고, 종신토록 잊지 않는 것을 ‘그리움’이라고 한다. 본동(本洞)은 격년으로 수토(搜討)할 때에 바람을 기다리는 곳(待風所)으로, 참역(站役)<sup>35</sup>에 한 번 응할 때마다 100금(金)이 소비되어 이 때문에 재력이 고갈되고 구산동의 형편이 궁핍해졌다. 기사년(1869, 고종6)에 영찰(營察) 황지해(黃之海)<sup>36</sup>가 도와주는 은택을 항상 내려주었는데 등

35 참역(站役) : 각 역참(驛站)에 동원되는 노역(勞役).

36 영찰(營察) 황지해(黃之海) : 감영에 근무하는 감찰(?)을 영찰(營察)이라고 하는 듯함. 참고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11일 맑음... 원주(原州)로 내려가는 사람을 만나 편지를 써서 염(廉) 영찰(營察)에게 보냈다.”(하

급을 뛰어넘는 혜택을 특별히 베풀어 30금(金)을 내어주어 구산동에 맡겼다. 1, 2년이 지나 그 이자가 늘어나 구산동에는 열매를 먹는 이익이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샘물을 마시게 되는 좋은 일이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열매를 먹으면서 그 뿌리를 몰라서 되겠는가. 샘물을 마시면서 그 근원을 알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그 사람과 그의 은혜는 열매의 뿌리요 샘의 근원이라 할 만하니, 마음에 새기고 또 글로 새겨서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각별히 열매의 뿌리와 샘물의 근원을 생각하게 할 따름이다.

동치(同治) 11년(1872, 고종9), 임신(壬申)년 8월 모일에 유학(幼學) 방오가 짓고 유학 김술모가 쓰다.

노반 김상옥·김광련·안대철·김정옥·김성연, 전동수 김영업·김윤업·권치상·이원업·김병재·김광수·안반석·박억이·권재익·이영주·안만대·김재옥·이용백, 시존위 안경조, 동수 김광호, 유사 안대옥, 도장무 안창조, 별장무 김암희.

⑤ 「전임손주형손말백손익창영세불망지판」

「銓任孫周衡孫洙孫益彰永世不忘之板」

夫蔚島間一年搜討，有國之重役。本洞供億費，獨當無勸之偏苦，其在同境之民，不無向隅之歎。往在甲申，孫公周衡，時當銓任，念此賢勞，左右旋力，無所不至，而境內鹽澆石頭貫，皆付之本洞，以爲輔用，於是乎邑有碩劃之方。自是而洞無偏當之苦，其惠之及，深且遠矣。至于己酉，公之族侄宗侃，亦在銓任，銓所例納鹽一石，永爲除給。今則公之孫洙栢，述其志，隨事斗護，第念前後施惠，非止一再，而下上五十五載，尙闕揭板，洞人銘佩之義，果安在哉。公議俊發，請余記之。余乃言曰，“人有德惠而永矢不諼者，或銘心而碑口。然此特本洞之銘碑而已，孰若揭板於待風軒之壁上乎。況斯軒者，間年而使車來駐，有時而客筇登臨，常目所在，公名益彰，洞人之報，不

亦深乎.”於是乎記.

戊寅至月, 方五記.

前尊位 安大喆·安景祚·金允業·李景伯·金光銖·李在秀·金丙業

前洞首 安盤石·李景達·孫道辰·金海分·金錫祚·金景淳·朴億只·李德根

時尊位 金正郁

洞首 權在益

公員 金光奎

有司 安洪錫

都掌務 金用周

別掌務 金學只

官洞長 金士文

里正 崔福在

前有司 韓啓先·李景淵·李德辰·姜漢玉·金碧哲·金成辰·金寬宗·金用文  
原

「전임손주형손종간손익창영세불망지판」

울릉도(蔚陵島)를 1년의 간격을 두고 2년마다 수토(搜討)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역사(役事)이다. 본동(本洞)은 이 수토 비용을 제공하는데 유독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해서 같은 경내의 백성으로서 '모통이를 향해 탄식하는'<sup>37</sup> 이가 없지 않았다. 지난 갑신년(1824, 순조24)에 손주형(孫周衡) 공이 당시 전임(鎭任)으로 그 일을 맡고 있었는데, 이들의 수고로움을 걱정하여 여기저기 두루 힘을 쏟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경내의 소금상인들에게 거두는 석두세(石頭賈)<sup>38</sup>를 모두 구산동(邱山洞)에 주어 용도에 보

37 '모통이를 향해 탄식하는': 미상

38 석두세(石頭賈): 석두세(石頭稅)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 자료에 의하면 광무(光武) 3~6년(1899~1902)에 간행된 원문(原文)에 “염정세(鹽井稅) 외에 석두세(石頭稅)를 거두는 자들을 처벌하라는 지시”라는 말이 나오며, 전라남도각군구역해세조사정총성책(全羅南道各郡均役海稅調查正總成冊)에 “염석두세(鹽石頭稅)는 매석(每石)에 대(大)는 3전(錢), 중(中)은 2전(錢), 소(小)는 1전(錢) 5분(分)을 받았는데 이후로는 크기에 상관없이 1전(錢) 5분(分)씩 받는다는 수취(收取)의 기준”이라는 말이 나온다.

태계 하니, 이에 평해군(平海郡)은 먼 앞날까지 계획할 수 있는 방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부터 우리 동은 극심한 고통이 사라졌으니 그가 끼친 은혜는 깊고도 원대하다.

기유년(1849, 현종15)에 이르러 공의 족질(族姪) 손종간(孫宗侃)이 또한 전임(銓任)으로 있었는데, 전소(銓所)<sup>39</sup>에 으레 공납하던 소금 1섬을 영원히 견감시켜 주었다. 지금은 공의 손자 손수백(孫洙栢)이 그 뜻을 계승하여 일마다 도와주고 있다. 다만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해보면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었으며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5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혜택을 기리는 현판이 하나도 없으니, 마을 사람들이 가슴에 새겨 잊지 않는 정의(情義)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공의(公議)가 크게 일어나서 나에게 기문(記文) 지을 것을 청하기에, 내가 “은혜를 감사하여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사람은 마음에 새겨두거나 입으로 칭송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다만 본동 사람들의 기억과 칭송일 뿐이니, 어찌 대풍헌(待風軒)의 벽에 현판을 거는 것만 하겠는가. 하물며 이 대풍헌은 격년으로 사신의 수레가 와서 머무르고, 때때로 길손이 지팡이 짚고 올라 항상 많은 사람의 눈에 띄는 자리이니 (편액이 걸린다면) 공의 이름도 더욱 드러나게 되고 마을 사람들의 보은의 정도도 또한 깊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기록한다.

무인(戊寅, 1878, 고종15)년 11월에, 방오가 짓다.

전준위 안대철·안경조·김윤업·이경백·김광수·이재수·김병업, 전동수 안반석·이경달·손도진·김해분·김석조·김경순·박역지·이덕근, 시촌위 김정욱, 동수 권재익, 공원 김광규, 유사 안홍석, 도장무 김웅주, 별장무 김학지, 관동장 김사문, 리정 최복재, 전유사 한계선·이경연·이덕진·강한욱·김벽철·김성진·김관중·김용문. 끝.

39 전소(銓所) : 이방(吏房)이 근무하는 곳을 일컫는 뜻함.

⑥ 「도감박억이영세불망지판」

「都監朴億伊永世不忘之板」

邱山之洞, 陸海而居, 外若稍實, 內則甚虛. 丙子之歲飢, 丁丑之海渴, 離散相繼, 困窮頗多. 公逋如山之中, 昨秋刷馬七十二金, 以若衰末之時, 正如雪上之霜. 何幸同里朴都監億伊, 上慮公納之愆滯, 下憂民力之凋殘, 斥賣五斗之菑, 全當一洞之納. 公弭推捉之舉, 民解倒懸之急, 若無層雲之高義, 豈有今日之優惠. 聲聞所到, 貪鄙并廉, 此誠洞人之一大銘佩處也. 之人之惠, 不宜不報, 故本洞雜役, 爰及後裔而除之, 出等高風, 特揭軒眉而揚之. 噫, 人能推是心, 則奚但惠一洞而止哉. 洞之老少, 請記其事, 余辭不得已, 遂書顛末, 俾壽其傳云爾.

戊寅十一月望日, 方五書.

前尊位 安大喆·安景祚·金允業·李景伯·金光銖·李在秀

前洞首 安盤石·李景達·金丙業·孫道辰·金海分·李德根·金景淳

時尊位 金正郁

時洞首 權在益

前有司 金錫祚·韓啓先·李景淵·李德辰·姜漢玉·金碧哲·金成辰·金寬宗·金用文

原

官洞長 金士文

里正 崔卜在·李順完·金學只

掌務 金用周

有司 安洪錫

公員 金光奎

「도감박억이영세불망지판」

구산동(邱山洞)은 육지와 바다가 경내에 포함되어 걸보기에는 삶이 좀 넉넉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궁핍하다. 병자년(1876, 고종13)에는 농사가 흉년이 들고 정축년(1877, 고종14)에는 고기잡이도 흉년이었던 탓으로 빨뿔이 흘

어지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곤궁한 자들이 자못 많았다. 체납된 조세(公逋)가 산처럼 많은 가운데 작년(1877, 고종14) 가을에 바쳐야 하는 쇠마가(刷馬價)<sup>40</sup> 72금(金)은 그처럼 쇠락해서 보잘 것 없는 해로서는 정말 설상가상(雪上加霜)이었다.

다행히 같은 마을의 도감(都監)<sup>41</sup> 박억이(朴億伊)가 위로는 공납이 연체될까 염려하고 아래로는 민력(民力)이 쇠잔함을 근심하여, 자신의 5두(斗) 논을 팔아 동(洞)의 공납을 전부 충당하였다. 공(公)이 미납자를 추궁하여 잡아들이는 일을 늦추어 백성들이 거꾸로 매달린 다급한 곤경에서 풀려나게 되었으니, 만약 층층 구름의 높은 뜻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 같은 두터운 은혜가 있었겠는가.

그의 명성이 이르는 곳에는 탐욕스럽고 비루한 자들도 청렴해지니 이는 진실로 동민(洞民)들이 크게 마음에 새기고 감복(感服)해야 할 것이다. 이 분의 혜택은 마땅히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본동(本洞)의 잡역(雜役)을 그의 후손들에게 이르도록 제외시켜주고, 그 출중하고 높은 기풍은 특별히 대풍헌의 처마에 편액을 걸어 세상에 높이 드러내고자 한다. 아, 사람들이 능히 이런 마음을 확충해 간다면 어찌 한 동(洞)에만 은혜를 베풀 뿐이겠는가! 구산동의 노소(老少)가 모두 그 일을 기록해 달라 청하니, 내가 사양하다 부득이하여 결국 일의 전말(顛末)을 써서 오래도록 전하게 하고자 한다.

무인(戊寅, 1878, 고종15)년 11월 15일에 방오가 쓰다.

전준위 안대철·안경조·김윤업·이경백·김광수·이재수, 전동수 안반석·이경달·김병업·손도진·김해분·이덕근·김경순, 시준위 김정욱, 시동수 권계익, 전유사 김석조·한계선·이경연·이덕진·강한옥·김벽철·김성진·김관중·김용문.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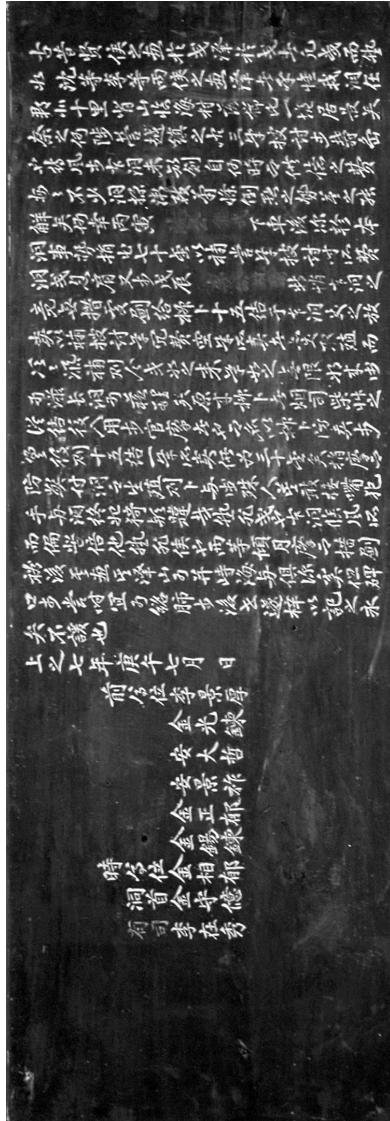
관동장 김사문, 이정 최복제·이순완·김학지, 장무 김용주, 유사 안홍석, 공원 김광규.

40 쇠마가(刷馬價) : 민간에서 말을 징발(徵發)하는 대신 다른 말을 마련하여 쓸 수 있도록 거두는 비용을 말한다.

41 도감(都監) : 마을에서 세금을 걷거나 잡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동직(洞職)인 듯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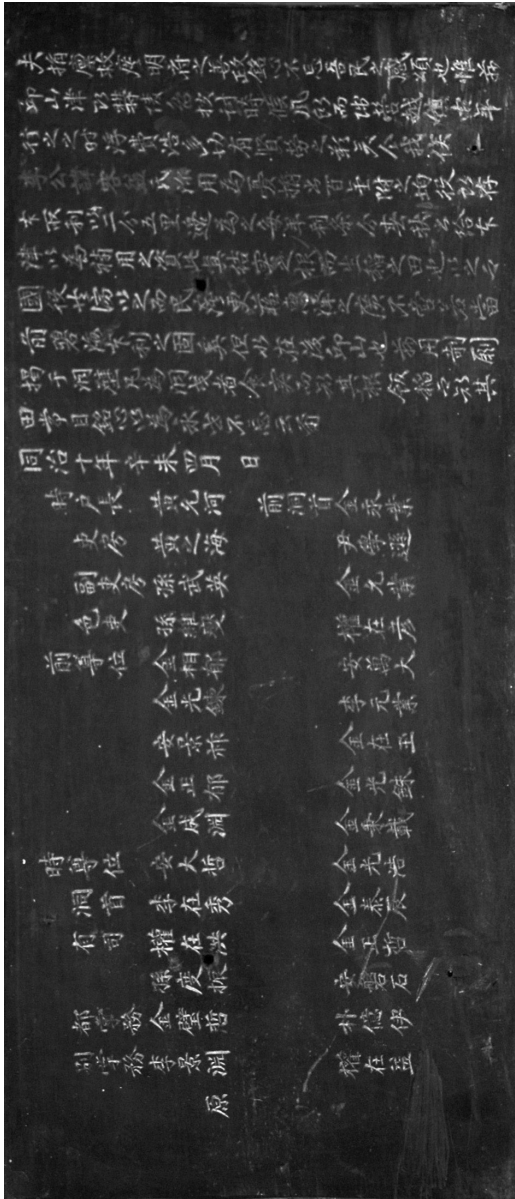
### III. 영세불망지판류의 사진

#### ① 「평해군수심능무이윤희영세불망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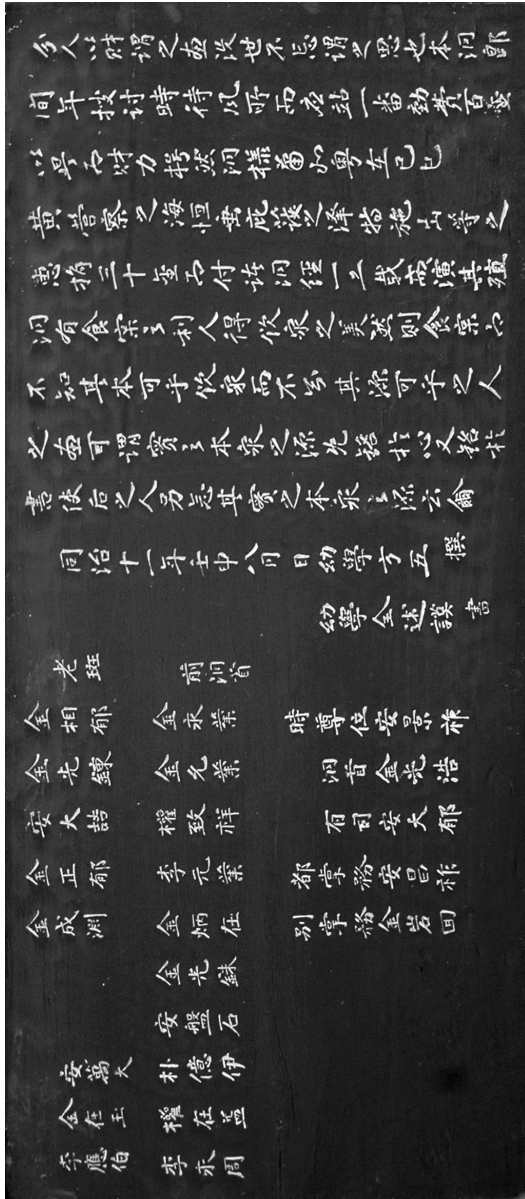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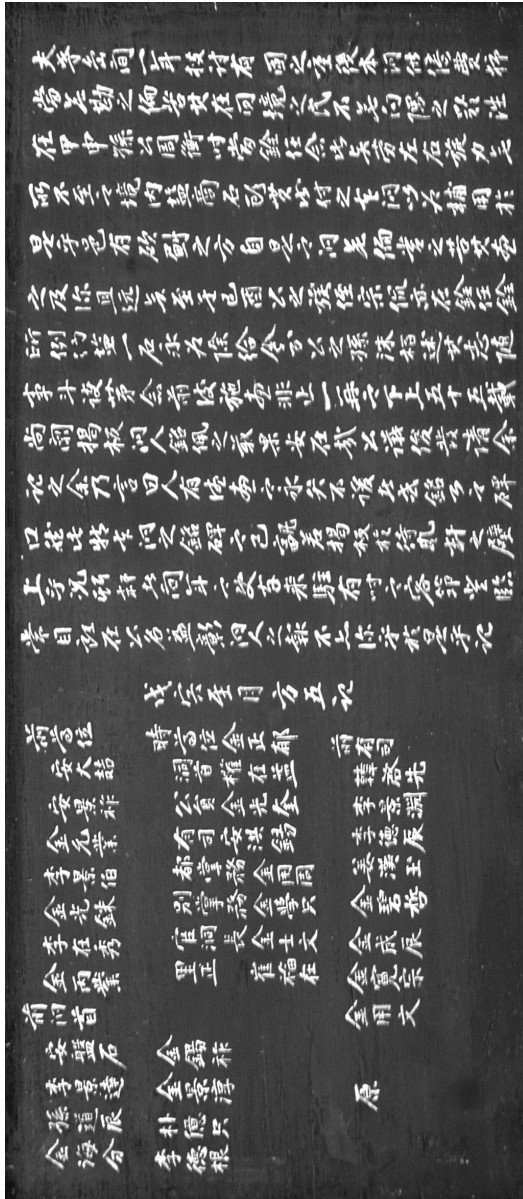
③ 「평해군수이용익영세불망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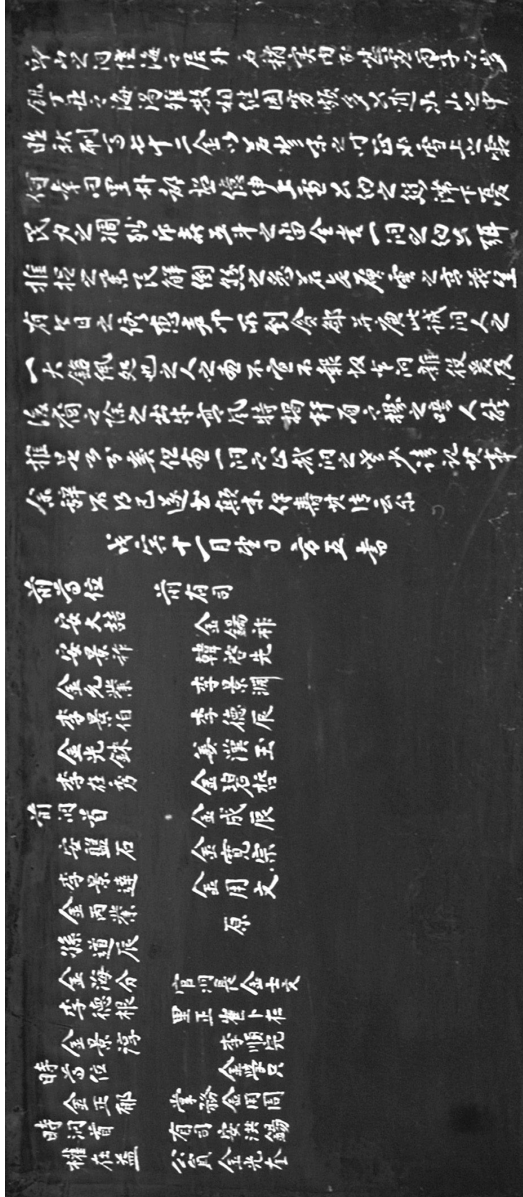
④ 「필수영자행궁영서필암지판」



⑤ 「전임순주형순종간손의창영세불망지판」



⑥ 「도감박역이영세불망지판」



# 제국주의와 탈근대주의 그리고 독도 문제

김재한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1. 영토 문제의 기원

영토 문제는 관할권 문제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한 관할권 문제는 늘 발생한다. 국가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들 동맹 간의 경쟁에서도 관할권 문제가 발생한다. 주요 국제관계이론들은 세력권의 경계선 문제로 전쟁과 평화를 설명하기도 한다.<sup>1</sup> 조직폭력의 세계에서도 구역 또는 속칭 나와바리(繩張) 문제가 폭력조직 간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심지어 동물 세계에서도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sup>2</sup> 동물의 공격적 행동은 영역을 지키려는 성향으로 설명되기도 한다.<sup>3</sup> 동물의 왕국이든 인간 세상이든, 영역 문제나 영토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영토 문제가 아무리 보편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수는 전쟁 또는 협상을 통해 안착되었다. 안착되지 못해 오늘날까지 갈등의 원인으로 받아들여지

1 김재한, 2012, 「민주주의와 영토분쟁」, 『영토해양연구』 Vol.4, Winter, 220~227쪽.

2 동물의 영역이든, 조폭의 나와바리이든, 국가의 영토이든, 모두 영어로는 territory로 표현된다.

3 영역 공격성(territorial aggression) 외에 동맹 공격성(alliance aggression), 즉 동맹(ally)이 바로 옆에 있을 때 남을 공격하려는 성향도 있다. 영역 자체가 동맹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영역 공격성과 동맹 공격성은 동전의 양면이다(김재한, 2018, 『연대 현상의 이해』, 박영사).

고 있는 영토 문제는 대체로 침탈이 극심하였던 제국주의 시대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하나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근대 독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행태를 자세하게 정리한 도서가 최근 출간되었다. 바로 김영수 박사가 집필한 『제국의 이중성 ~ 근대 독도를 둘러싼 한국·일본·러시아』(동북아역사재단, 2019)이다.

『제국의 이중성』은 오늘날 독도 문제의 기원을 일본제국 및 러시아제국의 행동에서 찾고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양자 관계 속에서 다루는 독도 관련 선행 연구들과 크게 차별되는 점이다.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다자 게임이라 늘 제3국의 입장과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양자 간에 시작한 전쟁만 하여도 다자 간 전쟁으로 전개되었거나 아니면 제3국이 공식 참전 없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 하물며 갈등과 협상은 더욱 그렇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 수밖에 없다. 『제국의 이중성』은 근대 독도를 둘러싼 동학에서 오늘날 기준에선 제3국인 러시아의 관점과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독도 문제 연구에 커다란 기여를 보태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제국의 이중성』 내용이 오늘날 영토 연구에 갖는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먼저 『제국의 이중성』의 편제 구성에 대해 간단히 평론한 후, 다음으로 『제국의 이중성』에 등장하는 근대, 제국, 제국주의, 주체, 타자화, 무주지, 주권, 연성화 등의 개념으로 제국주의의 영토 침탈과 탈근대주의의 영토 문제라는 두 가지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 II. 독도 문제 정보의 발굴과 연결

『제국의 이중성』 책의 구성은 통상적이지 않다. 앞부분에서 저자의 글, 프롤로그, 머리말로 시작하고, 뒷부분에서는 맺음말과 에필로그로 마무리하고 있다. 본론의 정보량이 많다 보니 서론과 결론을 다시 세분해가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본론 부분은 16개 절을 8개 장으로 분류하고, 다시 8개 장을 2개 부로 분류하고 있다. 1900년 이전 시기는 제1부로, 이후 시기

는 제2부로 구성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19세기 중엽 러시아 작가 곤차로프의 조선 동해안 여행기 『전함 팔라다호』, 러시아 뻬쩨르부르크 해군함대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조선 동해안 관련 자료 및 울리부차호의 항해 일지 등을 통해 러시아의 한반도 동해안 탐사의 내력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가 19세기 해양탐사를 바탕으로 청일전쟁 이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고, 극동지역에서의 러시아 해군력을 본격적으로 증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러시아, 일본, 대한제국이 병렬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러시아에서는 외교관 뵈시오의 『한국개관』, 러시아 재무부의 『한국지』, 동방학자 쾨네르의 『한국개관』 등의 자료를 출간하며 한국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나갔는데, 이들 자료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포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러시아 군함은 1899년부터 1903년까지 울릉도에 체류하면서 울릉도의 지형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러일전쟁을 예상하고 일본과의 해전을 준비하는 일환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제국의 이중성』 구성에서 부 또는 장의 편제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각 장에서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로 구성된, 총 16개 절이 거의 독립적으로 상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16개 절이 별개의 서술이다 보니 반복되는 문장이 있으며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지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16개 절 각각이 『제국의 이중성』이라는 꼬끼리의 각 부위임을 알 수 있다. 여러 맹인이 각기 꼬끼리의 다른 부위를 만지는, 이른바 군맹무상(群盲撫象)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sup>4</sup> 여러 절을 함께 읽는 것이 필요하다.

『제국의 이중성』이라는 명칭의 갤러리 또는 박물관 전시회에서 세부적인 16개 코너는 전시 수준을 높였다고 말할 수 있다. 16개 코너 각각을 들어가고 나오면, 알찬 지식이 점점 쌓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4 같은 뜻을 가진 사자성어로는 군맹평상(群盲評象) 또는 군맹상평(群盲象評)이 있다. 장님이 쟁반과 초를 만져서 태양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구반문촉(毆槃攏觸)도 비슷한 뜻이다.

고전 관람이 그렇듯이 『제국의 이중성』 읽기가 대중예능처럼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고품격 콘텐츠를 관람하였다는 성취감은 줄 수 있을 것이다.

16개 코너 각각의 명칭은 “팔라다호의 해양탐사와 러시아의 울릉도·독도 발견”,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탐사와 곤차로프의 조선·일본·중국 인식”, “19세기 후반 러시아 함대의 조선 해양탐사”,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해양탐사와 일본 외무성의 조사 결과”, “고종과 이규원의 울릉도와 독도 위치와 명칭에 관한 인식 과정”, “이규원과 이명우의 울릉도 조사와 조선 정부의 울릉도 이주정책”, “우용정의 울릉도 파견과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제정”, “우용정의 울릉도 조사와 한일공동조사단의 활동”, “한국의 영토와 해양에 관한 러시아의 조사와 정책”, “러시아 함정 야꾸트호의 울릉도 조사의 과정과 내용”, “일본 정부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의 과정 및 ‘시마네 현 고시 제46호’ 고시의 유무”, “나카이 요자부로의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와 ‘죽도어업조합’의 조직과 운영”, “울도군수 배계주와 강영우의 활동과 대한제국의 영토해양정책”, “울도군수 심흥택과 심능익의 활동과 대한제국의 영토해양정책”, “석도와 독도 등의 명칭 관련 한국의 인식” 등이다.

16개 코너 가운데 팔라다호에 관한 글을 읽다보면, 마치 19세기 팔라다호를 타고 과거로 여행하는 느낌을 받는다. 핵심 여행패키지상품 대신에 풀코스 여행패키지상품을 원한다면, 이반 곤차로프의 세계여행기 『전함 팔라다호』를 직접 읽어보는 것도 좋으리라 여겨진다.<sup>5</sup> 특히 곤차로프의 메시지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이중성’인데, 『제국의 이중성』에서는 곤차로프가 “절대 악의 비판과 처벌에 관한 이중성을 꼬집었”(81쪽)고, “‘동물을 사랑한다’는 영국인이 ‘아프리카에 총과 화약을 수출한다’며 영국의 이중성을 비판했다”(64쪽)고 인용하고 있다. 곤차로프의 체험 기록이 『제국의 이중성』이라는 도서 제목의 선택에도 암묵적인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다.

팔라다호 코너의 클라이맥스는 1854년 팔라다호의 소속 함정 중 하나인

5 이반 알렉산드르비치 곤차로프, 문준일 역, 2014, 『전함 팔라다』, 동북아역사재단.

올리부차호가 대한해협을 지나 북쪽의 타타르해협으로 항행하던 도중 독도와 조우하는 장면이다. 『제국의 이중성』(77쪽)이 옮긴 올리부차호의 항행 일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발견한 2개의 높은 바위는 반나절 동안 시야에 있었으며, 이제 명확해졌다. 2개의 제법 높고 예각의 발가벗은 바위는 약 300사첸(642미터) 떨어져 있었다. 이들 중 서쪽 섬을 ‘올리부차’라 명명했다. 동쪽 섬을 현재는 발틱함대 그 후에 깎차뜨카 전단으로 소속되기 전에 1846년까지 흑해 함대 소속이었을 때 함정의 최초 이름을 기념하여 ‘메넬라이’라고 불렀다. 올리부차에서 북서쪽으로 2마일 가량 물위에 나타난 암초였다. 올리부차 및 메넬라이섬을 청명한 날 30마일 거리에서 발견했다. 1854년 4월 6일(양력 4월 18일) 우리 함정은 올리부차 서쪽 4마일 해상에서 반나절 동안 머물렀다.”

팔라다호가 목도한 당시 조선인·중국인·일본인의 모습도 인상적이다. 다만, 『제국의 이중성』(86~104쪽)에 소개되고 있는 조선·중국·일본에 대한 묘사는 곤차로프 개인의 인식일 뿐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인상은 어떤 구성원을 만났느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조사방법론 용어로 표현하자면, 표본편향(sampling bias)이 불가피하였다. 그렇다고 곤차로프의 기록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곤차로프의 언급 가운데 당시 “중국은 단일성과 전체성이 없다. 거대한 전체를 움직이는 필수적인 국가적 생명을 위한 여건들이 없다. 중국에는 국가를 움직이는 필수적인 요소인 민족성·애국심·종교가 없다. 중국인은 있으나 중국 민족은 없다.”는 설명은 기억에 남는 대목이다(104쪽).

『제국의 이중성』 16개 코너의 일부는 가상현실 콘텐츠로 제작된다면 더 많은 공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러시아어라는 언어장벽도 일조하였겠지만 동해에서 벌어졌음에도 이제까지 너무나도 먼 곳의 이야기처럼 느껴진 러시아제국의 독도 이야기(스토리) 및 역사(히스토리)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게 한 점은 『제국의 이중성』의 기여 가운데 하나이다.

### Ⅲ. 제국주의의 영토 침탈

이제 큰 학술적 개념으로 논평해 보자. 먼저, 제국주의이다. 『제국의 이중성』에 세 제국이 등장한다. 그런데 제국이라는 명칭이 붙어 언급되고 있는 제국은 대한제국이다. 대한제국 국호에서의 ‘제국’은 『제국의 이중성』에 논하고 있는 제국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독립을 강조하는 것뿐이다. 『제국의 이중성』에서 서술하고 있는 이중성의 제국은 일본과 러시아이다. 1868년 1월 3일부터 1947년 5월 3일까지의 일본제국(日本帝國), 그리고 1721년부터 1917년 2월 혁명 때까지 존재한 러시아제국(Российская империя)이다.

권위(authority)와 권위주의(authoritarianism)가 구별되듯이, 제국(empire)과 제국주의(imperialism)가, 또 합의적 운영의 의미인 제국적(imperial)과 강제적 운영의 의미인 제국주의적(imperialistic)이 구별되기도 한다. 이런 구별은 논자의 이념성향이나 취향 등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기도 한다.<sup>6</sup>

제국은 다른 정치체에 복속되어 있지 않는 최고의 정치체이다. 근대 이전의 로마 제국이나 중국 천하의 개념처럼 개별 국경을 넘어 적용되는 하나의 규율 또는 문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대 주권(sovereignty) 국가체제의 등장으로 하나가 아닌 여러 제국이 공존하게 되었다. 19세기와 20세기 전반에 영토를 병합하여 확장하거나 식민지와 같은 세력권을 두는 현상이 제국주의로 불리고, 이러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현상은 민족자결주의로 불린다. 민족자결주의 역시 주권에 충실한 개념이다. 제국주의 시대에 다수의 국가가 스스로를 제국이라고 칭하였는데, 제국주의의 침탈 대상에 불과한 제국은 주권 국가임을 스스로 주장하였던 것뿐이지, 실제로 제국주의적 제국은 아니었다. 이처럼 제국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기 때문에 제국주

6 무릇 개념은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을 일관되게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존재한다. 한국 학계에는 개념이나 용어를 남과 공유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문의 축적·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특정 용어를 남과 다르게 사용하려면 그런 용도가 사회 현상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의 개념 대신에 식민주의(colonialism) 개념을 쓰기도 한다.

내정간섭에서 간섭이 가능한 주체는 제국이고, 간섭이 가능한 대상은 제국이 아니다. 즉, 남을 간섭할 수 있으면서 남에게서 간섭받지 않는 제국은 스스로의 주권을 인정하되 상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국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에서는 그런 구분이 달라진다. 자국의 잘못된 행위에 외국이 관여해 달라는 특정 개인의 주장은 지구촌을 하나의 세계 제국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 그런 예이다. 국경을 넘어 자국 주권을 펼치는 제국주의적 행동은 상대의 입장에서 주권 침해이다. 이처럼 제국은 주권 불가침의 원칙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다.

『제국의 이중성』에서의 이중성은 주권의 보장과 침해라는 이중성보다는, 약간 다른 의미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제국의 이중성』의 저자는 “러시아와 일본이 제국주의를 지향하면서 권력과 인간을 일치시켜, 영토를 확장하려는 이중성을 살펴보았다”고 언급하고 있다(566~567쪽). 일본 정부가 수산업자 니카이 요자부로 등 일본인의 애국심을 작동시켜 울릉도에 대한 경제 침투를 비호하고 독도에 대한 불법적 영토 편입을 정당화한 행위는 일본제국의 이중성이고, 러시아 정부가 상인 브리네르 등을 동원하여 울릉도에 대한 삼립 개발 이권 획득을 비호하고 독도를 해양 거점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한 행위는 러시아제국의 이중성이라고 정리하는 것 같다. 즉, “자국민의 상업적 활동을 권장하는 동시에 자국민을 군사적 침략 도구로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 제국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제국의 이중성』은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총략) 모순된 논리를 만들었다. 하나는 주인 없는 땅(무주지)이어서 편입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옛날부터 자국의 영토였다는 것이다. 일본은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주장을 억지로 결합시켜 놓고도 아직까지 타당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51쪽) 일본이 1905년에 무주지(terra nullius) 독도를 선점하였다는 주장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주장은 서로 양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주지 선점 이론

은 진정한 무주지여야 성립 가능하기 때문이다.<sup>7</sup> 일본의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주장에 대해, 한국은 고대로부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였는데, 일본이 이미 한국을 지배하던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법제화하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어떤 의미의 이중성이든, 제국주의의 영토 침탈은 모순된 행동이었음이 분명하다.

#### IV. 탈근대주의의 영토 문제

이제, 탈근대주의에 대해 논의해 보자. 근대주의는 국가 주권을 강조하고, 전통적 주권 개념은 배타성과 불가분(不可分)성을 전제한다. 사실, 권력(power)만 해도 불가분한 것만은 아니다. 공화정은 권력을 나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립되는 체제이다. 오늘날 다수제(majoritarianism)와 비례제(proportionalism)의 정치체제 구분에서는, 권력을 지지도 또는 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나누는 체제가 비례제이다. 이질적 또는 다원적 사회의 권력은 나누어야 바람직함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sup>8</sup> 주권이 배타적이고 불가분적이라는 전제는 다시 주체와 객체의 구분을 전제로 한다. 즉, 주권은 주체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객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권적 주체화는 곧 타자화(타자의 설정)이고 배타적 영역의 설정이다.

『제국의 이중성』에서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영역과 국가를 연결하는 지정학과 오리엔탈리즘은 주체와 객체를 구별하는 제국주의의 본질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서양인에 비친 조선의 자화상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변

7 이런 맥락에서 “무주지 선점이 불법이며 무효”(『제국의 이중성』, 28쪽)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다. ‘무주지가 아닌 영토의 선점은 불법이며 무효’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8 김재한·아렌트 레입하트, 1997, 「합의제와 한국의 권력구조」, 『한국정치학회보』 31권 1호, 99~120쪽; 김재한, 2019, 「선거제도의 개념 오용과 정합성: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58호.

9 에드워드 사이드·다니엘 바렌보임, 장영준 역, 2003, 『평행과 역설』, 생각의 나무.

화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23쪽). 또 스테판 다나카(Stefan Tanaka)의 저서를 인용하면서,<sup>10</sup> 일본이 자신을 주체로 형성하고 대신 청국을 타자화하여 오리엔탈리즘과 지나(支那)를 발명했다고 서술하고 있다(21쪽).

세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의 분리는 필연적으로 배타성 또는 양립불가능성을 가져다 준다. 영토 분쟁은 그러한 배타성에 기초하고 있다. 상대가 자신을 타자화하였다고 비판할 때, 자신도 그 상대를 타자화하였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결국 주관화 대신 객관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고·중세 시절에 각자의 주관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면, 근대에는 실증주의가 가능해졌지만 주체화와 타자화가 병행되면서 자기모순이 되었으며, 객관적 실증화가 어려운 경우에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한 것이다.

『제국의 이중성』은 국제분쟁의 해결 방안으로서의 “주권 개념의 연성화(softening of sovereignty)”를 비판적으로 소개하면서, 이를 동북아의 분쟁 지역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명기하고 있다(23~25쪽). 특정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국가로서는 그 특정 영토에서 배타적·불가분적 주권이 제한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실, 주권 연성화 개념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연성화(softening)라기 보다 약화(weakening)로 볼 수 있다.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에서 연성(soft) 개념은 ‘준수되지 않는다’는 측면보다 ‘강제성이 없어도 잘 준수된다’는 데에 방점이 있다. ‘soft power’라 하면, 강제력이 없어도 (강요할 수 있는 군사력 등의) ‘hard power’만큼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고, ‘soft law’라고 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hard law’만큼 잘 준수되는 합의를 말한다.<sup>11</sup> 독도 문제에서는 ‘주권의 약화(weakening)’보다 ‘연성 주권(soft sov-

10 Stefan Tanaka, 1995,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11 종종 soft나 연성의 의미를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의 것과 다르게 받아들이는 일반인이 적지 않다. 예컨대, 2019년 11월 14일 실시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공개된 정답은 ‘비(非)회원의 합의 준수’였다. 그러나 soft law와 hard law

ereignty)’이 더 의미를 갖는다. 즉, 주권의 약화가 특정 영토에 대한 특정 국가의 지배력에 변화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연성 주권은 국제법적 강제력이 없어도 주권이 준수되는 상황이다. 예컨대 지역공동체는 연성 주권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이다.<sup>12</sup>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지역을 주변국에게 양보한 것은 독일의 과거 반성에서 비롯된 점도 있지만, 동시에 유럽연합이라는 지역공동체에서 영토의 귀속 국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미래의 전망에 기인하는 점도 있었다.<sup>13</sup>

작금의 동북아시아 질서는 근대적 상황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변화의 방향은 전근대(pre-modern), 근대(modern), 탈근대(post-modern)의 순서로 가고 있음은 분명하다.<sup>14</sup> 육상 국경선조차 명확하지 않던 전(前)근대, 육상 국경선이 촘촘하게 획정되었지만 해상 국경선은 불명확한 근대, 영공과 사이버공간 등에서의 경계선이 주목되고 있는 탈(脫)근대 가운데 독도는 어느 시대 영토 문제인지 사색하게 된다.

『제국의 이중성』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문학과 예술이 거론된다는 점이다. 논리와 자료를 중시하는 학술 서적에 문학과 예술이 어설피게 등장하면, 학술적 가치를 상쇄해 버리기도 한다. 『제국의 이중성』은 문학적 상상과 실증적 논증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으면서 항해하고 있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국의 이중성』을 읽다보면 클로드 모네가 독도를 방문했다고 상상하게 된다. 빛이 곧 색채라고 믿었던 모네는 빛의 변화에 의해 같은 사물이 다른

의 용어는 회원 구속력에 관한 것이지, 비회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유럽연합 <https://www.ecchr.eu/en/glossary/hard-law-soft-law/>;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Soft\\_law](https://en.wikipedia.org/wiki/Soft_law); 네이버지식백과(21세기 정치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8281&cid=42140&categoryId=42140>.

12 김재한, 2005, 『동북아공동체』, 집문당.

13 김재한, 2012, 「통일독일 국경의 탈근대적 안정화」, 『영토해양연구』 Vol.3, Summer, 210쪽.

14 Chae-Han Kim, 2015, "The Resurgence of Territorial and Maritime Issues in the Post-Modern Era,"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Vol.1, No.1, pp.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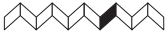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상과 화가이다. 독도 사진과 모네의 〈에트르타 절벽의 일몰〉 그림을 함께 보면, 다른 사물이 같은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 3차원 공간에서 다른 모습의 두 사물을 2차원 공간에서는 같은 모습으로 그릴 수 있다. 반대로 독도라는 같은 섬을 다르게 보는 한국과 일본도 생각하게 된다.

『제국의 이중성』에는 화가 모네뿐 아니라 작곡가 쇼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 소설가 겸 극작가 안톤 체홉 등도 등장한다. 독도 문제를 늘 근거 또는 증거로만 다루다가 이런 거장 예술가와 조우하게 되니, 독도를 이제까지 제대로 즐기지 못하였다는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된다. 물론, 거장들의 치열한 삶과 작품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목가적 삶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영토는 소유보다 향유의 대상임이 분명하다.<sup>15</sup> “오디세우스가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며 기이한 존재들을 만나리라 예감하던 그런 마음”(13쪽)으로 꿈꾸고 있다는 다음 학술서를 기대해 본다.

15 장윤정·이호진·김재한, 2014, 「장소특정적 미술과 독도의 문화예술적 영토」, 『영토해양연구』 Vol.7, Summer, 180~205쪽.

## 참고문헌

- 김영수, 2019, 『제국의 이중성 ~ 근대 독도를 둘러싼 한국·일본·러시아』, 동북아역사재단.
- 김재한, 2005, 『동북아공동체』, 집문당.
- 김재한, 2012, 「통일독일 국경의 탈근대적 안정화」, 『영토해양연구』 Vol.3, Summer.
- 김재한, 2012, 「민주주의와 영토분쟁」, 『영토해양연구』 Vol.4, Winter.
- 김재한, 2018, 『연대 현상의 이해』, 박영사.
- 김재한, 2019, 「선거제도의 개념 오용과 정합성: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58호.
- 김재한·아렌트 레입하트, 1997, 「합의제와 한국의 권력구조」, 『한국정치학회보』 31권 1호.
- 에드워드 사이드·다니엘 바렌보임, 장영준 역, 2003, 『평행과 역설』, 생각의 나무.
- 이반 알렉산드로비치 곤차로프, 문준일 역, 2014, 『전함 팔라다』, 동북아역사재단.
- 장윤정·이호진·김재한, 2014, 「장소특정적 미술과 독도의 문화예술적 영토」, 『영토해양연구』 Vol.7, Summer.
- Kim, Chae-Han, 2015, "The Resurgence of Territorial and Maritime Issues in the Post-Modern Era,"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Vol.1, No.1.
- Tanaka, Stefan, 1995,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 영토·해양 일지

조운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019년	국내	국외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일: 아시아안전보장회의 개최(한일 국방장관 간 공식회담 개최)</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7~29일: 일본 오사카 G20 회의 참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일본 방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일: 일본 자민당 참의원 선거공약집에 독도 관련 연구기관 설치 내용 포함</li> <li>19일: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沖縄県)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내에 침입한 중국 해양조사선에 항의</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19일: 대구시의회 의원 독도 방문</li> <li>24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 한국 정부 러시아에 항의</li> <li>24일: 2020년 도쿄 올림픽 공식사이트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시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일: 중국 국방백서에서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제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주변해역의 공선파견은 정당하다고 밝힘</li> <li>29일: '영토·주권 관련 내외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제언 "내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발신 강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발표,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 게재</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일: 경기도의회 독도탐방단 독도 방문</li> <li>22일: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중단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일: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다오위다오가 옛날부터 중국 영토였다는 기술을 강화하기로 결정</li> <li>22일: 고노 외상,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 중단하기로 한 한국 정부 방침에 항의, 미국 정부 대변인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li> </ul>

영토·해양 일지

2019년	국내	국외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일: 외교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중단 결정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li> <li>• 25~26일: 한국, 육해공군, 해병대, 해양경찰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독도방어훈련(동해영토수호훈련) 실시</li> <li>• 29일: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li> <li>• 3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독도 방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27일: 일본 스가[菅] 관방장관 독도에서의 군사훈련 받아들이 수 없음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 비난</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일: 한국 정부, WTO에 일본 수출규제 제소</li> <li>• 20일: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 개최, 외교장관회담 의제 조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일본 '북방영토 반환요구 대회'가 도야마시(富山市)에서 개최</li> <li>• 27일: 일본 2019년 방위백서 발간 독도는 일본 영토, 독도 상공 충돌 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 첫 시사</li> </ul>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일: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li> <li>• 18~20일: 광주시의회 독도 방문</li> <li>• 22일: 한국 국회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 독도 방문</li> <li>• 31일: 환자 수송 헬기 독도 해상 추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일: 일본 정부 2014년부터 수집한 영토 관련 자료 140점을 인터넷에 공개('독도'는 신규 6점을 공개)</li> <li>• 23일: 한국 국회의원 '독도' 상륙에 일본 외무성 항의</li> <li>• 30일: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北方領土))에서 러일 경제활동의 시험적 사업으로 일본 여행객 관광이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li> <li>• 31일: 일본 언론 "한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죽도' 주변 해역에서 헬기가 추락"했다고 보도함</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일: 외교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중단 유예 결정을 일본에 전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일: 7월 29일 발표한 '제언'을 영문으로 번역해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 게재</li> </ul>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도쿄에서 남쿠릴열도, 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시위 개최</li> </ul>



# 규정 및 규칙

나

- 편집위원회 규정
- 발행 및 심사 규칙
- 투고 요령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별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 편집위원회 규정 ]

제정 2011.06.30.

개정 2017.04.21.

개정 2017.10.25.

개정 2018.04.19.

**제1조** 본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 발간하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영토·해양 관련 전문연구자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은 재단 소속 직원 중의 1명을 편집간사로 지명하여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편집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 제6조

1.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 발간 전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하고 의결한다.

- 1) 『영토해양연구』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영토해양연구』 게재 특집 및 일반 논문, 연구노트, 자료해제, 서평, 일지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및 심사위원 추천
  - 3) 논문심사 및 『영토해양연구』 출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4) 기타 『영토해양연구』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 발행 및 심사 규칙 ]

제정 2011.06.30.

개정 2017.10.25.

### 제1장 발행규칙

**제1조** 『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제2조** 『영토해양연구』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해당 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제4조** 제출 원고는 『영토해양연구』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제5조**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제2장 심사규칙

제6조 편집위원회는 게재 신청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해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제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 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 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 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정 및 조치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	A	A	A
수정 후 게재	A	A	B
	A	A	C
	A	B	B
	B	B	B
	A	B	C
수정 후 재심	A	B	D
	A	C	C
	A	C	D
	B	B	C
	B	B	D
	B	C	C
게재 불가	A	D	D
	B	C	D
	C	C	C
	C	C	D
	C	D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두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 투고 요령 )

제정 2011.06.30.  
개정 2017.04.21.  
개정 2017.10.25.

### 제1조(투고 규정 일반)

-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일지 등이 게재된다. 투고자는 투고원고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저작권활용동의서와 함께 투고하여야 한다.
-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 온라인 제출 시스템(<https://nahfjams.or.kr>)을 통해 투고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당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
-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을 피한다.

### 제2조(원고 작성 요령)

-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국문초록 및 주제어,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제목, 영문초록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된다.
-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 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고, 최대 200매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영문초록은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을 포함하여 국문초록 분량에 준한다.
-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1,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각주에서 현대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 예) 김동복, 2006, 위의 글, 78쪽. (영문: *Ibid.*, p. 78.)

\* 예)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영문: Gildong Hong, 2002, *op. cit.*, p. 29.)

6.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 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큰따옴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서술한다.

\*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鶴鶴擁, 是人也.”

7. 서양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 예) David M. Lampton, 2009,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ge of Obam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8, pp. 703~727.

8.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 예) (동북인, 2006: 24)

9. 인터넷 자료의 경우 저자, 연도, 제목,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 예) David C. Gompert, 2013, “Sea Power and American Interest in the Western pacific,” [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1.html](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1.html)(검색일: 2014.12.17).

### 제3조(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

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 예) 김독도 · 박동해, 1996, 『독도 관련 근대 일본발행 지도 연구』, 서울: 개벽사.

\* 예)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예) 林昱君(린위권),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濟研究所.

-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영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 · 일본 · 중국어 · 한문인 경우는 이중꺾쇠(『 』)로 표시한다.

2)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 예) 김재엽, 2010, 『100년 전 한국사』, 서울: 살림.

\* 예) Agnew, J., 2011, *Hegemony: The New Shape of Global Power*, MA: Temple University Press.

(2) 저자 3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 예) 홍길동 · 허생 · 홍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

문화연구원.

3) 학위 논문

\* 예) 홍길동, 2002, “근대의 동해에 대한 지도제작과 측량 연구”,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예)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4)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 예) Kissinger, Henry A. 저 · 박용민 역, 2014, 『회복된 세계』, 서울: 북앤피플.

5) 동양 문헌의 경우, (전체 추가) 동양 고전의 참고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생략하고,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6)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 예) Geng, Jing, 2012, “The Legality of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under UNCLOS,” Merkourios, Vol. 18, Issue 74.

7)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 예) 박병섭, 2016,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외무성의 독도 정책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관련 일본발행지도 학술회의, 서울, 12월.

\* 예) Jordan, Peter, 2016, “When Exonyms and Endonyms Turn into International Names: An Additional Function in Need of a Term,” Paper presented at Seas and Islands: Connecting People, Culture, History and the Future, Korea, Rep., October.

8)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 예)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4월 8일).

##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제정 2019.11.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실장,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장과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

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

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

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여 재심의 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부 칙

〈제정,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연구(책임)자 : (인)

---

### 편집위원장

김관원 \_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 편집위원


강봉룡 \_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병렬 \_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안보정책학과 교수  
김영수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재한 \_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도시환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심정보 \_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오상학 \_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이상균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석용 \_ 한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성환 \_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이종원 \_ 와세다대학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정병준 \_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부 교수  
장세운 \_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허영란 \_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 편집간사

이준호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팀



 영토해양연구 Vol. 18

---

초판 1쇄 인쇄 2019년 12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9년 12월 30일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2234-3296

비매품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